

지속위 자료집 2005-00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2005. 12.

---

##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법·제도개선 연구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법·제도개선 자료집’을 발간하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지난 2004년 2월 12일에 제38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사회적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께 보고드린 바 있다. 이후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시안을 마련하고 이를 주관부처인 국무조정실에 이관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외에도 공공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공갈등관련 법·제도 개선지침’을 마련하여 관계부처로 하여금 개선을 추진하도록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에는 공공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을 중심으로 공공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자료집은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이들 자료와 관계부처 협의 과정의 자료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법제연구원 전재경 박사(팀장, 갈등관리정책전문위원)를 중심으로 기초연구를 거쳐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국토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7개 연구기관의 협력 하에 워크숍을 통해 개선과제를 구체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두 차례 수렴하여 개선안을 보완하였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 개선과제의 발굴, 관계부처 협의 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전재경 박사를 비롯한 법제연구원 연구팀, 관련연구기관 연구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5. 12. 7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고 철환

## 차 례

제1부	추진경과 및 자료집 구성에 대한 설명 .....
제2부	공공갈등 관련 법·제도개선 지침 .....
1.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목표 등 .....
2.	분야별 갈등현황 및 개선방향 .....
제3부	공공개발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방안 .....
1.	1차 관계부처 협의안 .....
1)	추진배경 및 방향 .....
2)	부처별 법률정비방안 제안 .....
※	세부 법령정비제안서 .....
※	1차 협의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
2.	2차 관계부처 협의안 .....
1)	추진배경 및 방향 .....
2)	법률정비 제안내용 .....
※	2차 협의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
3.	부처협의 결과를 반영한 보고서 .....
< 부 록 >	: 연구팀 회의록 .....
1.	2004년도 회의록 .....
2.	2005년도 회의록 .....
< 참여연구자 명단 >	.....

## 제1부 추진경과 및 자료집 구성에 대한 설명

# 추진경과 및 자료집 구성에 대한 설명

## 1. 추진배경

### 1) 시대적 배경

1960년대 이래 짧은 기간동안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룬 국가로 발전하였으나 다양한 이해·가치관 갈등으로 사회통합과 연대감을 상실할 우려가 제기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참여민주주의의 확산과 함께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의 신속한 전파 등으로 공공개발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의 표출과 갈등양상이 대폭 증가하면서 개발과 관련된 환경갈등의 경우 가치관적 갈등으로 전환되고 장기화·대규모화하는등 갈등의 관리능력 향상이 국가 발전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 2) 공공개발 사업관련 갈등의 예방·해소의 필요성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에 대한 관리는 민간갈등관리제도와 다른 차원에서 파악해야 하고 현행 개별법제도에 대한 개선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계획 수립단계에 나와야 할 쟁점이 잠재되어 오다가 실시단계에서 표면화되면 이를 해소 할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집단행동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갈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중점적으로 모색하는 동시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2. 추진경과

### 1) 2004년도, 갈등관리 법제도 개선 작업의 추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동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갈등관리정책전문위원회 산하에 관련교수, 전문가 등 8명으로 ‘갈등관리 법·제도개선 연구팀’을 구성하였다.(명단 별첨) 연구팀에서는 2004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10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공공분쟁 및 갈등 예방을 위한 법·제도개선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은 부처에서의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실무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례와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이 주 내용이었다.

2004. 8. 26일 동 지침을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각 부처로 하여금 이 지침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서 소관 법령·제도 중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법령정비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건설교통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행정자치부 등 6개부처에서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

### 2) 2005년도, 공공개발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 방안 추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2004년중 추진한 공공분쟁 및 갈등예방을 위한 관계부처의 제도개선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고 진단하고 연구팀을 재정비하여 공공개발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전재경 박사(한국법제연구원)를 팀장으로 하여 한국 법제연구원을 주축으로

국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교통개발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 7개 연구기관의 협력아래 주무연구진(법제연구원)이 협동연구기관을 방문하여 관련연구진과의 워크숍을 거쳐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정리,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7차례의 관련연구기관 회의를 거쳐 발굴된 총 5개부처 소관 19개 법률을 대상으로 공공개발 관련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정비를 위한 1차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공공개발관련 갈등관리와 관련된 법률개선 중심의 제도적 접근에 치중하였으며, 각종 규제나 보전과 관련한 갈등은 제외하였다.

1차 연구결과에 대하여 2005년 7월 25일 관계부처에 보내 서면 검토의견 제출을 받고, 8월 17일과 19일 2일간에 걸쳐 관계부처 추가 의견수렴 및 조정회의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5개부처 14개 법률안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2차 협의안으로 마련하고, 9월말부터 10월까지 2차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초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3. 성과와 향후계획

먼저 2004년에는, ‘공공갈등 관련 법·제도개선지침’을 마련하여 갈등예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갈등 다발 부처에서 앞으로 관련 정책이나 입법 등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기본적인 지향점이 되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2005년에는, 공공개발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를 중점 추진하였다. 연구팀(팀장 전재경 위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을 중심으로 7개 연구기관의 협력 하에 공공개발을 둘러싼 갈등예방을 위한 관련법률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마련한 초안에 대하여 2차례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작성하였다..

앞으로 연구팀에서 마련한 법률정비방안은 그간의 추진경과와 개선과제의 내용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내년이후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을 실행하도록 하고 예정이다.

### 4. 자료집 구성에 대한 설명

자료집의 구성은 3부로 구성하여 제1부에서는 추진경과에 대하여, 제2부와 제3부에서는 2004년과 2005년에 추진한 연구관련 자료를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수록 하였다.

먼저 ‘제1부’에서는, 2004년 이후 이 연구가 추진된 배경과 추진경과, 주요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2004년에 추진한 연구성과에 해당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연구팀에서 7차례의 회의를 통해 공공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갈등 관련 법·제도개선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2005년에 법제연구원을 중심(팀장 전재경 박사)으로 7개 관련연구기

관이 협력하여 추진한 연구 경과에 해당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법제연구원 전 재경 박사를 중심으로 기초연구를 거쳐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7개 연구기관의 협력하에 워크숍을 통해 개선과제를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두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치고 이를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과정의 자료를 수록하였다. 1차 관계부처 협의안과 이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한 2차 관계부처 협의안과 이에 대한 의견, 그리고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차례로 수록하였다.

‘부록’에서는 2004년 이후 개선과제의 발굴, 관계부처 협의 등을 위한 총 24차례의 연구팀 회의록을 수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참여 연구자 명단’을 함께 실었다.

## 제2부 공공갈등 관련 법·제도개선 지침

## 일러두기

- 이 지침 목적은 각 부처에 공공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운용중인 법률이나 제도중에서 의견수렴 등 주민참여 절차의 적정성 미흡, 현실적합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갈등발생 가능성이 높은 법·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함께 갈등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갈등관리기본법」을 별도로 마련중에 있으며 갈등관련 법제도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이 기본법에 따르도록 할 계획임
  -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공공사업 및 공공정책추진시 발생하는 갈등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임
  - 각 부처에서는 이 지침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소관 법령·제도 중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법령정비에 활용하기 바람
- ※ 이 지침에서 제시된 갈등사례는 예시이며 부처에서 다양한 갈등사례를 발굴하여 제도개선 필요

## 공공갈등 관련 법·제도개선 지침

### 1. 공공갈등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목표 등

## 가. 시대적 배경 및 제도개선 필요성

### 1) 시대적 배경

- 1960년대 이래 짧은 기간동안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룬 국가로 발전하였으나 다양한 이해·가치관갈등으로 사회통합과 연대감 상실 우려
-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참여민주주의의 확산과 함께 인터넷을 중심으로한 정보의 신속한 전파 등으로 공공개발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의 표출과 갈등양상이 대폭 증가
- 개발과 관련된 환경갈등의 경우 가치관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장기화·대규모화 하는 등 갈등의 관리능력 향상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새만금간척사업,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구간 노선결정,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관련 갈등 등은 미래세대, 생명가치 등 생태적 관점과 연계되어 기존 사회적 가치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

### 2) 공공개발 사업관련 갈등의 예방·해소의 필요성

-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관리는 현행 개별법제도에 대한 개선책과 함께 논의 되어야 함
  -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계획 수립단계에 나와야 할 쟁점이 잠재되어 오다가 실시단계에서 표면화되면 이를 해소 할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집단행동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갈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증점적으로 모색하는 동시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필요

## 나. 제38회 국정과제회의시( '04. 2. 12, 청와대) 대통령 지시사항

- 제38회 국정과제회의( '04. 2. 12, 청와대) 개요
  - 참석자 : 대통령, 국무총리, 행자부·산자부·환경부·건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지속위 위원장 및 본위원(7명), 연구팀 간사, 청와대(9명) 등 60명
  - 보고 내용 :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주요 지시사항
  -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신뢰회복으로 사회적 합의의 틀 마련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등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갈등다발 및 소지가 많은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갈등관리교육 강화
- 법·제도 개선관련 지시사항
  - 공권력 우월(정부중심·행정우월)적 사고가 법·제도에도 들어 있으므로 법체계중 문제점 있는 부분을 연구해 나갈 것
  - 법·제도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사항들을 파악해서 분석할 것  
(“예컨대, 사업이 확정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므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고 법과 제도간에 충돌되는 것들이 있음” )

## 다. 공공갈등관련 법·제도개선의 목표·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1) 사업목표

-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
  - 미래세대의 수요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현재세대의 수요를 충족
  - 사회적 형평과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달성
  - 개발이익과 보전이익의 조화
-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 법은 정책을 형성하고 추진하는 도구로서 기능
  - 사회변화를 반영·촉진하지 못하는 법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
  - 원인요법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행 법제를 정비
- 입법과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 명령과 통제에서 참여와 협력으로
  - 사후적 구제에서 사전적 예방으로
  -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에서 조정으로

## 2) 추진방법

- 심층분석 및 비교형량
  - 사회적 욕구와 의식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 [법사회학적 방법의 원용]
  - 법집행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교량 [법경제학적 방법의 원용]
  - 법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관련 법제의 구조와 기능을 진단
- 입법정책의 전환
  - 국민을 통치의 대상이 아닌 협치(거버넌스)의 동반자(파트너)로 인식
  - 행정의 개방 및 정보의 공개를 적극적으로 확대
  - 법률상 국민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
- 입법기술적 보완
  - 행정의 편의를 위한 법제를 국민의 편익을 위한 법제로 전환
  - 정책형성의 체계 및 정책상호간의 정합성을 모색
  - 복잡한 위임입법을 간소화하고 법제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증진

## 3) 기대효과

-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
  - 정부와 기업외에 국민을 공공사업의 주체로 설정
  - 비용효과 중심의 공공투자 구조를 비용편익(BC) 구조로 변경
  - 공공사업 관련 사회적 갈등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소
- 법질서의 간소화·유연화
  - 법의 홍수 현상을 극복하여 법의 실효성을 증진
  - 형식적 부패감시(엄격법) 보다 법집행의 구체적 타당성(형평법)을 도모
  - 공공사업이 실패하거나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에 대안 및 책임의 모색
- 법 집행자로서의 정부에 대한 신뢰 확보

- 정부와 기업 및 민간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대립·갈등 구조를 극복
- 법집행 기관 스스로의 재량을 저해하는 “대내적” 행정규제를 완화
- 사업자 또는 법집행 당국의 재량과 그에 따르는 책임 구조를 정립

## 2. 분야별 갈등현황 및 개선방향

### 가. 총괄

#### 1) 공공갈등의 발생 및 증폭의 원인

##### □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등 사회변화

###### ○ 세계화

- 국경없는 경제체제의 형성은 정보의 세계화, 보편화, 국민국가의 권력약화 등의 현상을 야기하여 정부의 상황통제력을 약화시킴

###### ○ 정보혁명

- 인터넷 등으로 인한 정보혁명은 일반 국민들이 공공사업이나 공공정책과 관련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정책결정에 대한 의견 형성을 가능하게 함

###### ○ 민주화

- 억압되었던 제 사회이익이 급격히 표출되면서 이를 조절하는 윤리의식이나 사회적 조절기제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있음

###### ○ 참여민주주의의 확산

- 세계화 경향과 관련하여 NGO의 협치(Governance)에서의 역할 증대를 초래함. 참여민주주의의 확산은 시민단체가 행정의 일방적인 공공결정에 제동을 걸고 갈등적 상황을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됨

###### ○ 사회의 분화와 다원화

- 공익에 대한 보편적 관념이 사라지고 계층별, 영역별 이익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공익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횡행

##### □ 준법의식의 약화

- 권위주의 시대의 기성질서에 대한 저항의식이 결과적으로 법의 권위를 떨어뜨림
- 민주화 이후에도 일반국민 사이에서 법질서에 대한 존중이 학습되지 못하고 있음

###### ○ 승복부재의 문화

- 승복은 곧 실패라고 하는 사고가 국민 사이에 팽배
- 이러한 승복부재의 문화는 국민들의 오랜 사회적 학습의 결과이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노력과 시간이 필요

- 법치주의의 미성숙으로 인해 법절차에 따른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며 실제로는 법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국민의식이 존재

##### □ 행정과정의 모순과 변화에 대한 적응성의 부족

- 공공정책 및 공공사업과 관련된 결정에서 행정청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민에 대해 신뢰배반의 피해의식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았음

- 행정청이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이나 사실확인 과정에서 편향적인 입장을 보여 국민으로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음
- 행정청의 정책결정단계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민감한 집단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음
- 행정청이 공공정책결정과 관련된 고급정보를 독점하거나 이를 효율적으로 이익집단과 공유하지 못하여 정책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공감대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세계화, 정보혁명, 민주화 등으로 인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의사결정 방식이 여전히 일방적, 명령적인 과거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국민의 정보능력과 분석능력이 이미 행정청과 대등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보수집능력과 분석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안이한 정책분석과 대처로 국민의 불신을 사는 경우가 많았음

□ 갈등처리문화의 미성숙과 갈등관리의 미숙

- 사회변화에 따라 공공갈등이 빈발하는데도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없었고 이에 따라 행정청과 국민은 모두 갈등처리에 능숙하지 못함
- 선진국과 유사한 사회변화의 과정을 겪는 경우 공공갈등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갈등관리에 대한 철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었음. 결과적으로 갈등관리의 효율적인 제도나 사회적 관리기제가 형성되지 못하였음
- 대안적 갈등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과 같은 갈등관리의 기법이 공공갈등 해결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음
- 갈등이 발생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해관계의 해결책(예컨대 보상)을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시기에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2) 공공갈등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 공공의사결정과정의 개선

- 참여민주주의 사상의 확산과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행정체제의 전지구적 차원의 경쟁 그리고 민간의 정보력의 향상과 민주화의 진전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이제는 국민을 단순한 행정객체로서가 아니라 파트너로 그리고 고객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정환경의 패러다임전환을 가져오게 됨
- 국민을 행정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서는 행정에 있어서의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여야 함
- 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보장하는 각종 행정절차제도의 정비 및 강화가 필요함
- 따라서 다수 국민의 이해에 관계있는 사안이거나 또는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공론조사, 시민배심, 합의회의, 시나리오워크숍 등의 심의적 의사결정(deliberative decision-making) 방식을

채택하도록 행정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행정계획 등의 입안과 결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의사결정을 위한 사실관계조사에 있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사실관계조사의 편향성과 왜곡가능성은 심각한 집단갈등의 유발원인이 됨
- 국민의 의사결정에의 참여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단순히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참여제도의 도입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단계 단계마다 국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이 피드백 되어 실질적으로 참여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의 경우는 특히 의사결정과정의 공동결정에 준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해관계인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과 관련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있는 NGO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함. 아울러 불량 NGO로 인한 문제 또는 NGO의 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수범자의 입장에 선 법제도 수립과 엄격한 법집행

- 민원이나 사회갈등과 관련되는 법제는 수범자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제도화하여야 할 것임. 현재 수범자의 입장에서 큰 불편을 초래하는 법제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개선해 나갈 필요 있음
-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법제는 준법의식의 약화와 부패의 원인이 되므로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를 철저히 집행함으로써 법의 권위를 세워나가고 법질서를 위반하는 이익대변이 용납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국민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의 확보

- 행정청은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면밀한 사전 검토와 분석, 이해관계에 대한 검토, 갈등영향에 대한 검토 분석 등을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침을 찾아내어야 함.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요망됨
- 행정청이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함.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요구됨
- 행정청의 정책결정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진행되어야 함. 국민의 예측을 벗어나는 새로운 결정을 할 때에는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함

□ 행정의 투명성과 정보의 공유

- 행정청의 의사결정 과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밀실행정의 우려가 있는 의사결정과정은 대폭 개선하여야 함
- 정보공개는 행정청의 입장을 국민으로 하여금 이해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 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행정과 이해관계인이 모두 동일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동의 인식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갈등 해결수단의 정비

-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집단에 대해서, 손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실질적인 보상책을 제도화하여야 함
- 공공갈등은 소송 보다는 합의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합의촉진적 제도 또는 대안적 갈등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기법을 도입하여야 함
- 공공갈등과 관련된 기존의 ADR제도가 효율적이지 못한 이유를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하며, ADR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부수적인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함
- ADR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공무원의 교육, 전담인력의 양성 등에 대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할 필요 있음
- 분쟁해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NGO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들을 협상태이블에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 나. 국토이용 분야

### 1) 현황 및 개선방향

□ 갈등발생 현황

- 국토개발·이용분야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여타 관련법과의 관계하에 국토개발 및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추진의 골격은 도시(군)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도시개발공공사업으로 되어있음. 도시(군)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은 시·군의 장기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으로 직접적으로 개인재산권을 구속하지 않으며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됨
  -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이용을 직접 규제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포함)·용도구역·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을 입안·결정하기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야기됨
- 또한, 공공주체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도시개발공공사업으로는 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시설·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및 비도시계획사업의 택지개발사업 등이 있음
  - 이들 사업의 시행이 예정된 구역 또는 예고된 지역 일원의 주민들과 지자체·사

업시행자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음

□ 문제점

-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공공사업의 집행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1)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도시개발공공사업의 잘못된 체계 운용, 2) 계획수립 및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 미비, 3) 도시기본계획 내용의 부실에서 기인하고 있음
- 각종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공공사업의 추진은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도시개발사업의 하향 일방적으로 경직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청사진적 계획내용의 도시기본계획이 한번 수립되면 개인의 재산권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이러한 경직성으로 인해 무리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장기 미집행의 도시계획시설을 양산하거나, 도시개발공공사업의 집행단계에서 갈등이 나타남
- 절차적 측면에서 해당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 이유는 1) 도시기본계획의 공청회가 매우 형식적이며 2) 도시기본계획이 도면중심의 개인적 이해관계의 확인에 불과하고 3) 도시관리계획 공람도 이해관계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되며 4)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제출한 의견의 조치도 형식적임
- 도시기본계획은 계획 예고나 결정이 토지가격의 변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도면위주의 청사진적 계획으로 수립되어 도시계획에 의한 우발이득 및 손실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음
  - 한편 단기간에 모든 사항을 망라하여 계획을 수립하므로 계획내용이 부실하게 되고, 교통·환경·경관 등의 부문과도 전략 및 정책목표 차원에서 조율되지 못하고, 상호연계성이 치밀하지 못함. 이로 인해 결국 사업시행단계에 가서야 갈등이 표면화하게 됨

□ 개선방향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공공사업이 현재와 같이 3단계의 하향일방적 체제가 아니라, 각각의 본래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세 제도간의 유연한 상호 작용(flexible interaction)을 하는 체제로의 운용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우발이득과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 가야 할 것임
- 도시기본계획을 장기간에 걸쳐 철저히 수립하도록 하여 관련 분야 및 기관 간에 사전조율 과정을 거치고, 지역주민들도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동체적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도시기본계획의 계획 스타일을 청사진적 계획에서 명실공히 전략중심의 정책계획으로 전환하여야 함
  - 도시기본계획의 계획과정에 지자체, 중앙정부기관, 시민, 기타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보완하여야 함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과정에 주민 등 관련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러한 절차의 실질적 운영여부를 체크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

- 입안·결정과정 에 대한 법적 기준 충족뿐만이 아니라, 제시된 이견사항들이 실제적으로 논의되었는지의 여부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함

## 2) 갈등사례

### ① 신도시 건설추진 (김포 양촌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 근거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9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동법 시행령 제15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3(주민 등의 의견청취), 동법 시행령 제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 □ 실태 및 문제점

##### ○ 실태

- 2001년 12월 10일 건설교통부장관의 김포도시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김포시 양촌면, 장기동, 운양동 일원이 시가화예정용지로 설정됨(320만평)
- 김포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주민 공청회에서는 개발에 대한 반대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임
- 2003년 5월 8일 건설교통부가 신도시건설계획을 발표하고, 5월 13일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지구지정추진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공람을 실시하면서 주민들이 반대를 표명

##### ○ 문제점

- 2003년 10월 21일 신도시건설 반대 투쟁위원회가 발족하여 신도시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발예정지를 선정하여 강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람 주민(2,079명)의 96%가 반대

#### □ 제도개선 필요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에서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에 대한 원칙, 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여 입지 선정 이전단계에 주민들의 사전적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② 광역협오시설 입지선정 및 결정(원지동 추모공원)

#### □ 근거법령

-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광역시설), 동법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동법 시행령 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동법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동법 시행령 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 □ 실태 및 문제점

##### ○ 실태

-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장묘문화개선 및 제2화장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및 인천시가 참여하는 수도권 광역행정협의회에 상정,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가 반대하여 무산됨(대상후보지: 경기지역 12개소, 서울지역 13개소)

- 서울시는 광역차원에서 협의추진이 어려워지자 서울 지역 13개소 중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추천받은 원지동으로 최종 결정하고 서초구 및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추진
- 서울시의 장묘정책 전환, 국가중앙의료원 이전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여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을 국가중앙의료원 부속시설 화장장 건립사업으로 성격을 변화시키려하자 개발제한구역 주무부서인 건교부와도 갈등이 생김

#### ○ 문제점

- 입안단계에서부터 중앙정부 및 관련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함에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동의를 받아낼 수 없었고, 오히려 반감만 키우게 됨
- 서울시가 서초구 및 지역주민과 합의를 보지 못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계속하다 결국은 행정소송으로 비화되었고, 시장선거와 연계되면서 사업추진이 표류하게 됨
- 서울시와 서초구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상태는 서울시가 인센티브 패키지 방식을 고려함과 아울러 지역별 분산추진방식으로 전환하여 합의점을 찾고자 함
- 화장장 등의 광역협오시설은 해당 지자체간 및 주민들 간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 조정하는 절차를 두고 나중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식화함이 필요

#### □ 제도개선 필요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동법 시행령 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동법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동법 시행령 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에 광역도시계획의 설치 원칙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시설 입지를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③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

#### □ 근거법령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기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 실태 및 문제점

##### ○ 실태

-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정책에 따라 2001년 9월부터 개발제한구역내 20호 이상 집단취락은 일정한 밀도기준에 해당하면 해제기준에 따른 범위를 정해 조속히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2년 반이 경과한 지금까지 취락해제가 크게 지연됨으로써 주민들로서는 재산권행사가 늦어져 정부에 대한 불신 또한 증폭되고 있음

○ 문제점

- 취약해제시 권리관계의 공평한 조정없이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취약해제를 추진하면서 신설되는 도시계획시설에 의해 일부 토지소유자에게만 특별한 희생이 강요되고 있음
-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한 도시기반시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민원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큼

□ 제도개선 필요사항

- 취약내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은 주민들의 합의하에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관련지침 보완이 필요

④ 도시기본계획 제도개선

□ 근거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50조(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 실태 및 문제점

- 대구시는 낙동강변의 달성군 위천면 일대 2백10만평을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1995년부터 지정을 추진해 왔으나, 낙동강 상수원의 오염 등을 우려하는 부산·경남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계속 표류해 오
-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영세공업시설 등 혐오시설을 도심에서 위천공단으로 옮길 경우 서대구공단과 3공단 일대를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1997년에 2016년을 목표연도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기존 공단일원을 미리 주거용지로 반영함
- 그러나, 7년넘게 계속되온 위천국가공단 지정노력이 부산·경남 등 낙동강 하루 지역의 반발 등으로 성사되기 어렵게 되자, 대구시는 2003년 12월 15일 ‘서대구공단’ 과 ‘3공단’ 일대가 새로운 도심공단으로 구조가 재편되는 추세에 있는 데다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들 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원상태인 공업지역으로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광역도시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2004년 하반기 중 도시관리계획재정비까지 끝마친다는 계획임을 밝힘
- 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정해놓으면 당연히 도시관리계획재정비도 그렇게 바뀔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 며 반발하고 있음

□ 제도개선 필요사항

- 현재 도면위주로 된 청사진적 계획의 도시기본계획을 주민 및 관계자들이 토의하여 합의해가는 전략목표와, 정책목표 및 프로그램 중심의 전략계획·정책계획으로 완전히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 ⑤ 도시계획시설 건설(서울시 마포구 성미산 배수지 건설)

### □ 근거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주민 및 지방의회의의견청취

### □ 실태 및 문제점

- 1993년 2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마포구 성미산 정상 약 1만평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수도로 변경하고 1997년 11월 ‘성산배수지 건설 실시계획’ 인가를 얻어, 2001. 4. 부지매입,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도 완료
- 2001년 7월 모재단의 성미산 일부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비로소 인근 주민이 배수지 건설계획을 알게 됨. 이에 주민들은 ‘성미산을 지키는 주민참여연대’ 를 결성하여 배수지건설계획에 반대하기 시작함. 2003년 3월에 주민단체는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성미산 개발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가 “성산배수지 재검토요청 자료집: 대안방식을 통한 재검토 제안” 이라는 자료집을 발간
- 2003년 10월 16일 상수도본부는 서울시 의회에서 성미산 배수지 공사 건설 유보를 공식적으로 결정. 2004. 5 현재까지 사업시행 유보 중
- 사업추진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주민들은 사업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으며, 그 내용을 우연히 인근계획의 절차를 통해 알게 됨. 도시계획시설 주변의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후 뒤늦게 결정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갈등이 심화된 사례로서, 이러한 갈등을 발생시킨 제도적 요인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의견청취), 시행령 제22조에 주민공람제도가 있으나, 형식적 장치에 불과한 데서 기인함

### □ 제도개선 필요사항

-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방법을 인터넷 홍보 및 주민설명회 등으로 다양화하여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초기에 관계행정기관은 복수의 부지 및 설계 대안과 각 대안에 대한 환경성 및 각종 평가를 주민들과 공유, 설득과 협조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
- 주민과 이견이 표출되는 경우 공개청문회제도를 통해 공개적으로 토의하여 합의를 형성해가는 장치가 필요

## 다. 환경·생태 분야

### 1) 현황 및 개선방향

#### □ 현황

- 환경갈등은 환경을 매개로한 갈등으로,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통해 경제적, 비경제적 피해가 초래되는 경우가 나타남
  - 참여정부가 선정한 24개 사회적 갈등현안 중 7개 사항이 환경갈등분야일 정도로 환경갈등의 정도가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수준임

#### ※ <7개 환경갈등 현안>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관통사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구간 건설, 한탄강댐 건설, 경인운하 건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새만금 간척사업, 소각장 건설

#### □ 문제점

- 환경갈등은 갈등당사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의미하는 이해갈등(interest conflict)과 환경·생태주의 가치관과 개발주의 가치관과의 충돌로 나타나는 가치관갈등(value conflict)으로 나눌 수 있음
  - 대부분의 환경갈등의 경우 이해갈등과 가치관갈등이 중첩되어 나타나나 특정 환경갈등 현안에서 이해갈등과 가치관갈등의 당사자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갈등 해결과정에서 차별적인 접근이 요구됨
  - 환경갈등은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발생하나 그 심화는 의사결정과정 및 갈등해결과정의 절차적 비합리성 (밀실행정, 일방적 의사결정, 상호불신 등)에 기인함
- 이해갈등에서 피해를 매개하는 환경은 생태계와 같은 시스템으로서의 환경이 아니라 소음, 대기, 수질, (수용)토지 등 개별구성요소로서의 환경이며 직접적이며 국지적임
  - 피해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확정도 용이함
  - 보상의 대상, 크기가 갈등의 주요 쟁점임
- 가치관갈등에서 피해를 매개하는 환경은 시스템으로서의 환경인 경우가 많음
  - 가치갈등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지점이 환경에 대한 가치평가라는 점에서 가치갈등은 가치평가의 갈등으로 나타남
  - 환경시스템 및 생태계 내부의 작동기제에 대한 정보는 근본적으로 불확실하므로 환경·생태가치의 객관적인 측정은 불가능
  - 환경·생태가치의(또는 환경오염의 비경제적인 피해의) 가치평가는 따라서 주관적이고 가치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짐

#### □ 개선방향

- 주민참여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절차적 합리성을 담보하여 환경 부문의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
- 가치관갈등은 일종의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법률로 규정하기 어려우나 이해갈등의 경우 간접피해를 포함한 경제손실의 보상을 명문화

## 2) 갈등사례

### ① 쓰레기소각장 건설

#### □ 근거법령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 제9조(폐기물시설의 입지선정) 내지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결정·고시), 동법시행령 제7조(입지선정위원회)

#### □ 실태 및 문제점

- 폐촉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1개 시군구내에 소각장이 설치되는 경우 시군구 의원, 시군구공무원, 의회가 선정한 주민대표, 자치단체장이 선정한 전문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등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시 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함으로써 갈등이 유발 됨
  - 경주시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시 주민대표를 폐촉법 시행령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정하지 않고 관변단체를 시측에서 자의적으로 선정하여 갈등이 발생됨
  - 법적으로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미비 됨

#### □ 제도개선 필요사항

- 폐촉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입지선정위원회)를 개정하여 지역시민단체의 참여를 제도화
- 폐촉법 제 17조(주변지역의 결정·고시) 내지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간접영향권의 범위) 내지 제27조(주변영향지역지원등)를 개정하여 직·간접 영향권의 범위확대 및 제외된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상안 마련

### ② 국립공원제도

(주 : 국립공원과 관련된 공공사업갈등은 다른 부문에서 다루어지므로 여기서는 국립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주민갈등에 국한함)

#### □ 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제73조(손실보상), 제76조 (협의를 의한 토지 등의 매수),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 □ 실태 및 문제점

- 국립공원이 지니는 두가지 가치인, 자연환경의 보전가치와 관광 및 휴식적 가치간의 상충으로 인해 국립공원의 절대보전과 상대적인 보전·이용을 주장하는 집단간의 갈등 발생
  - 국립공원지역의 엄격한 개발제한 결과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임

- 국립공원 중 육지면적의 43%가 사유지임
- 주민민원은 사유지를 국가가 매입함으로써 원천적으로 해결가능하나 재원조달 문제가 있음
- 거주주민들의 재산손실 보상의 통로는 크게 두가지임
  - 자연공원법 제15조 (공원계획의 변경등)에 따르면 매 10년 마다 용도변경을 포함한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음(2003년 8월 30일 국립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의 변경을 결정·고시)
  - 자연공원법 제73조와 제77조에 따라 자연공원지정에 따른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실을 현금보상할 수 있음
  - 그러나 행위제한에 따른 간접적인 손실의 보상규정은 부재
- 제도개선 필요사항
  - 민간의 National Park Trust운동의 지원: 예를 들어 최소한 민간부문의 투자액만큼 정부가 지원하도록 자연공원법상 조항 신설
  - 자연공원법 제15조의 타당성 검토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 간접손실을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보상하는 규정의 신설

### ③ 환경영향평가제도

- 근거법령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영향평가법), 환경정책 기본법
- 실태 및 문제점
  - 현재 실시중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영향평가법에 기초한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한 사전환경성검토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예측하고 그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
    - 그러나 구체적 사업 (project) 실시 단계에서 실시하므로 타 사업과 관련된 누적적, 간접적 영향을 고려하기 어렵고 그 사업의 대안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함
  - 사전환경성검토는 개발이 전제되거나 개발이 전제되지 않으나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함
    - 그러나 행정계획이 실질적으로 확정된 뒤에 실시되므로 복수대안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시행절차를 규정하기 어려우며 환경영향평가와 연계성이 부족
  - 영향평가법 제6조는 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주민의견이 평가의견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불복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제도개선 필요사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시기를 계획확정 또는 승인이전이 아니라 계획수립과정에서 하도록 개정

-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를 단일법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불복절차를 영향평가법내에 포함시킬지 일반법에 의해 규정할지 논의 필요

## 라. 해양·수산 분야

### 1) 현황 및 개선방향

#### □ 현황

- 「해양자원과 공간」은 사적소유가 허락되지 않은 공공재(common property)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양·연안 공간에 대한 이용과 개발사업은 공공분쟁의 직접·간접의 원인이 됨
- 해양수산분야 갈등은 크게 i) 해양공간내 보전과 개발, ii) 육상경제활동과 해양생산 기반 보전·유지 사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갈등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
- 갈등내용이 경제적 이해(예, 보상비 규모)갈등보다는 가치관(갯벌생태계와 해양환경 보전)차이에서 나타난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1990년대 초반까지는 연안 매립·개발과 전원시설입지에 따른 보상비 규모를 둘러싼 갈등이 대부분이었으나, 해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환경·생태계보전과 자원의 이용·개발 관련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직접이용자와 시행주체간의 갈등보다는 간접이용자(민간단체, 전문가)와 시행주체간의 갈등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1990년대 중반이전에는 지역주민(특히 어민)과 사업시행주체(공공기관, 행정기관)간의 갈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후 갯벌, 해양생물서식지, 산란지,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과 경관에 대한 적극적 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확대 되면서 간접이용자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관할 경계지역의 자원과 공간이용에 대한 행정기관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
  - 육상기인오염원관리·생태계보전, 수산자원 이용, 광역지방자치단체간 경계설정 등은 행정기관간 갈등사례라 할 수 있음
-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통치(governing) 개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협력과 참여를 중심개념으로 한 협치(governance) 개념이 강화되고 있음
  - 환경관리해역 지역포럼, 해양폐기물 민관협력 사업, 자율관리어업, 바다대청결운동 등 민·관 상호협력, 정책결정과 시행과정에서 민간영역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
  - 또한 민간단체의 역할이 저항과 견제에서 견제/협력/대안제시로 변화하고 있으며, 법률과 제도에서 참여와 협력을 수용하기 위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음

#### □ 문제점

- 해양수산분야 갈등은 이용자간 갈등, 이용자와 정부간 갈등, 정부기관간 갈등과 같이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형별 갈등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음
  - 이용자간 갈등 발생원인
    - 이용자간 공간에 대한 경쟁

- 연안육지부의 공간과 시설에 대한 경쟁
- 자원이용에 대한 경쟁
- 특정 이용행위가 다른 이용행위가 일어나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 이용자와 정부간 갈등 발생원인
  - 정부의 정책투명성 미흡
  - 이용자의 정책 참여제도 기반 미약
  - 정부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의사결정 구조 미정립
  - 정부정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체계 미흡
- 정부기관간(부서간) 갈등 발생원인
  - 서로 다른 법적 기반과 역할
  - 기관간(부서간) 행정집행 방식 차이
  - 외부의 관련 이익집단의 차이
  - 정보와 대화의 부족
- 갈등은 사회발전이 건강하게 진행되는데 기여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갈등발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i) 사전에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ii) 발생한 공공분쟁 관련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정책결정과 집행이 미뤄지고, iii)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우선순위가 높은 현안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국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iv) 이로 인해 정부정책의 불신과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국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분야에서 공공분쟁 관련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억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률과 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특히 공간과 자원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갈등에 대해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해양수산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 개선방향
  - 공공분쟁 관련 갈등관리는 “갈등발생 사전억제를 위한 정책인프라 구축” 과 “갈등조정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갈등발생 억제 정책인프라 구축(Front-of-pipe)
    - 갈등관리역량 강화와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법정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참여와 과학에 의한 정책결정 및 합리적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와 공유
    - 이해당사자간, 이용자와 정부간 일상적 협력사업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 학습 강화 및 경험축적
    - 갈등을 일상적 정책의 하나로 인식하여 예산과 인력 배정
  - 갈등발생시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End-of-pipe)
    - 갈등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기술

- 과 조사방법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전통적 지식 통합
- 갈등관련 직접, 간접이용자가 조정과정에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
- 갈등 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절차, 갈등해결 방법, 참여주체, 소요예산, 갈등 조정 시한 등에 대해 유형별로 조정메커니즘 제시
- 개발로 인해 손상을 입은 이용자가 삶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보상체계 구축

## 2) 갈등사례

### ①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 □ 연안·해양 보호구역 지정 근거법령

- 생태계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제8조), 환경보전해역(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 특정도서(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4조), 수산자원보호구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 천연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제8조), 자연공원(자연공원법 제4조), 해중경관지구(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 □ 실태 및 문제점

- 연안의 보호구역을 둘러싼 지역주민, 이해당사자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생물종 다양성 유지에 중요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생태계와 경관보호에 어려움
- 1997년 사천시 소재 강진만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
- 국립공원 구역 조정·해제,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해제 요구가 자칫 연안해양공간에서 보호가 필요한 자원과 환경 훼손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음.
- 연안(해역과 육역)의 보호구역 지정관련 근거법률에서 지정기준과 절차가 일부 법률에서는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중복지정된 사례도 많아 지정과정 및 관리과정에서 지역주민을 관리주체로 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
- 보호구역 지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인식제고, 보호구역 지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의 과학적 입증,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피해 보상조치 등 제반의 현안 해결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지정 후 관리대책 부재” 라는 우리나라 보호구역 관리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 제도개선 필요사항

- 전반적으로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과정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관리 과정에 지역주민과 민간단체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각 보호구역의 특성이 반영된 지정기준과 절차를 확보하고, 보호구역 관리 우선 순위를 마련하여 보호구역의 중복지정 방지 및 관리비용·역량의 효율적 활용 실현

-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홍보를 통해 인식을 높여, 타당성이 취약한 보호구역 해제 요구나 과도한 지원사업 요구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
  - ※ 지역주민 지원사업은 강화하되 과도한 지원사업은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이해당사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 타당성이 높은 보호구역 조정·해제 요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고, 행위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생활의 불편함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주민 지원사업을 통해 상쇄하거나 환경훼손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위제한 규율을 탄력적으로 운용

## ② 발전소 온배수 배출

- 발전소 운영과 어업피해 보상 근거법령
  - 공익사업(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손실보상(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장), 사업의 우선시행(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 공익상필요에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수산업법 제34조), 보상(수산업법 제81조)
- 실태 및 문제점
  - 전국 연안지역에 입지한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로 인한 환경영향과 수산자원 피해 발생
    - 울진 원전의 온배수 배출로 인해 양식광어 5천마리가 폐사하고 서식어종이 급감하는 등 환경, 생태, 경제적 피해발생
  - 피해범위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범위에 대한 조사기관의 연구결과가 상이하어 갈등 증폭
    - 영광 원자력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영향 범위 산정은 보상금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1998년(한국해양연구원/군산대학교: 4.45km 차이)과 2002년(한국해양연구원/한국해양학회) 조사에서 연구기관별로 상이한 결과 제시
- 제도개선 필요사항
  - 온배수 배출로 발생하는 해양환경, 생태계, 수산자원 피해영향 평가를 위한 해양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 해양환경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해양환경영향 평가항목, 조사횟수, 분석방법 등 온배수 조사방법을 표준화하고 배출기준 마련
    - 해양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평가 전문성 강화
    - 평가기관 자격심사 강화 및 평가예산 현실화
  - 피해조사 전에 이해당사자와의 조사기관, 조사절차, 지역특성을 반영한 추가 조사체계(조사항목) 등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 연안의 사회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태계와 수산자원에 대한 피해보상을 둘러싼 갈등사례는 화력발전소, 유류오염, 모래채취 등이 있음

### ③ 마산만 유역개발

#### □ 마산만 준설토 매립 관련 근거법령

-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4의 제2항(환경보전해역 등에서의 행위제한), 항만법 제2조(항만시설)와 제3조(항만의 개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의 2(도시계획)

#### □ 실태 및 문제점

- 오염우심해역인 특별관리해역내에 준설토 매립지를 주거·상업시설로 활용하려는 마산시와 도시시민공원으로 개발하려는 시민단체간 갈등
  - 반폐쇄성 해역인 마산만은 만성적 부영양화와 COD기준 III등급을 초과하는 수질 상태를 보여 오염우심해역인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오염부하를 추가적으로 저감하지 않을 경우 해역관리목표 달성 불가능
  - 민간단체는 마산만내 준설토 매립지를 비점오염원 저감과 도시민의 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한 공원조성을 주장하는 반면, 마산시는 주거·상업용지로 개발하려는 계획 추진
- 이와 함께 마산항의 추가개발은 마산만에 대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하여 환경수용력을 떨어뜨림으로써 환경관리목표 달성에 한계요인
  - 마산만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압력요인(연안개발, 인구집중)을 최소화하고, 대응(점, 비점오염부하 저감)을 강화해야 하는데, 환경수용력에 근거한 육지부 이용개발 조정체계가 미흡

#### □ 제도개선 필요사항

- 환경자원관리 목표, 환경수용력에 근거하여 육지부 이용개발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역관리체제 시행을 위한 법률제도 개선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4조의 3(총량규제)을 포괄적인 유역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총량관리조항으로 변경하고 총량관리 시행에 필요한 기관 운영 근거조항 마련
- 연안육역 공간계획 과정에 환경질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지역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제도화
  - 오염원의 집중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한 집중투자가 필요한 해역인 환경관리해역 조사지침(항목, 방법, 기관)을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에 포함
  -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에만 반영되어 있는 지역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지법에 관리해역지정, 관리해역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조항 추가
  - 통합관리주체의 의사결정이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훈령' 형태가 아니라 해양오염방지법에 통합관리주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
- 갈등정도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육상기인오염부하량을 산정하고 생태계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첨부

### ④ 시화호

#### □ 근거법령

- 시화호 유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9조 특수지역개발사업 대상지역인

‘반월특수지역’ 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해 성장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음

※ <특수지역 개발사업>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 국가나 지자체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포괄적인 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 개발사업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 실태 및 문제점

- ‘94년 시화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 시화호의 수질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주변지역의 산업단지와 택지개발로 인해 오염부하량이 증가하였음
- 방조제 물막이 완료 후 시화호 저층에는 고염분 수괴가 그대로 잔류하여 담수호로서 기능이 떨어지고, 증가한 오염물질이 저층의 수괴에 침적되면서 저산소층이 나타났으며, 오염물질이 시화호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적조 등 부영양화가 발생하고 있음
- 배수갑문 조작을 통한 해수화 후에도 중상류해역의 유기물오염, 중금속·유해화학물질 오염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시화호 간척용지에 대한 추가 이용방안을 둘러싸고 관련부처·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전문가 간에 이견 발생

□ 제도개선 필요사항

- 주민의 일정한 요구가 있을 때만 실시하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일정규모의 사업에 의무화하여 관련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할 필요 있음
  -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법률 제07186호)」 제6조(의견수렴) ‘~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는 공청회 개최의 선택적 요건을 강화하여 모든 대상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제도 정비
-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실시한 후 지역주민은 개발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나,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가 계획수립 과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주민대상 교육·홍보와 의견수렴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사업의 비밀보장이 필요한 경우 환경과 관련된 부서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의 환경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문을 영향평가법에 신설하여 계획과정에 환경적 영향을 미리 평가하도록 함
-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영향평가법에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개선)를 도입하여 계획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계획 수립 이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들에 포함되어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의제” 조항을 삭제하거나 최소화

⑤ 바다모래 채취

□ 근거법령

- 건설부, 산업자원부는 각각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와 「광업법」에 의한 광물(규사)의 채취허가를 관장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관리법」과 「해양오염방지법」을 통해, 환경부는 「환경·재해·교통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통해 바다모래 채취의 환경적 문제를 관리하고 있음
- 실태 및 문제점
  - 「환경·재해·교통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을 골재채취면적 25만 m<sup>2</sup> 이상이거나 골재채취량이 50만m<sup>3</sup> 이상으로 최근 강화하였으나, 아직까지 해사채취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음
  - 동일 지역에서 해사채취를 하더라도 개별 사업자별로 영향평가 대상 이하의 채취량을 신고하면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해양수산부가 주관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영향평가 전체를 주관하는 환경행정의 이원화로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흡
- 제도개선 필요사항
  - 해사채취와 관련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전문성 확보
    - 영향평가법의 평가대상을 조사결과의 수치로만 결정하기보다는 환경 영향의 가능성이나 각종 보호구역과의 인접성 등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여 해사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진단하도록 함
    - 「환경·재해·교통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대상사업을 채취량이나 면적 요건에 추가하여 각종 보호구역에서 일정거리 이내에서 바다모래의 채취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
    - 채취 면적, 채취량 요건에 더하여 동일 해역에서 누적채취량이 일정량 이상인 경우 더 이상의 바다모래 채취를 금하거나 엄격한 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단서 조항 삽입
  - 「광업법」 3조의 법정광물에 포함되어 있는 규사와 「골재채취법」 2조 골재의 정의에 포함된 모래는 공유수면에서의 채취과정과 물리적 존재형태가 유사하므로 현재 개선 중에 있는 바다모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규사채취에도 동일하게 준용
    - 자원으로써 규사를 개념적으로 명확히 하고 일반 골재자원과는 구분하되, 광업권을 바다모래 채취사업 수단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사후 모니터링 수행
  - 지역주민의 생활공간 주변 지역이 아닌 곳(근해, EEZ 근접 수역)에서는 직접 이해당사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많으므로 간접이해당사자(민간단체, 전문가 등)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⑥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

### □ 근거법령

#### ○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제3호

-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순공사비·조사비·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

권을 취득함

○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0조

- 공유수면(갯벌) 매립지의 가격은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을 고려하여 결정함

□ 실태 및 문제점

○ 비교 감정평가에 의한 매립지 소유권 귀속방식의 실효성

- 매립지 인근 토지들의 거래가격은 적절한 기준이 되지 못함
- 매립후 대상지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거래차액 발생

○ “유사한 토지” 의 특정 가능성

- 매립대상지(갯벌) 인근의 다른 공유수면(갯벌)을 지칭하는가?
- 매립완료후의 용지와 비슷한 토지를 지칭하는가?

○ 감정시기에 따른 평가가액상의 편차

- 감정시기를 매립 “계획수립” 시로 설정할 것인가?
- 또는 매립 “준공후” 로 할 것인가에 따라 가격편차 발생

□ 제도개선 필요사항

- 매립사업자의 부당이득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
- 매립지와 목적사업에 따라 구체적인 감정평가 규정을 마련

## ⑦ 공유수면 매립면허 후 사정변경

□ 근거법령

○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공유수면의 상황변경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 또는 인가 등을 취소·변경할 수 있음

□ 실태 및 문제점

○ 시화호간척지의 사정변경

- 간척사업 후의 환경악화로 당초의 목적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에 무리가 따라 사업자(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는 담수호를 해수호로 전환하고 사업계획을 변경
- 시화호가 해수 즉 바다로 되돌아 갔음을 근거로 종래 수산업법상 공익사업을 이유로 제한되었던 역내 어업인들이 “어업권” 회복을 요구
-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므로 관할 행정청[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시화호 연안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는 기존의 토지이용계획과 이를 조화시켜야 함

○ 새만금간척지의 사정변경

- “농지를 복합산업단지로 변경할 수도 있다” 는 대통령(당선자)의 발언은 법률행위(행정처분) 자체는 아니지만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함
- 사정변경이 인정된다면, 관할 감독청(해양수산부)은 제3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매립면허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사정변경으로 매립면허의 취소[철회]가 일어날 경우에는 기존의 법절차[비용편익분석/

매립지가격평가/환경영향평가등]를 새로 밟아야 함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 있을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직권취소를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제32조)의 실효성이 사라짐
  - 사정변경이 일어날 경우에 원래의 관할 행정청[해양수산부장관]은 권한의 위임·위탁을 해지하고 해당 행정행위[사업면허]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것임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대법원 판례[판결 91누5792 : 1992.4.24]는 “행정청이 그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였을 경우에 그 권한을 잃는가”의 여부가 관건이 아니라,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에 중점을 두었음
- 제도개선 필요사항
- 간척실패의 경우에 토지이용계획·행정관할·사업자등의 변경
  - 사정변경의 경우에 기존절차에 의한 법률관계의 전면 재조정

## ⑧ 수산자원관리

###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9조제1항

- 마을어업은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한하여 면허

○ 수산업법 제14조제1항

- 마을어업등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
-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할 경우에 그 유효기간을 10년내로 단축

### □ 실태 및 문제점

○ 면허어업권의 재산권적 성격

- 어업면허의 장기화는 어업인들의 생계유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만 다른 한편 어장의 사점화를 촉진

- 어업인들은 어업권의 재산권성을 강조하고 어장관리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장의 오염이 심화되고 생산성이 떨어짐

○ 자연자원관리상 “특허” 법리의 실효성

- 수산업법상의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은 명문상 “면허”·“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법리상 “특허”에 해당
- 특허 법리상 자원관리등을 위하여 어업면허 또는 허가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실제 집행이 곤란

### □ 제도개선 필요사항

- 어업권에 부여되는 배타적 이용권리와 자원관리의무를 연계

## 마. 에너지·수자원분야

### 1) 현황 및 개선방향

□ 현황

- 과거 개발연대에는 에너지, 수자원분야 사업관련 갈등이 적었으나 1990년대 이후 삶의 질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발전소(원자력, 화력), 송전탑,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댐 건설 등 에너지, 수자원 관련 갈등이 증가
- 개발연대에는 환경과 위험성(risk)에 대한 인식이 약했던 반면 1990년대 이후에는 에너지 관련 시설이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확산
  - 특히 1990년대 이후 발전한 환경운동은 원자력발전에 대해 비판적인 활동을 해 왔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위험성 인식도 확산
  - 단순한 이해관계갈등이 아니라 가치 갈등의 특성이 나타남
-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억압적인 지배가 사라지면서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도 약화되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확산

□ 문제점

-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식이 변하고 참여에 대한 국민욕구와 능력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수자원 관련 정부정책은 부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고 권위주의적, 폐쇄적, 경제적 보상중심, 공급중심의 정책들을 유지
- 불안 방폐장 갈등의 경우 위험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과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 그리고 환경단체의 반핵 중심의 가치갈등이 결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참여적 갈등조정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였음
  - ※ 과거 20년간 6차례 실패사례의 교훈을 정책과정에 반영 실패
    - “지자체장이 지역 대표”라는 형식적 합법성에 집착하여 기초의회의 부결과 부안내륙지역의 주민반발을 과소평가
    - 원자력발전정책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환경단체 등의 참여를 배제하고 방사성폐기물정책 및 원자력발전정책에 대한 공론화 부족
    - 가치갈등의 특성이 강했음에도 현금보상, 양성자가속기 등 경제적 보상 중심으로 접근한 데 대해, 부안내륙주민들은 ‘돈으로 매수’한다고 반발하고, 지역관광사업 및 농수산업 판매에 대한 타격 우려

□ 개선방안

- 1인당 에너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럽평균 및 일본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므로 경제와 환경, 사회갈등예방을 위해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수요관리중심의 정책으로 근본적인 전환 필요
- 기후변화협약, 시민사회 등의 추세를 고려하여 화석연료 및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체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개발지원 및 제도개선 노력이 중요
  -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예산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
- 원자력 발전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심하므로 미래 전력정책 방향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민적 합의형성을 위한 공론화

추진

- 참여적 정책결정을 통한 갈등예방과 조정 프로세스 추진
-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후 국민참여를 통한 새로운 정책결정과정 추진
  - 의제설정, 정책형성 및 결정, 이행, 평가 등 전과정에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고 그를 통해 정책의 실행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임
  - 위험성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안전’을 홍보하는 기존방식을 지양하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당사자와 공동으로 토론하여 최대한 합의를 형성
  -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위험성을 일부 지역주민들이 부담할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 보상에 대해서도 협의와 공론화를 통해 결정

## 2) 갈등사례

### ① 하천의 관리 및 이용

□ 근거법령

- 하천법 제11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 제11조의2(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과 변경)
- 제13조(경계하천의 관리), 제20조(하천유지유량)
- 제47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60조 및 제61조(하천관리위원회)

□ 실태 및 문제점

- 치수 시스템 위주
  - 강물의 배분 및 이용관계는 규율하지 아니함
- 경계하천에 관한 협의와 재정의 실효성
  - 국가하천에 관하여는 하천유지유량에 관한 고시 이외의 다른 예방장치 부재
- 수자원계획 또는 유역계획의 실효성 의문

□ 개선방향

- 물 관련 세제의 개선
  - 수자원 이용의 내재적 가치 혹은 상대적 가치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 기존의 물관련 조세의 부과범위 확대
  - 조세 부과요율 결정을 위한 원칙 설정
- 수계별 또는 유역별물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지역간 개발협력과 손익교환의 달성

### ② 댐의 건설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

□ 근거법령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4조(댐건설장기계획), 제6조(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조(기본계획)
- 제9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제3장 제39조이하(이주정착지 미

이주자등에 대한 지원)

○ 제23조(수익자 부담금), 제29조(담사용권의 성질)

□ 실태 및 문제점

○ 물관리에 대한 시장적 접근 미비

- 물오염의 통제에 관하여는 나름대로의 장치마련

- 상류지역과 하류지역간, 물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분쟁은 물에 대한 재산권이 정확하게 정의·배분되지 않았기 때문

- 공권력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물관리계획 만으로는 독점, 부당이득, 불평등구조 여전

○ 형평성의 문제

- 댐의 건설과 사용으로 인하여 현저한 피해를 보는 자에 대한 배려 부족

○ 단선적 접근방법

- 댐건설촉진의 특례와 그 반대급부로서의 지역주민에 대한 규제책만을 규정

- 자연자원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소하기에 어려움

□ 개선방향

○ 정부의 역할

- 정부에 의한 시장의 불확실성 보완

-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정보를 제공하거나 환경조건을 모니터링

- 환경회계와 재허가의 실행을 통한 정부의 감시자 역할 수행

○ 주민참가의 확대

- 개발 또는 건설계획에 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

- 환경영향평가의 기법과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실효성 제고

## 바. 농림·축산 분야

### 1) 현황 및 개선방향

□ 갈등발생 현황

○ 농림·축산분야의 갈등은 특정 사업 보다 농업정책이나 제도로 인한 갈등이 대부분으로 농업분쟁의 공공분쟁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농업과 타 산업부문간 갈등, 지역간 갈등, 농업인 내부의 영농규모나 생산품목 등에 따른 갈등이 중첩된 구조를 보이는 특징이 있음

○ 농림·축산분야 갈등은 첫째, 농업부문의 최대 현안이자 모든 농업부문 갈등의 전체적 갈등 성격을 띠는 농산물 시장개방을 둘러싼 갈등과 둘째, 농지, 농업협동조합, 농산물유통 및 가격, 농업재해, 종자분쟁, 축산분뇨 등을 둘러싼 개별 갈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 문제점

○ 농산물 수입개방을 포함한 농림·축산분야 갈등 전반과 관련하여 보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 미비, 농업과 타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 부족,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이익을 농업 부문에 환원하는 장치 부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이 생존·발전할 수

있는 방안(농업·농촌기본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지역농업, 환경농업, 통일농업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정책 미흡 등이 기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음

- 농지의 경우 생산수단으로서 농지와 자산으로서의 농지의 가치 충돌, 농지의 이용을 둘러싼 농업과 타산업 부문간 공익의 충돌, 지역간 지가편차 등에 의한 지역간 갈등, 농업인 내부의 영농규모, 품종에 따른 갈등 등 농업의 중첩적 갈등구조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나 최근의 정책은 농지의 자산으로서의 가치와 타산업의 요구, 자본의 농지투자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투기가 확대되고 있음. 그리고 농지전용 및 수용과정에서 대체농지 조성 및 생활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보상이 반복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정부와 조합(원)간의 갈등,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간의 갈등, 조합(직원)과 조합원간의 갈등, 구농협과 축협등 품목간 갈등,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둘러싼 갈등, 농협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 등과 관련한 정부 부처간 갈등 등 독특한 중첩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
- 종자분쟁의 경우 종묘회사와 농업인간의 분쟁이지만, 사전 조정절차나 소송과정에서 입증책임의 문제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부분들이 방치되고 있어 결국 빈번한 민원제기로 이어져 농업인과 정부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음
- 농산물 유통 및 가격을 둘러싼 갈등의 경우, 농업인과 정부, 유통업자, 소비자, 제조업자간 갈등이 중첩되어 있고 그동안 많은 대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불합리와 갈등이 상존하고 있음. 특히 농산물유통 마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소매 단계를 관장하는 산업자원부와의 업무협조 및 생산에서 소비까지를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함
-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전국화·국제화되고 있는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과 방역·검역체계 미비, 보상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한 정부와 농업인간 갈등이 반복됨
- 기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농업인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일실수입을 농촌일용농임으로 산정한다든지 고령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농업인의 정년을 타산업종사자와 유사하게 60세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은 농업통계의 신뢰도 문제, 농업에 대한 사법부의 무관심이 겹쳐 피해농업인과 사법부, 행정부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 □ 개선방향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업의 생존·발전 방향에 대한 국민적, 정부부처간 합의 도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농지의 공익적 기능 및 적정농지규모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등 농지전용과 관련된 타부처 소관 법률과의 통일성 확보,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보상부분 전면 개정을 통한 완전보상 지향
- 농업인,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을 만들기 위한 방안 강구, 조합원·임직원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 강화, 지역농업의 중심축으로서 농협 육성, “농협법” 개정
- 종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농업인의 입증책임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종자 산업법” 개

정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유통산업발전법” 정비
- “자연재해대책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작물보험법” 등 재해대책법의 정비, 보상현실화 방안 마련, 식품안전검역청 설치 등 농산물 식품의 검역·방역체계의 전면 개편
- 각 품목별, 영농규모별, 지역별 농업통계의 체계화, 현실화를 통한 농업통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 농업노동인구의 적정 정년에 대한 연구

## 2) 갈등사례

### ① 농지소유·보전·전용

#### □ 근거법령

- 헌법 제121조 제1항, 제122조, 농지법 제3조·제4조·제6조, 제4장 제2절

#### □ 실태 및 문제점

-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만연

- 2002년 1,862천ha의 농지 중 임대차 농지 44.8% 그중 비농업인 소유 임대농지 30%

- 도시근교나 개발예정지 농지에 대한 투기 확대와 농지가격의 지역간 차별화 심화
-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지의 지속적 감소, 불법적·탈법적 농지전용의 횡행, 소규모 개별적 분산 전용으로 인한 난개발
- 타 산업부문이나 도시용지로의 전용시 공익과 공익의 비교형량 기준 및 절차의 부재
  - 정부 내에서도 농림부와 건설교통부, 재경부 등 비농업부문간 입장 차이가 큼.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농지를 수용하여 사실상 농지전용허가 제도를 형해화 함

- 농업인과 농업단체, 전문가간 농지의 가치에 대한 갈등

- 농업인은 대체로 자산가치를 중시하고, 농업단체등은 생산수단 등 다원적 기능으로서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

- 농업인 내 계층간 갈등

- 영농규모를 확대하려는 농업인과 이·탈농 희망 농업인간의 갈등 등

#### □ 제도개선 필요사항

- 농지의 공익적 기능 및 적정농지규모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

- 농지의 재산적 성격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견해나 만연히 공장이나 도시용지의 후보지로 보는 견해는 지양되어야 함

- 농림부 2020년의 적정농지규모 170만ha에서 145만ha까지 편차, 관련하여 농지조성명목 간척사업 등의 타당성 검토 필요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농지전용과 관련된 타부처 소관 법률과의 통일성 확보 (농지법 제36조의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 타 산업부문이나 도시용지로의 전용시 공익과 공익의 비교형량 기준 및 절차 확립

- 농업부문의 공익 반영 절차, 도시의 고밀도 개발, 대체개발 등 대안적 해결방안 모색

- 개발 및 전용 이익의 환수 및 배분을 통한 농지투기화 방지(농지전용부담금, 개발 이익환수제 등)
- 농업진흥지역 등 지정과정에 농업인의 참여 보장
- 보전농지에 대한 현실적 손실보상 방안(세제혜택, 논직불금 차등지원, 농지보전직불금 지원 등)
- 집단적·계획적 농지전용
- 농지전용허가의 행정법상 특허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효력요건화, 농지·농업인 요건의 현실화

## ② 농지 수용

### □ 근거법령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 실태 및 문제점

※ 농지수용문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에 국한해서 다름

- 타산업부문의 광범위한 공익사업 허용과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농지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고려 없는 무차별적인 농지수용
- 사업시행자에 의한 일방적인 사업시행
- 대체농지 조성 및 생활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업인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는 농지수용 - 법제70조, 제77조 제2항, 제78조 제6항 등 실효성이 별로 없는 특별규정
- 농지수용으로 인한 이익의 사업시행자 독점(개발이익 배제논리가 결국 농지소유자의 일방적 손해로 귀착되는 현상)
- 감정평가의 문제
  -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협의과정, 수용재결과정, 이의재결과정, 행정소송과정에서의 각 감정평가가 거의 차이가 없어 사실상 건설교통부 등 사업주체의 의사가 강하게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결과에 의해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 제도개선 필요사항

- 타 산업부문의 공익사업 시행결정 과정에 농림부의 실질적 협의권 인정
- 공익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사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지주조합 설립에 의한 사업 시행 등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
- 완전보상, 실질적 보상
  - 대체농지 보장 등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개발이익의 환수 및 재분배
- 감정평가의 현실화
  - 개발이익에 대한 평가 기준 재정비, 보상선례, 매매사례에 대한 탄력적 인정, 감정평가인간의 감정결과 차이에 대한 제재 금지, 감정평가에 기속되지 않는 법원의 재량판단 인정 등
- 결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보상부분 전면 개정 필요

### ③ 종자분쟁

#### □ 근거법령

##### ○ 종자산업법

- 제148조는 유통종자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당해 분쟁의 대상 종자와 법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관리중인 종자시료와의 대비시험을 신청할 수 있음과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종자업자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상청구를 받은 종자업자는 보상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제91조는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실태 및 문제점

##### ○ 농업과 농자재산업 부문간 갈등, 다국적기업과 농업인간의 갈등

##### ○ 빈번한 분쟁발생 및 대규모의 피해발생과 민원화

##### ○ 사전 조정절차 미비

- 대비시험 청구에 의한 보상신청은 종자업자가 거절하는 경우 결국 다시 소송으로 가야하고,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품종보호절차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담당하는 기관일 뿐이고 종자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고 있음

##### ○ 소송과정에서 농업인의 입증 곤란(증거부족과 기술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반 손해배상과 동일하게 취급)으로 인한 패소

##### ○ 감정기관의 문제

- 감정기관의 편협성, 친기업적 경향

#### □ 개선방향(제도개선 필요사항)

##### ○ 집단소송(대표소송, 단체소송)제도 도입

##### ○ 종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처럼 대안적 해결방안으로서 소송전 구제절차 활성화

##### ○ 입증책임의 완화

- 종자회사가 그 손해가 종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 배상책임 인정

##### ○ 객관적인 전문감정기관의 지정(농촌진흥청, 대학등 연구기관의 중립적 감정 보장 및 가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 종자산업법 개정 또는 종자분쟁조정법 제정

### ④ 농업협동조합을 둘러싼 갈등

#### □ 근거법령

- 농업협동조합법(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추진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16조)

□ 실태 및 문제점

- 조합운영과정에서 조합원 배제 및 농협의 조합원 지배로 인한 조합(직원)과 조합원간의 갈등(최근 경북 구미 장천농협이 조합원 투표에 의해 해산결의에서 드러난 갈등 등), 조합원의 파산
- 신용사업 중심의 사업체계, 대형유통업체의 소비시장 지배
- 영세 소규모 단위 회원조합으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
-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사업 중첩 및 갈등
- 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둘러싼 갈등
- 농협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 등과 관련한 정부 부처간 갈등
-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등은 농협개혁을 농정개혁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있어 중요한 사회갈등의 하나로 본격화될 가능성

□ 제도개선 필요사항

- 조합원의 조합이용 및 권리 강화,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 보장
- 이용자 중심 이익환원체제로 전환
- 상호금융 금리 등 인하
-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를 통한 경제사업부문 강화
- 규모화 된 회원농협의 자회사 및 연합사업회 설립허용
- 시군단위의 광역합병 지속적 추진, 시군지부 폐지
- 신경분리에 대한 일정 제시 및 건전화 방안 마련

## 사. 교통·운송 분야

### 1) 현황 및 개선방향

□ 갈등발생 현황

- 국가경제성장에 따른 교통, 운송부문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도로 및 철도시설의 건설에 따른 국민의 참여욕구가 증가하는 등 갈등의 발생도 증가추세임
  - 도로예산: '90년 1.3조, '95년 3.4조, '00년 7.5조원, '03년 8.2조원
  - 도로의 경우 고속도로망이 고속도로가 2,778Km( '02년)이나 2020년까지 7×9 노선의 약 4,000Km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 있음
- 교통, 운송부문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교통시설의 투자평가기준 및 타당성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의 건설지연
  - 버스, 택시, 화물운송 부문의 급여수준에 따른 노사갈등 등

□ 문제점

- 도로, 철도, 공항 등 대형국책사업의 추진시에 소요되는 대규모 예산과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은 막대한 손실초래
  -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구간의 경우 5,000억원/20개월,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천성산의 경우 2조원/1년의 국가경제적 손실발생

- 투자평가지침에 제시된 평가과정, 방법, 관련지표 등의 일관성 부재
    - 투자평가관련 자료와 기법이 존재하나 각각 다른 자료, 기법 사용
    - 투자지침에 제시된 많은 자료는 2-3년 간격으로 갱신될 필요가 있으나 2002년 1월 이후 갱신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분석가가 갱신, 보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객관성과 표준성의 결여문제 발생
    - 투자 평가항목간, 시설간 지침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며 평가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의 세부내용, 부가설명 등 존재
  - 투자평가제도의 실효성 문제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지침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일관성이 부족함
    - 이러한 제반문제로 인하여 공공교통시설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성, 투명성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대규모 교통시설의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 시비
    - 사업주관부서가 직접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시행방침의 합리화 경향
    - 사업비 과다증액: 경부고속철도(3.1배), 수원천안간 복선전철(3.9배) 등
    - 부정확 수요예측: 청주국제공항(15%), 인천공항고속도로(50%) 등
  - 용역수행과정의 공개 및 이해관계인 참여유도장치 미흡
    - 주민참여가 고시, 공람, 공고 등 일방적인 형태로 나타남
- 개선방향
- 투자타당성 평가결과의 합리성 증진을 위한 투자평가지침의 개정
    - 타당성 평가지침의 관련지표 갱신
    - 타당성 평가기법 및 과정, 방법의 개선
    - 도로, 철도 등 분야별 투자평가지침의 세분화 필요
  - 사업초기인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단계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확대
    - 의사결정과정에 지역주민과 NGO 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 대국민 의견조정을 위한 정보제공, 홍보, 참여유도(인터넷 이용 등)
  - 대규모 사업의 수행시 사전환경성 조사와 평가 강화
    - 사업종류별 정량적, 정성적 세부기준작성으로 사전 환경성 평가개선
  - 기초 통계자료의 DB 구축강화
    - 기 구축된 교통통계정보의 지속적 갱신 및 보완
    - 지자체와 교통통계자료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사업추진기관의 영향력 배제 등을 위한 용역발주방식 변경
    - 학계 등 일정수 이상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용역방식으로 전환
    - 용역수행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하여 용역결과 공개제도 도입

## 2) 갈등사례

### ① 교통시설의 투자평가기준

□ 근거법령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투자평가지침), 동법 시행령 제7조(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및 건교부 고시 2002-8, 2004-87호에 의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 실태 및 문제점

- 투자평가지침에 제시된 평가과정, 방법, 관련지표 등의 일관성 부재
  - 투자평가과정에는 많은 추정, 예측자료가 사용되며 이와 관련된 조사자료와 추정기법이 존재하나 각각의 시설별로 다른 자료, 기법 사용
  - 투자지침에 제시된 많은 자료는 2-3년 간격으로 체계적으로 갱신될 필요가 있음
  - 2002년 1월 이후, 2004년 4월에 갱신되었으나 갱신내용이 미흡하고 객관성과 표준성의 결여문제 발생
- 투자평가지침에 제시된 내용의 구성
  - 평가항목간, 시설간 지침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며 평가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의 세부내용, 부가설명 등 존재
- 투자평가제도의 실효성 문제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지침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일관성이 부족함
  - 이러한 제반문제로 인하여 공공교통시설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성, 투명성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제도개선 필요사항

- 투자평가지침의 적극적 활용 유도
  - 2002년과 2004년 지침의 사용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수렴, 개선
- 투자타당성 평가결과의 합리성 증진을 위한 개정 필요
  - 타당성 평가기법 및 과정, 방법의 개선, 예비타당성 지침과의 연계강화
- 교통시설별 투자평가지침의 세분화 필요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류시설 등 분야별 지침의 작성

② 교통시설 타당성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 실태 및 문제점

- 대규모 교통시설의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 시비
  - 사업주관부서가 직접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시행방침의 합리화 경향
- 용역수행과정의 공개 및 이해관계인 참여유도장치가 미흡
  - 주민참여가 고시, 공람, 공고 등 일방적인 형태로 나타남

※ 문제점 발생사례

- 사업비 과다증액: 경부고속철도(3.1배), 수원천안간 복선전철(3.9배) 등

- 부정확 수요예측: 청주국제공항(15%), 인천공항고속도로(50%) 등

□ 제도개선 필요사항

- 사업초기인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단계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확대
  - 의사결정과정에 지역주민과 NGO 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 분야별 전문가, 단체의 풀(Pool)을 구축하고 쟁점사항을 사전발굴
  - 대국민 이견조정을 위한 정보제공, 홍보, 참여유도(인터넷 이용 등)
- 대규모 사업의 수행시 사전환경성조사와 평가 강화
  - 사업종류별 정량적, 정성적 세부기준작성으로 사전환경성평가 개선
- 기초 통계자료의 DB 구축강화
  - 기 구축된 교통통계정보의 지속적 갱신 및 보완
  - 지자체와 교통통계자료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타당성 조사의 용역수행과정에서 사업추진기관의 영향력 배제를 위하여 용역발주 방식을 변경하여 시행
  - 수행기관중심에서 학계 등 외부전문가 참여를 위해 공동용역방식 도입
  - 용역수행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하여 용역결과 공개제도 도입

③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의 건설지연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

□ 실태 및 문제점

-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구간의 건설지연
  - 환경단체, 불교단체 등과의 마찰로 사업추진지연
- 경의선 일산구간 및 경부고속철도 대도시 지하화구간 건설지연
  - 철도건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철도소음, 지역단절 등의 문제
- 강남순환도로를 둘러싼 건설반대, 노선변경 요구로 건설지연
  -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과 서울대, 과천시 등의 노선변경요구
- 영덕-오산간 도로건설과 관련한 노선변경 요구
  - 서울 접속구간 인근지역 주민의 교통혼잡 등을 우려한 노선변경요구

□ 제도개선 필요사항

- 이해집단간의 합리적 분쟁조정방안 마련
  - 대규모 교통시설에 대한 국책사업의 세부시행 매뉴얼의 작성
  -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협의회 등과 유사한 합리적 분쟁조정기준을 작성하고 토지보상기준 등의 개선안 도출
- 관련자료의 공개 및 전문가/주민여론조사의 시행
  - 사업시행의 타당성, 근거자료 등을 인터넷 등에 상세히 공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당위성 제시 필요
  - 공론조사 등 사업시행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수렴, 주민투표 등 도입

- 사업추진 과정의 제도상 개선방안
  -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국민참여기회 확대지침 작성 등 사업추진과정의 제반보완사항 마련
  - 사업의 구상단계에서 시민, 환경단체를 참여시키고, 사업의 타당성 조사내용을 강화하여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함

## 아. 지방자치분야

### 1) 현황 및 개선방향

#### □ 현황

- 1997년 민선 자치시대 이후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각종 정책을 둘러싼 정부간 또는 정부-주민간 사회갈등의 증가로 인해 국가 정책집행 비용의 증가 및 사회통합 저해 초래
  - 예를 들면, 공공사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동강댐 건설사례, 한탄강댐 건설사례, 새만금간척사업사례, 부안원전수거물관리센터선정사례, 호남고속역 분기역 선정사례, 고속철 천안-아산역명 선정사례, 동계올림픽 유치 갈등사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지방간 또는 지방-지방간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 문제점

- 민선자치시대 이후의 갈등과 분쟁은 민선자치시대 이전의 갈등과 그 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간 갈등과 분쟁 현상은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음
- 민선자치시대 이후의 갈등은 기존의 갈등해결시스템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갈등해결시스템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해결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갈등해결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갈등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갈등해결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 개선방향

- 정부간 갈등도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
-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다양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 절차를 보다 정교하게 구성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
- 피해 집단이나 자치단체가 있는 갈등의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를 간접적인 피해까지 확대하는 등 피해보상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 중앙-지방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인 협력을 장려하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자율적인 조정을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 2) 갈등사례

## ① 중앙(지방)분쟁조정위원회

### □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제1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을 보면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여 다툼(이하 “분쟁” 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제140조의 제1항 ③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는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에 따라 2000년 4월 25일 자치단체간 다툼을 조정하는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가 공식 출범하였음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의의결함(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
  - 시·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간의 분쟁,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 단체조합 또는 그 장간의 분쟁 등
- 또한 기초자치단체간 분쟁조정을 위해 시·도별로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됨

###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는 상급기관이 조정할 수 있음
  - 시·도 또는 그 장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또한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제3자 조정은 광역자치단체간의 분쟁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간의 분쟁은 광역자치단체장이 하고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자치단체가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의결기능을 수행하게 됨
- 또한 지방자치법의 제140조3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먼저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를 통한 조정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를 불이행 할 시 직무이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대집행을 통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음
-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라는 결정을 하도록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o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발생 현황을 보면 2002년도말 현재 25개 갈등 및 분쟁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 상호간 6건,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12건, 중앙-지방자치단체간 7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o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보면 2000.4.25 설치이후 6건 접수, 6건 조정·각하결정
- 조정결정(4) : 의정부 경전철역사건립비 부담분쟁(경기-서울),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잡종재산 인계(경기-인천), 아산만 방조제 및 담수호 경계 분쟁(평택시-아산시)
- 취하결정(2) : 자동차액화가스 충전소 설치관련 분쟁(계양구부천시-김포시), 자동차 액화가스 충전소 설치관련 분쟁(강동-송파구-하남시)
- 각하결정(1) : 평택항(아산국가공단항만) 개발관련 경계분쟁(평택시-아산시)
- o 문제점으로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자치단체장들의 인식과 관심부족, 분쟁 관련 시·도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조정신청 저조, 정부·자치단체·주민(시민단체)간 복합분쟁이나 서로 참여하게 대립되고 있는 갈등의 경우 수용성 우려 등 조정기능의 한계, 분쟁의 다양화, 조정기구의 분산운영 등으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곤란 등이 제시되고 있음

□ 제도개선 필요사항

- o 적극적인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 o 주민 및 자치단체의 갈등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기능 및 제도 보완
- o 정부간 분쟁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위원회의 설립 검토(갈등관리위원회 등)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근거 법령

- o 지방자치법 제156조의2(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음
- o 지방자치법 제156조의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실태 및 문제점

- o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간에 의견을 달리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협의·조정함
- o 현행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보면 인원은 위원장 및 위원 8인(위촉직 3, 당연직 5)이며, 조직은 비상설 위원회로 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

실에서 대행(별도 조직 없음)

- 분쟁조정절차는 당사자 신청 → 실무위원회 사전심의 → 위원회 심의·조정 → 통보의 절차를 거치며, 의결사항의 조치로 협의·조정 결정사항은 이행의무
  - 협의·조정결정 사항의 미이행시 대집행 기능 없음
- 적용실태를 보면 2000.5.13 설치이후 6건 접수, 6건 협의조정 결정
  - 조정결정(4):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분쟁, 지하철 분당선 개포1·2역사 사업비 부담분쟁, 포항 정치어업권 손실보상분쟁 2건(실무조정)
  - 각하결정(1):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 역명칭 선정관련 분쟁
  - 취하요청(1): 난지도 폐가전처리시설 손실보상 분쟁
- 문제점으로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임의조정이므로 위원회의 능동적 역할 곤란, 결정사항의 불이행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강제이행수단 미비, 기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제기되고 있음
- 제도개선 필요사항
  - 위원회가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결정사항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이행수단의 강화
  - 기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 참조

## 자. 분쟁해결분야

### 1) 현황 및 개선방향

- 현황
  - 갈등증가에 따른 분쟁해결 능력미흡
    - 개발 및 보전 관련 갈등의 증가
    - 수리권을 둘러싼 물사업자와 지자체 간의 갈등 빈발
    - 핵폐기장 등 종래 갈등해결시스템으로 풀 수 없는 사태 초래
  - 분쟁의 특성변화
    - 환경단체등에 의한 제3자 개입, 집단화
    -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한 공공정책 관련정보의 용이한 접근과 의견형성
    -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사전예방의 중요성 인식
- 문제점
  - 법제도의 결함
    - 법과 법, 법과 원칙, 원칙과 원칙간의 충돌, 모순
    -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의 흠결
  - 과학적 정보의 부재
    -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주체로서의 사업자
    - 위험평가시스템의 부재
    - 피해입증의 곤란
  - 사회변화에 대한 행정청의 부적응

- 공공정책과 관련된 결정에서 행정청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민의 신뢰상실
-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거나 참여절차가 부족
- 공공정책결정과 관련된 고급정보를 행정청이 독점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유하지 못하여 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한 공감대 비형성
- 과거 행정청의 일방적·명령적 의사결정방식 답습

□ 개선방향

- 행정정보의 객관화와 공유로 국민의 참여보장
  -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주체를 사업자에서 사업승인기관으로 변경
  - 평가항목의 세부화, 평가시기의 조기화
  - 평가에 대한 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반영, 불복기회 보장
-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정책의 일관성 확보
  - 각종 자연자원들의 관리원칙 정비, 보완
  - 총량규제 : 지역별 · 범주별 감당능력에 따른 조사·공표·규제
  -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대화가 가능한 시스템 도입
- 분쟁해결수단의 정비
  - 대체적 분쟁해결(ADR)의 활용
  - 집단소송의 도입
  - 당사자 적격의 확대
  -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제도
  - 입증책임완화 등 손해배상청구의 원활화

2) 갈등사례

① 골프장·스키장 건설

□ 근거 법령

-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 동법시행령에 위임 : 별표 1에 골프장과 스키장을 규정
  - 동법시행규칙 별표4에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의 기준을 규정

□ 실태 및 문제점

- 골프장 및 스키장의 반환경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갈등 빈발
- 골프장 및 스키장의 영업수익은 지역소득 증진과 무관
- 각종 개발특례법들에 의한 골프장 및 스키장 증가 예상
- 시설의 입지기준 또는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규정 결여

□ 제도개선 필요사항

- 환경기초시설과 마찬가지로 입지선정 기준을 규정
- 사업의 타당성 또는 비용편익의 분석에 공중의 참가를 유도
- 영업수익이 지역에 일부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② 환경책임

□ 근거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는 “사업장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그 피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1항)고 규정하여, 시설책임 및 결과책임의 원리를 고수

□ 실태 및 문제점

- 환경책임을 둘러싼 오해나 오류
- 개별 법률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책임 장치들의 통일적 운용이 곤란
- 환경책임을 불법행위책임과 동일시하는 경향
- 환경책임과 민사책임, 행정책임 및 형사책임의 관계 모호
- 손해배상책임의 곤란

□ 제도개선 필요사항

- 위험책임의 법리를 기초로 한 환경책임체계의 정비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제1항의 조문중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라는 자구 수정
-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책임주체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함
- (가칭)환경책임법을 제정 : 책임의 단계별 구조를 구체화

③ 공익사업상 토지수용 및 보상

□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 내지 제18조

□ 실태 및 문제점

- 사법심사의 미비
  - 1975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공특법]은 토지수용법(1962년)에 의한 수용절차마저 번거롭게 생각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하지 아니한 “협의를 의한 수용 및 보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사업을 촉진시키고 사법심사의 문호를 더욱 협소화시킴
  - 공특법을 승계한 공토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은 종전의 공특법의 범주를 거의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제3장 제14조 내지 제18조)를 규정
- 채권에 의한 보상
  - 종래의 공특법은 토지 소유권 이외에도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제2조제1호), 이주대책(제8조) 및 토지소유자등의 환매권(제9조)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수용법의 엄격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
  - 다른 한편 공공용지보상채권(제3조의2)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인정하고 단체보상(제3조)의 길을 여는 외에 산림법상의 허가를 의제(제11조)하는 등 사업시행자를 위한 특례를 상당수 도입
  - 새로 제정된 공토법은 원칙적으로 개인별 보상을 실시하되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 예외적으로 단체보상을 실시(제64조)

- 국가는 도로공사,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철도공사 또는 항만공사 등의 경우에 보상채권을 발행(제69조)

□ 제도개선 필요사항

- 공익사업의 개념과 범주의 구체화
- 사업인정의 고시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의 불복절차를 마련
- 협의에 의한 사업인정전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축소

### 3. 공공분쟁을 야기하는 제도의 유형

#### 가. 실체의 적정성 부족

□ 헌법 또는 상위법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거나 형평성, 법이념상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 예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기준)
- 자연공원법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제73조(손실보상),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사정변경)

#### 나. 절차의 적정성 미흡

□ 법률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참여와 절차의 기회가 막혀 있는 경우

○ 예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광역시설), 동법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동법 시행령 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동법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동법 시행령 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6(기반시설),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폐기물시설의 입지선정) 내지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결정·고시), 동법시행령 제7조(입지선정위원회)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1항(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시기)
-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법 제8조(습지보호 지역),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환경보전해역), 독도등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4조(특정도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제8조(천연 보호구역), 자연공원법 제4조(자연공원),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해중경관지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 다. 경제적측면의 고려 부족

□ 시장원리의 적용(또는 확대)이 필요하거나, 부당이득(우발이득)의 소지가 커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예시

-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 제2항(환경보전해역 등에서의 행위제한), 항만법 제2조(항만시설)와 제3조(항만의 개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의2(도시계획)
-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매립지의 소유권), 동법 시행령 제20조(공유수면(갯벌) 매립지의 가격)
- 수산업법 제9조 제1항(마을어업의 면허), 제14조 제1항(마을어업 등 면허어업의 유효기간)

#### 라. 법률의 현실적합성 부족

□ 법률의 내용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

○ 예시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공익사업) 및 동법 제6장(손실보상),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사업의 우선시행), 수산업법 제34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동법 제81조(보상)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 지방자치법 제140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제149조(지방자치단체조합)

#### 마. 법집행의 효율성 부족

□ 법집행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 경우

○ 예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내지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50조(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협력), 제141조(사무의 위탁), 제142조(행정협의회), 제156조의2(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

#### 바. 입법기술상의 문제

□ 다른 법령과 상충·모순관계에 있거나 하위규칙에서 상위법률로 옮길 필요가 있으며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

○ 예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동법시행령 제15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주민 등의 의견청취)과 동법 시행령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투자평가지침), 동법 시행령 제7조(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및 건교부 고시 2002-8, 2004-87호(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 4. 행정사항

부처의 제도개선 방안마련

○ 각 중앙행정기관은 이 지침을 토대로 법령제안서를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속  
위에 제출

- 기관별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제도개선 사례 발굴

지속위에서 제도정비추진계획 보고, 부처별로 추진

< 첨 부 >

## 제도개선 지침에 따른관계부처 법령정비 제안(종합)

- 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
- 환경부
- 산업자원부
- 농림부
- 행정자치부



## 건교부 법령정비 계획서

(국토이용분야)

관할기관 : 건설교통부 도시국 도시정책과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 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 과정 상에 주민의견 및 공람절차를 개선 및 강화하여 계획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비함	현재 국토이용법 제28조 및 령 22조 제2항의 주민공람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후집행 단계에서 사전 정보가 없는 주민들의 계획집행 저항을 초래하여 갈등이 발생	국토이용법 제 28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를 “주민들에게 알린 후 주민의의견을 들어야 하며”로 개정	대통령령 제 22조제 2항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을 “2이상의 일간신문 공고와 인터넷 등에 게재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으로 개정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당사자는 당해지역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문공고 존치</li> <li>- 광범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먼 또는 동단위의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므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li> </ul>

(국토이용분야)

관할기관 : 건설교통부 도시국 도시정책과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 개정	국가계획의 도시기 본계획 반영과정의 가이드라인 제시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 지방이양시 국 가계획과 지역계획 간의 마찰을 방지 하기 위함	국가계획이 해당지 방자치단체에서 효 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시기 본계획의 상위계획 으로서 위상 적시	국가정책기준을 마 련	도시기본계획승인 권의 지방이양 결 정시	

(수자원이용분야)

관할기관 :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하천계획과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수리권제도개선	상시적으로 취수하는 민법상의 관행수리권에 대한 신고제도입, 소 제기 등과 관련 조정절차 보완, 공공기관의 참여 의무화등으로 수리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함	하천유수의 사용에 대한 분쟁조정사항을 하천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제도로 실질적인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발생	관행수리권에 대한 행정적 통제, 조정절차 보완에 따른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	금년말까지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05년 정기국회에 제출	2006	

(교통운송분야)

관할기관 :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실 수송정책과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의 보완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시 적용하는 교통수요 추정기법, 평가항목, 평가방법 각종 사회·경제지표 등 수정·보완	객관적이고·신뢰성있는 타당성평가를 통해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도모	현재 타당성 평가의 전단계인 예비타당성 평가를 위한 지침을 기예처에서 제정 추진 중이므로 평가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연계해서 정비필요	예비타당성 평가 지침 제정 후 타당성 평가 지침의 역할 및 적용방안 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정비방안 마련	KOTI 정책 과제로 연구 용역을 추진 하여 향후 방향설정후, 이에따라 추진방향 결정	

(기타분야)

관할기관 :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국토정책과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p>주요정책 계획 개발 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체계 개선</p>	<p>입지·노선결정, 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확정전에 유형별로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제도화하여 계획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비함</p>	<p>건교부 소관계획의 관련법령 및 수립과정에서 상당수가 환경성 검토 및 외부의견수렴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갈등이 발생</p>	<p>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방법·기준 등에 대한 객관성, 전문성 제고와 상호 중복, 낭비요소 제거 필요</p>	<p>건교부 훈령으로 규정.시행('04.12월)하고 추후 환경정책기본법 및 개별법령지침등에 반영</p>	<p>'2005년</p>	

(해양.수산분야)

관할기관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실 건설지원담당관실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p>골재의 안정적 확보 및 환경보전등을 위한 제도개선</p>	<p>-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기관.지역주민.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골재의 수급 안정도모</p> <p>-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침해 최소화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p>	<p>-골재수급 계획, 골재수급안정조치등을 수립.시행하기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여골재 수급 불안정</p>		<p>골재채취법 개정정부안이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중</p>	<p>'05년중</p>	

(분쟁해결분야)

관할기관 :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정책과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보상 개념 재정립</li> <li>- 용지취득 및 보상 절차 개선</li> <li>- 보상제도 개선</li> <li>- 보상방법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상 정당보상 실현</li> <li>- 토지소유자등의 참여 확대</li> <li>- 보상기준의 적정화 및 개선</li> <li>- 대토보상 등 보상 수단의 다양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정당보상에 의문이 제기</li> <li>- 공익사업에의 결정에 있어 토지소유자 참여 결여</li> <li>- 권리의식 향상으로 과다보상요구 등에 대응 필요</li> <li>- 생활보상차원에서 대토보상제도등 도입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제도 개선 연구용역 추진 '04.12-'05.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청회 개최</li> <li>- 연구협의회 수시 개최</li> <li>- 토지보상법령 개정 추진 : '05.6이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토중단</li> </ul>

## 해양수산부 법령정비 제안서

(해양·수산분야)

관할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p>○ 항만명칭 변경 및 신규 결정</p>	<p>○평택항의 명칭 변경 ○개발중에 있는 부산신항의 명칭 결정</p>	<p>○항만구역내 시도간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지자체간 항만명칭 결정에 분쟁발생</p>	<p>○항만운영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양 지자체간 명칭결정에 합의 필요</p>	<p>○ 항만법 시행령 개정 ○부산항 항만운영시행세칙개정 추진</p>	<p>○항만법시행령개정 ○부산항 항만운영시행세칙개정('06.초항만개장 전까지)</p>	

## 환경부 법령정비 제안서

(환경·생태분야)

관할기관 : 환경부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관련 갈등 (주민의견수렴 내 실화)	주민의견수렴의 내실화를 위하여 평가서 초안전문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해 주민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 65조를 정비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평가서초안요약서를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요약서가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평가서 초안전문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현재 인터넷에 평가서초안요약서를 게시하고 있으나 주민의견이 인터넷이 아닌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제출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서도 주민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사업자로 하여금 평가서초안 전문을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과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비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	2006년	

(환경·생태분야)

관할기관 : 환경부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p>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관련 갈등(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 현실화)</p>	<p>평가서 내용이 충실해 지도록 평가서 작성비용의 근거가 되는 현황 조사의 세부내용, 예측·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에 따른 소요인력 등을 조정하여 작성비용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서작성비용기준(환경부고시)을 정비</p>	<p>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그 범위가 다양화되거나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현황조사의 세부내용, 예측·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에 따른 소요인력 등을 조정하여 직접경비, 인건비 등 평가서 작성비용을 현실화하여야 함</p>	<p>환경영향평가서작성비용기준 고시 당시(2001.3)의 환경영향평가 범위 및 심도와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평가서작성비용산정기준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함</p>	<p>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대행자와 작성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정비되는 작성비용기준을 적용하도록 사후관리를 추진</p>	<p>2005</p>	

(환경·생태분야)

관할기관 : 환경부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p>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관련 갈등(환경영향평가항목 및 범위 획정제도 의무화)</p>	<p>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평가항목 및 범위 획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임의제도로 되어 있어 장차 의무제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29조를 정비</p>	<p>환경영향평가지 평가항목 전체에 대하여 사업 및 지역별 특성, 환경영향의 정도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없이 평가를 하여 평가서 부실작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하여 평가항목 및 범위 획정제도 (스코프제도)를 도입하여 2004.7.1 부터 시행하고 있고, 평가항목 및 범위 설정시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항목 및 범위를 획정하는 임의제도로 되어 있어 동 제도의 도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의무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p>	<p>현재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 평가항목 범위 획정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p>	<p>의무화 이후 승인기관 별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 및 범위 획정제도 운영 지침 등의 지속적인 발굴 보급 등 필요</p>	<p>2007년</p>	

## 산자부 법령정비제안서

(에너지·수자원분야)

관할기관 ; 산업자원부 제안자 : 원자력산업과장 유연백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 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관련갈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및 지원사업을 관리시설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발주법 제10조 및 제13조를 정비	현행 지원금은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있고 운영기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심하며, 지원사업도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지자체들의 신속적인운영이 곤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선정에 있어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원금과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개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발전량에 비례하여 산정토록 변경하고, 지원사업도 지자체가 개별사업의 시행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토록 법 개정	2005년	

## 농림부 법령정비 제안서

(농림분야)

관할기관 : 농림부    제안자 : 박범수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농협 개혁 관련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협중앙회는 사업규모에 걸맞는 지배구조로 개편하고, 책임경영에 부응하는 이사회 체제를 구축하며, 중앙회의 세부추진계획을 토대로 신경분리 방안을 마련</li> <li>◦일선농협은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조합 규모화를 촉진하는 선진 제도를 도입하며,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할 수 있도록 농협법을 정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인과 농민단체 및 학계를 중심으로 농협이 유통·판매사업에는 소홀하다는 비판과 함께 중앙회가 조합원의 실익제고를 위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의 개편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일선조합은 영세한 사업구조 및 비전문적 경영형태에 대한 혁신 없이는 조합원에게 실익을 주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인, 농민단체, 농협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협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관 등 개정</li> </ul>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협법개정안은 '04 정기국회에서 처리 중</li> </ul>

(농림분야)

관할기관 : 농림부 제안자 : 김남훈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 고
농지처분 제도개선	처분대상 농지의 성실경작시 1회에 한하여 처분명령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10월~11월)를 거쳐 농지처분 대상으로 결정하고, 미처분시 처분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 처분통지후 추후 성실경작 시에도 구제방법이 없음</li> <li>○ 취득농지 사후관리 완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처분 대상 결정후 처분명령전 성실경작 또는 농지 은행에 임대·매도위탁시 1회에 한해 처분명령을 유예</li> </ul> </li> </ul>	각계 의견반영한 농지법 개정 추진중	농지법개정안에 반영하여 '05. 7. 1부터 시행 예정	2005년	

(농림분야)

관할기관 : 농림부      제안자 : 박영근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중양도매시장 시장 도매인제도 도입	농안법령상에 중양도 매시장 시장도매인제도 도입근거 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도매인제도는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00년 농안법 개정시 도입된 제도</li> <li>-지방도매시장은 '00. 6월부터 도입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li> <li>-중양도매시장은 2004년부터 2년 범위내에서 시행 시기를 결정토록 유보</li> <li>◦따라서, 그동안 유통중사자간의 잦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중양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시기를 결정할 필요</li> </ul>	학계, 유통중사자, 농업인 등 각계 의견수렴	중양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시기 결정	2005년	

(농림분야)

관할기관 : 농림부      제안자 : 김문갑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 고
표준규격품의 출하지도 및 자체검사 폐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표준규격품의 출하지도 및 자체검사 항목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단체는 그 소속 생산자에게 선별 및 포장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하고,</li> <li>-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조직은 표시사항 품질 등 표준규격 준수여부를 자체검사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li> </ul> </li> <li>◦이로 인하여 행정기관과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조직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음</li> <li>◦그러나,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서는 표준규격품에 대한 품질점검 등 사후관리와 표시변경 등의 행정 처분을 하고 있고,</li> <li>◦또한, 동법 제29조의 2~3항의 품질관리사가 직무를 담당할 수 있어 자체검사 대체가 가능하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7조(표준규격품의 출하지도 및 자체검사) 폐지</li> </ul>	표준규격품의 출하지도 및 자체검사 폐지 관련기관 협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 제7조 삭제	2005년	

(농림분야)

관할기관 : 농림부

제안자 : 김병은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 정부매입양곡(추곡수매) 가격결정과 관련한 갈등	○ 정부매입양곡(추곡수매)의 매입가격·매입량 결정시 국회동의제 폐지	<p>○ 정부매입양곡(추곡수매)의 매입가격·매입량에 대한 최종결정은 국회동의를 받아서 결정되나</p> <p>- WTO 출범이후 추곡수매는 매년 감축되는 보조금 범위내에서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동의제로 인한 정치쟁점화로 국민(농민) 갈등만 유발</p> <p>○ 또한, 장기적으로 쌀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쌀가격의 인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매가격이 정치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국내쌀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지난</p> <p>○ 아울러 DDA 협상과 쌀협상 이후 추곡수매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됨</p>	○ DDA/쌀협상 이후 쌀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위한 쌀농가소득안정방안 마련	○ 정부매입양곡의 매입가격,매입량 결정의 국회동의제 폐지	2005년	

(농림분야)

관할기관 : 농 릫 부 제안자 : 김 민 욱 (농업지원기술과,.)

정 비 사 항	정 비 요 지	정 비 사 유	선 결 조 건	후 속 조 치	정 비 시 기	비 고
종자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종 자 산 업 법 상 에 종자분쟁 조 정 위 원 회 설 치 조 항 을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자분쟁의 경우, 종묘회사와 농업인과의 분쟁 이지만, 분쟁원인규명 및 분쟁조정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종자산업법은 분쟁당사자가 원하는 경 우 대비시험을 실시하여 종자분쟁원인 을 규명하고 있으나, 분쟁조정 등의 절 차가 미흡</li> <li>-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 원회는 종자분야전문가 부족(1명)으로 실질적 원인규명보다 서류심사에 국한하는 등 정부의 충분한 조정 역할 부족</li> </ul> </li> <li>◦ 종자분쟁의 원인은 종자결함 뿐만 아니라, 기 후토양·재배기술적 요인 등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공산품과 달리 원인규명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종자분야전문가들의 심도있 는 원인규명 필요</li> </ul>	학계, 종자업 계, 농업인 단 체 등 각계 의 견수렴	종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상설·비상설), 위원 임기, 조정절차 등의 구체화	2006년	타법사례: 의료법 - 의료심 사조정위원회 건축법 - 건축분 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 -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농림분야)

관할기관 : 농 립 부 제안자 : 복 인 규

정 비 사 항	정 비 요 지	정 비 사 유	선 결 조 건	후 속 조 치	정 비 시 기	비 고
목적외사용료 감면규정 신설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시 사용료의 감면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시 사용료는 수입금의 100분의 10, 생산물시가의 100분의 10,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으나(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23조의2) 사용료 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외사용으로 수입금이나 생산물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을 징수하는 경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당해연도의 연간사용료 과다 징수로 민원 발생</li> </ul> </li> <li>◦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당해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감액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내용을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의 2에 추가항목 신설</li> </ul> </li> </ul>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기반공사등 의견 수렴	관계관 협의회 개최	2005년	타법사례: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 사용료 조정

## 행정자치부 법령정비 제안서

(지방자치분야)

관할기관 : 행정자치부    제안자 : 행정사무관 김우연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 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강제 이행 수단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법 또는 같은 법시행령에 직권조정권과 강제이행수단을 명시하여 협의·조정 의 실효성 확보</li> <li>○ 정비예시(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54 조의5</li> <li>①-----</li> <li>②-----다만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데도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li> <li>③-----</li> </ul>	당사자 신청에 의한 임의조정이므로 위원회의 능동적 역할이 곤란하고 결정사항의 불이행에 대해 강제수단 미비 등으로 조정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다른 법령과의 상충·모순관계 검토	-	2006년	※ 갈등관리기 본법 제정 추진과 연계하여 검토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 고
	<p>④ -----</p> <p>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협의·조정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 제15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p>					



## 제3부 공공개발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 방안 추진

1. 1차 관계부처 협의안
  - \* 세부 법령정비제안서
  - \* 1차 협의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2. 2차 관계부처 협의안
  - \* 2차 협의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3. 정비방안 최종보고서

1. 공공개발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방안  
(1차 관계부처 협의안, 2005. 7. 25)

## 차 례

- 1) 추진배경 및 방향
- 2) 분야별 법률정비 제안

### 가. 건설교통부 소관

- (1) 국토기본법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4) 행정중심복합도시법
- (5) 도시개발법
- (6) 철도건설법
- (7) 하천법
- (8)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 (9) 골재채취법
-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1) 연안관리법
- (2) 공유수면매립법
- (3) 항만법

### 다. 환경부 소관

- (1) 환경정책기본법
- (2)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 (4) 하수도법

### 라. 산업자원부 소관

- (1) 전원개발촉진법

### 마. 과학기술부 소관

- (1) 원자력법

- 3) 행정사항

<첨부> : 세부 법령정비제안서

## 1) 추진배경 및 방향

### 가. 현황

#### □ 우발이익등의 확산과 방치

- 신행정도시·기업도시등과 관련된 공공개발,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등으로 전국 각지에 개발에 대한 투자기회와 기대심리가 팽배
- 개발계획과 부동산 가격 상승등에 따른 우발이익 내지 부당이득을 억제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결여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위기의식 내지 경쟁심리가 확산

#### □ 공공갈등의 발생과 증폭

- 우리사회가 민주화, 다원화되고 참여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시민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계층의 요구가 분출
  - \* 합리적 대안의 수용 또는 승복 문화의 부재 등 준법의식의 약화
-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를 위한 문화의 미성숙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미숙

### 나. 문제점

#### □ 전통과 합리의 사각지대

- 국토와 바다 그리고 자연자원 전반에 대한 소유와 이용에 관한 전통질서의 붕괴, 사회주의적 원리의 개입과 시장질서의 도입이 급속하게 교차하면서 자연자원의 관리에 대한 합리적 기준들이 표류
- 헌법정신과 실정법질서의 괴리
  - \* 1954년의 헌법(제85조) 이래 1987년 현행 헌법(제120조)까지 자연자원 "국가특허"의 원칙을 유지
  - \* 하천법과 댐건설법 등은 국가특허 원리를 무리하게 적용

#### □ 공공갈등을 야기하는 법제의 엄격성

- 법률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이해관계인 등 시민참여와 절차의 기회가 미흡한 경우 [절차의 적정성 부족]
- 시장원리의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당이득의 소지가 커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제적 측면의 고려 부족]
- 법률의 내용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 [법률의 현실 적합성 부족]
- 법 집행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법제 상호간의 정합성이 부족하여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 경우 [법 집행의 효율성 부족]

### 다. 추진방향

#### □ 추진 목표

- 법정계획간 대화를 개발과 보전의 연계 [통합성] 강화
- 갈등발생의 구조적 요인에 주목하고 법의 체질을 개선

○ 법논리와 정책현실의 격차가 클 경우에 장기적 추진

□ 추진 경과

○ ‘공공갈등 관련 법·제도개선지침(2004)에 따라 부처별 법령정비 제안을 받은 결과, 내용이 미흡하여 신규로 개선 과제 발굴 추진

○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관련연구기관과 협력 연구

- 주무연구진(법제연구원)이 협동연구기관 방문, 워크숍을 통해 관련연구진과 토의를 거쳐 개선과제 의견, 정리 반영

- 참여연구기관 : 국토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교통개발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추진 범위

○ 공공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법률 중심으로 갈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법제의 개선 보완방안 도출

○ 주요 개선과제 발굴방향

- 행정계획 등의 입안과 결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도록 의사결정구조의 개선

- 수범자의 입장에 선 법제도 수립과 엄격한 법 집행

-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정보의 공유 확대

□ 주요 정비대상 법률 : 총 19개 법률

○ 건설교통부 소관 (11개 법률)

-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법, 도시개발법, 철도건설법,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3개 법률)

- 연안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항만법

○ 환경부 소관 (4개 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대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 지원에관한법률, 하수도법

○ 산업자원부 소관 (1개 법률)

- 전원개발촉진법, 원자력법

○ 과학기술부 소관 (1개 법률)

- 원자력법

□ 정비 추진 전략

○ 단기 개선과제

- 개선이 시급하고 사회적인 공감대 뒷받침 되어 단기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2006년중 개정 추진

○ 중·장기 검토과제

- 장기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를 수용할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는 방안 추진

\* 정비시기는 최대한 조기개정을 추진하도록 하되 부처 자체의 법률 일괄정비계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사유 명기)

## 2) 부처별 법률정비방안 제안

### 가. 건설교통부 소관

#### (1) 국토기본법

##### □ 현황 및 여건

-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임을 선언(제2조)
  - 국토계획 및 정책수립·집행시 국토의 균형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조성(제4조),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제5조)를 지향
  - 국토계획간의 조화와 일관성 도모(제7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국토종합계획; 제9조)
- 하위국토계획을 통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 도지사의 도종합계획수립(제1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계획수립(제16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업무에 관한 부문별계획수립(제17조)
- 국토정책위원회 설치·운영(제26조 내지 제30조)
  - 계획간 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 □ 문제점

- 환경보호법제와의 연계성 부족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의 이념을 선언하고는 있으나(제8조) 환경법제와의 협조 없이 독자적인 환경고려를 표방하는 구조
  - 국토계획 속에서 환경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계획이 주(主)이고 환경고려가 종(從)이 되는 구조
  - 같은 이유로 환경고려 이념을 선언할 뿐 그 실효성은 의문스럽고 이미 정비되어 있는 환경관련법제도의 효과적인 활용 미흡하며 따라서 여전히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과의 충돌소지를 내포
- 의견수렴절차 미흡
  - 공청회의 개최와 그 결과의 반영에 관한 조치가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에만 한정됨(제11조, 제14조)
  - 계획은 하위계획으로 갈수록 구체화되며 이해관계인이 부각되는 만큼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 이외의 계획에 있어 공청회를 생략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 개선방안

- 환경계획을 국토계획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 및 연계성 강화

- 법 제8조에서 군사에 관한 한 국토종합계획의 우선효를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환경에 관한 계획을 추가
- 법 제5조의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조항에 환경보전관련 법정계획의 고려의무 부과
- 환경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1항)과 국토종합계획(제7조제3항)의 수립시기 일치(시기와 중기의 일치)

#### ○ 코드화

- 계획도 규범체계에 해당하고 규범은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기호(□나 ○등) 체계로 서술되어 있는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등을 실정법전[장, 절, 조, 항, 목] 체계로 전환시키고 필요한 통계나 그림 기타 데이터들은 별표나 자료로 처리
- 다른 국가계획 또는 지방계획등과 이와 같은 체계로 코드(code)화를 유도

#### ○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에도 공청회 의무화

- 국토종합계획에 규정하고 도종합계획에 준용하고 있는 제11조 공청회규정을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에도 확대
- 다만, 이들 공청회는 어디까지나 계획안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널리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되지는 못함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현황 및 여건

#### ○ 국토개발 및 이용에 있어 근간이 되는 법률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이용을 도모
- 그 중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것으로 주민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을 담고 있음(제2조제4호)
-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됨(제2조제3호)

### □ 문제점

#### ○ 도면위주의 청사진적 성격의 도시기본계획

- 계획예고나 결정이 토지가격의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도시기본계획이 도면위주로 청사진적으로 수립·발표되면 그 후의 개발을 예상한 자 등에 의한 우발이득과 그에 따른 손실발생 가중(제19조)

#### ○ 도시기본계획의 경직성

- 도시기본계획이 일단 수립되고 나면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 그에 엄격히 구속되므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도시관리계획이 무리하게 수립되어 장기 미집행의 도시계획시설을 양산하거나 사업집행 단계에서의 갈등 유발

#### ○ 의견수렴 및 합의과정의 형식성(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 제28조)

### □ 개선방안

#### ○ 청사진적 도시기본계획을 전략중심의 정책계획으로 전환

- 도시기본계획을 주민 및 관계자들이 토의하여 합의해 가는 전략목표와, 정책목표

및 프로그램 중심의 전략계획 내지 정책계획으로 전환시킬 필요

- 도시기본계획을 관련분야 및 기관간에 사전조율과정을 거치고 지역주민들도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동체적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쳐 신중히 수립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간의 유연한 상호작용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공공사업의 3단계가 하향 일방적인 체제로 기능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본래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세 제도간에 유연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필요
-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의견수렴절차의 내실화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안이 확정된 후가 아닌 수립과정에 널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공개적인 토론이 가능한 절차 필요
  - 개발을 위한 입지선정 이전에 개발의 원칙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
  - 주민의견수렴 방법을 인터넷 홍보, 주민설명회 등으로 다양화·적극화

###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 현황 및 여건

-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활동에 필요한 도시를 개발·운영
  -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춘 기업도시 개발(제1조)
  - 개발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제14조)
- 개발이익 환수
  - 기업도시 개발과정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로 등 간선시설과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의 공공편익시설 재투자(제8조)
  - 조성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제24조)
- 학교 및 의료기관의 설치(제34조 내지 제38조)
  -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시행가능

#### □ 문제점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획변경 또는 폐지에의 대응 미흡
  -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획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계획과 연계되어 부여되어 있는 의제효로 인하여 계획의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야기(제13조)
- 개발로 인한 손실과 이익의 공평부담과 분배 미흡
  - 수용지역 밖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이익에 대한 대응조치 미비

#### □ 개선방안

- 관련 인허가 의제효 폐지규정 신설
  - 기업도시개발계획이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에 개발계획 승인시 부여된 의제의 취소 또는 정지를 가능케 함
- 수용보상방식의 다양화

- 금전보상 외에 환지보상도 고려, 개발에 의한 손실과 이익의 공평한 부담과 분배 (제14조)

#### (4) 행정중심복합도시법

##### □ 현황 및 여건

-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제1조)
  - 건설교통부장관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 수립(제19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기구 설치(제29조 내지 제39조)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의 효율적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설치(제44조 내지 제51조)

##### □ 문제점

- 정책적 갈등
  - 대규모 시설이전으로 인한 혼란, 수도권과 이전지역간 갈등, 이전지역과 비이전지역간 갈등
- 구체적 갈등
  - 복합도시건설에 따른 손실보상 등 갈등

##### □ 개선방안

- 전국적 의견수렴, 충분한 토론과 합의도출
- 해당지역 내 의견수렴절차의 내실화
- 환경과의 조화 이념의 견지

#### (5) 도시개발법

##### □ 현황 및 여건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등(제17조)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 포함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제20조 및 시행령 제32조)
  - 법령상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등 규정

##### □ 문제점

-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된 규정의 중복으로 법률상 충돌 발생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1조제3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따라서 상위법의 계획과 도시개발법상 계획간 충돌 발생
- 다양한 사업시행방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전면매수방식으로만 사업시행함으로써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간 갈등

##### □ 개선방안

- 도시개발사업계획을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과 체계적으로 정비 필요
- 사업 시행방식의 다양화 필요
  - 토지소유자의 제안과 출자에 의한 방식 등 민간참여 유도 필요

□ 접근방법

- 개선시기 : 중장기과제
- 입체적 연계
  - 사업시행방식에 있어서 신탁관련 법령과 조세관련 법령 정비로 토지신탁방식 등 민간참여 유도

(6) 철도건설법

□ 현황 및 여건

-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제22조)
  -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등(제23조)
  - 역세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시개발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준용

□ 문제점

-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시 도시계획 관련 인허가 의제규정 부존재로 개발 장애 발생
  -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법령상의 인허가 의제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도시계획 관련법령상의 인허가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
  - 따라서 역세권개발을 둘러싸고 지자체와의 갈등 상존
-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이외의 상세는 도시개발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역세권개발에 장애

□ 개선방안

-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시 도시계획 관련법령 등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를 의제하는 규정 신설 필요
- 사업시행방식 등 역세권개발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 규정 정비 필요

□ 접근방법

- 개선시기 : 중장기과제
- 입체적 연계
  - 역세권개발구역과 도시개발구역 또는 택지개발구역간의 관계 정비

(7) 하천법

□ 현황 및 여건

- 하천의 귀속(제3조)
  -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원칙을 선언
  - 하천을 흐르는 유수의 소유권에 관하여서는 적극 규정 부재
  - 유수의 분배와 이용에 관한 유수사용권(제21조)만 규정
- 하천유지유량(제20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 고시
- 하천유지유량에 대한 유역의 또는 생태적 수요의 고려 부재

○ 하천 유수의 사용·관리(제21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유수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관리
- 특허에 해당하는 유수사용권을 객관적 규정 없이 배분

□ 문제점

○ 유수계통(하드웨어)과 내용물(콘텐츠)의 혼동

- 하천을 흐르는 유수까지 국유로 보는 관행
- 계획 당국이 유수의 분배와 사용을 일방적으로 결정

○ 국가계획 수립시 민법상의 유수사용권을 배제하는 경향

- 물관리기본법(가칭)이 없는 상황에서 하천법상의 특허권 오용
- 민법상 관행수리권을 폐지하려는 태도 팽배

□ 개선방안

○ 국가특허권의 오용을 제한

- 자연자원을 국가가 특허할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를 전제
- 자연자원에 관한 공공신탁(public trust)의 법리를 적용

○ 민법상 유수사용권과 하천법상 유수사용권의 공존 및 조화

- 관행수리권을 부인하려는 계획 관행을 시정
- 장기적으로 상위법인 (가칭)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을 추진

□ 접근방법

○ 개선시기 : 중장기과제

○ 입체적 연계

- 댐건설법과 연계
- (가칭)물관리기본법의 제정 및 민법의 개정과 연계

(8)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 현황 및 여건

○ 댐 관리의 기본원칙(제16조)

- 공익의 증진, 피해의 제거, 댐 사용권의 침해방지
- 공익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구체규정 부재

○ 댐 사용권의 설정(제24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댐사용권 설정예정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
- 설정예정자에게 행정적 독점을 부여하는 구조

○ 댐 사용권의 성질(제29조)

- 물권으로 보고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물권" 규정으로 인하여 물에 대한 이용권을 소유권과 동일시

□ 문제점

○ 물에 대한 특허권자의 독점권을 규정한 하천법의 정신을 승계

- 유수와 저수의 분배와 이용에 관한 원칙 부재
- 민법상의 상린관계에 대한 고려 부재
- 댐 사용권자가 저수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행사
  - 하천법은 유수 사용권자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
  - 댐건설법의 저수 사용권자에게도 동일한 지위를 추정
- 댐에서 방류된 물에 대한 물 값 시비 발생
  - 관습상 유수사용권과 실정법상의 저수사용권이 충돌
  - 물 분쟁 사례[소양호 : 수자원공사 vs 춘천시] 빈발

□ 개선방안

- 댐 사용권자의 배타적 사용권을 완화
- 댐 인근 또는 하류지역의 물 사용권에 대한 배려
- 민법상 유수사용권과 댐건설법상의 저수독점권의 조화

□ 접근방법

- 개선시기 : 중장기과제
- 입체적 연계
  - 하천법과 연계
  - (가칭)물관리기본법의 제정 및 민법의 개정과 연계

(9) 골재채취법

□ 현황 및 여건

- 현행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에 필요한 공간을 관리함에 있어 골재채취 “단지”의 지정(제34조)과 골재채취 “구역”의 지정(제22조제2항)이라는 2단계의 접근방법을 취함. 즉 현행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단지”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단지가 수개의 구역을 포함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음.

□ 문제점

- 현행 골재채취법시행령(제33조의2제1항제2호)은 “단지”를 수개의 구역의 집합으로 해석하고 공유수면관리법(제2조)상의 공유수면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5개 미만의 광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러나 이러한 시행령의 규정은 상위법률[골재채취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남.

□ 개선방안

-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안관리법 또는 해양오염방지법에 근거하여 골재채취단지를 규율하여야 함. 골재채취단지는 공간관리계획의 일환으로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상의 사전환경성검토와 같은 환경계획과 개발계획간의 조화와 협력에 의하여 자리매김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현황 및 여건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제1조)
-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 수립·시행(제5조)
  - 산업입지의 계획적·체계적 공급
  -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 고려 수립
-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
  -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지방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등 승인과 사업시행(제6조 내지 제8조)
-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입지(제40조 내지 제44조)

#### ■ 문제점

- 녹지조성방식 등에 대한 세부기준 미흡
  -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산업단지의 녹지면적 비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녹지의 상태 등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실제 나무가 없는 녹지가 다수 존재(제5조, 산업입지개발지침제13조)
- 사정변경으로 인한 실시계획 폐지 내지 승인철회절차의 미흡
  -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실시계획이 더 이상 존치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실시계획 승인시에 발생한 다양한 법률에 걸치는 의제효로 인하여 실시계획이 폐지되지 못하고 남아 있음으로 해서 갈등유발(제21조)
- 산업시설용지 구분상의 혼선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와 물류시설 용도부지를 산업시설구역에 포함하나(동시행령제43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은 유통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에서 배제
  - 산업집적활성화법상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제33조)에서는 공공시설구역을 녹지와 별도로 분리하여 구성하고 있으나 산업입지법시행령(제24조의4)에서는 녹지는 공공시설에 포함

#### ■ 개선방안

- 녹지조성방식 등에 대한 세부기준 제시
  - 녹지의 상태,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권자가 녹지의 조성을 유예할 수 있는 조건, 녹지의 조성을 면제할 수 있는 조건, 그러한 결정을 내릴 시점에서 지방환경청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과의 관계 등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 제시
- 실시계획의 승인철회절차의 필요
  - 사정변경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의하여 해당 실시계획에 부여되었던 여러 법률상의 의제효도 소멸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철회 또는 폐지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
- 관련법령간의 사용개념의 재정비·통일
  - 산업집적활성화법상의 산업시설구역과 산업입지법상의 산업시설용지 통일
  - 산업집적활성화법상의 공공시설구역과 산업입지법시행령상의 공공시설 개념 정립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1) 연안관리법

#### □ 현황 및 여건

##### ○ 연안통합관리계획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연안통합관리계획(법 제5조)은 연안의 종합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함
- 계획수립 과정에서 시도지사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연안관리지역계획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연안관리지역계획(법 제8조)은 통합계획의 시행과 연안의 관리를 목적으로 함
- 계획수립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음

##### ○ 연안정비계획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연안정비계획(법 제13조)은 효율적인 연안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함
- 계획수립 과정에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 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의 범위 안에서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법 제17조제1항)
- 계획 수립과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법 제17조제2항·3항)

#### □ 문제점

##### ○ 계획의 규범력의 미약

- 연안관리법상의 계획들은 다른 법정계획들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지위에 위치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등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연안계획들을 수립(법 제11조제1항 본문)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계획 또는 용도지역의 변경등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11조제1항 단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연안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법 제13조)

##### ○ 공간적 범위의 정합성 결여

- 연안관리법상의 연안해역과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 중첩
-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은 육상의 내수면까지 포함
- 연안해역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관할권 행사에 걸림돌 작용

## □ 개선방안

- 일정 범위의 연안육역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관할권 인정
- 공유수면과 연안해역의 정합성 확보
- 연안관리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을 통폐합하여 연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실효성 있는 통합적 입법을 추진

## (2) 공유수면매립법

### □ 현황 및 여건

- 현행 공유수면매립법(제32조)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전에 공유수면의 상황변경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 또는 인가 등을 취소·변경 가능
- 사정변경이 인정된다면, 관할 감독청(해양수산부)은 제3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매립면허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문제점

- 시화호 간척지의 사례에서 사업자(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는 간척사업후의 환경악화로 당초의 목적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에 무리가 따라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므로 관할 행정청[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시화호 연안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는 기존의 토지이용계획과 이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발생
- 실제 법집행 과정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립면허가 의제되고 사정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철회할 방도가 없어 공유수면매립법(제32조)의 취소·변경 절차의 이행이 곤란

### □ 개선방안

- 사정변경으로 매립면허의 취소[철회]가 일어날 경우에는 기존의 법절차[비용편익 분석/매립지가격평가/환경영향평가등]를 새로 밟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 있을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직권취소를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제32조)의 실효성이 실종.
- 사정변경이 일어날 경우에 원래의 관할 행정청[해양수산부장관]은 권한의 위임·위탁을 해지하고 해당 행정행위[사업면허]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수 있어야 함

## (3) 항만법

### □ 현황 및 여건

-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제2조 제2항 제7호)
  - ※ 항만배후단지 : 무역항의 항만구역 및 임항구역 안에서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해 개발하는 지역을 말함.
- 항만공사의 범위(제9조)
  - 항만공사의 범위에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항만배후단지 지정시 이해관계자의 참여 절차(제36조)

## □ 문제점

- 항만법상 항만배후단지와 신항만건설촉진법의 부대시설사업범위 충돌
  - 항만법상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도입 불가능하나
  - 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상 부대시설에는 주거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항만배후단지 지정시 법률상 충돌 발생
- 항만공사의 범위에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불포함으로 인한 도시계획법 의제규정 미 적용과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과의 충돌
- 항만배후단지 지정시 지자체 참여절차 미흡
  -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권자 : 토지소유자
  -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로서 도시계획권자인 자치단체의 참여 불가능

## □ 개선방안

- 항만배후단지의 정의와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과의 조정 필요
- 항만공사(제9조)의 범위에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포함
  - 제11조의 인허가 의제규정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적용
- 지역도시계획권자인 지자체의 참여와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절차 정비 필요

## □ 접근방법

- 개선시기
  - 항만배후단지의 정의 및 참여절차 정비 ⇒ 2006년
  - 항만공사의 범위 확대 ⇒ 중장기과제
- 입체적 연계 : 신항만건설촉진법의 관련 규정 정비와 연계
  - 신항만건설기본계획(제3조) 수립시 항만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항만기본계획 및 제35조 내지 제36조의 항만배후단지종합개발계획 고려하도록 규정

## 다. 환경부 소관

### (1) 환경정책기본법

#### □ 현황 및 여건

- 국토기본법 제8조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5는 개발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를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정합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환경종합계획(제12조), 시·도환경보전계획(제14조의3), 시·군·구환경보전계획(제14조의4) 등 상위 환경계획과 하위 환경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들 상위 하위 환경계획 간의 정합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제4절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 검토 요구됨

#### □ 문제점

-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은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인바, 현행 법제도는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조화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함
- 상위의 환경계획과 하위의 환경계획 간에 규율내용, 시행시기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하에서는 그 검토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함

■ 개선방안

-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정합성확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단계에서의 환경성 평가제도인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정합성 및 실효성 확보 요구되며, 하위 개별법령의 체계적 정비 필요
- 상위, 하위 환경계획들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 시행령에 대상행정계획 확대 추가하며, 법령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강구
- 접근방법
  - 개선시기
    -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정합성 ⇒ 중장기과제
    - 상위, 하위 환경계획 간의 정합성 ⇒ 2006년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대상확대 ⇒ 2006년
  - 전제조건
    - 국토계획법제와 환경계획법제의 정비
    - 하위 환경계획에 대한 상위 환경계획의 규범력 확보
    - 개발관련부서와 환경부서간의 효율적 협의시스템 구축

(2)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현황 및 여건

- 종래 규제철폐라는 측면에서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던 환경영향평가제도, 교통영향평가제도, 재해영향평가제도, 인구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통합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음
- 한편,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성질상 동일한 틀 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임에도 별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문제점

- 법률의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제도의 실질적 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환경영향평가는 통합영향평가법을 근거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바, 양제도는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현재는 양 제도가 서로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못함

■ 개선방안

- 형식적 통합이 아닌 실질적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각각의 영향평가관련 지침에 대한 통합 작업 착수

-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서로 연계되어 통합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법제정비방안을 마련하며, 전략환경평가 도입방안 마련.
- 접근방법
  - 개선시기
    -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와의 연계방안 ⇒ 2006년
    -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통합 법제정비 ⇒ 중장기과제
  - 전제조건
    - 통합영향평가법의 정비 및 구체적 지침의 연계성 확보
    - 환경정책기본법 및 통합영향평가법 정비, 운영시스템의 정비 및 통합

###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 □ 현황 및 여건

- 폐촉법은 절차의 적정성 및 참여와 협력의 기회보장을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시에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9조 제3항)
- 또한 현행 폐촉법은 입지타당성조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9조 제1항)
  -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1개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 문제점

- 현실에 있어서는 입지선정단계에서 참여하는 주민대표의 경우 대표성 여부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주민대표의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입지타당성조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공고된 내용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 개선방안

- 대표성을 갖는 주민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의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폐촉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고방법을 좀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예컨대,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도 고려)
- 접근방법
  - 개선시기
    -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주민대표 선정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마련 ⇒ 2006년
    - 공고방법의 다양화 ⇒ 2006년

#### (4) 하수도법

##### □ 현황 및 여건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제5조의2),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제6조), 마을하수도의 설치(제6조의2)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협력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못함
- 한편, 동법은 2005년 2월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를 하였는바, 下水(하수)와 汚水(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관리체계는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두 법률을 단일법으로 통합하려고 함

##### □ 문제점

- 주민 등의 의견수렴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 개선방안

- 통합되는 단일법에서는 계획의 수립, 처리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협력의 기회를 보장하여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개선시기
  - 단일법의 국회통과 전까지 실효성있는 규정 마련

### 라. 산업자원부 소관

#### (1) 전원개발촉진법

##### □ 현황 및 여건

- 실시계획 승인의 기준(제5조)
  - 전원개발 기본계획 개념의 후퇴
  - 종전 기본계획에 대한 추급효를 이행하기 위한 실시계획 체계
- 주민등의 의견의 청취(제5조의2)
  -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부재
  - 환경 NGO등 제3자 개입기회 미약

##### □ 문제점

-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불가
  - 오래 전에 수립된 기본계획 자체의 법적 안정성 강화
  - 계획 수립후의 사정변경이 인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수정불가
- 장기계획으로 인한 협의적기 상실
  - 행정소송등 당사자 이의신청등 제기 불가
  - 실제 분쟁사례에서 이해당사자들의 권리구제 기회 미흡

##### □ 개선방안

- 실시계획 승인의 철회 가능성을 신설
  - 기본계획 자체의 수정 가능성을 개방
  -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인허가등의 의제 효과를 폐지

-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 및 기회의 확대
  - 형식적 설명회나 공청회를 지양
  - 장기전원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안에 대하여서는 실시계획 공고 이전에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절차를 개시

## 마. 과학기술부 소관

### (1) 원자력법

#### □ 현황 및 여건

-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하여는 현재 원자력법 및 전기사업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개별적인 규정이 흩어져 있으므로,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 필요

#### □ 문제점

- 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제5조의2 제7호).
  - 그리고 과학기술부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처리,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폐기시설 등”) 건설허가권(제76조), 폐기시설 등에 대한 검사권(제78조), 안전규제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음
- 산업자원부는 원자력법 제84조의2에 의거하여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이에 전기사업법에서는 산업자원부로 하여금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 지정(법 제8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 수립·수행(법 제84조),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시행계획 승인(법 제85조)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산업자원부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 관련된 부지선정절차, 지원사업, 법령정비, 부지조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 개선방안

-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영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업무분담방안 마련
-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법령정비 및 효율적 협의시스템 구축

### 3) 조치계획

- 정비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
  - 부처별로 소관 법률 정비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보고서 작성, 보고
  - 법률정비 방안에 대한 추진일정 등 최종 정리
- 관계부처별로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2006년이후)
  - 장·단기별로 소관법률에 대한 개선방안 추진

<첨부>

공공개발 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령정비 제안서

## 목 차

1. 건설교통부 소관
  - (1) 국토기본법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4) 행정중심복합도시법
  - (5) 도시개발법
  - (6) 철도건설법
  - (7) 하천법
  - (8)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 (9) 골재채취법
  -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 해양수산부 소관
  - (1) 연안관리법
  - (2) 공유수면매립법
  - (3) 항만법
3. 환경부 소관
  - (1) 환경정책기본법
  - (2)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 (4) 하수도법
4. 산업자원부 소관
  - (1) 전원개발촉진법
5. 과학기술부 소관
  - (2) 원자력법

## 공공개발 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령정비 제안서

### 1. 건설교통부 소관 법률

#### (1) 국토기본법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제5조)	·환경보전관련 “법정” 계획들을 고려할 책무를 부과 ·환경종합계획(제12조제1항)과 국토종합계획(제7조제3항)의 수립주기일치	·국토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킨다는 추상적 원칙(제5조)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1항)과의 협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동반정비	중장기 과제	·제8조(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와의 관계에서 정비필요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제8조)	·군사뿐 아니라 환경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도 국토종합계획의 우선효를 배제 ·환경계획에 대한 국토계획의 우월적 지위를 대등한 관계로 전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계획에 대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우선효를 적용할 경우 두 계획간의 협력 및 조화가 곤란	·제6조제2항제5호의 “부문별계획”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계획과의 관계를 모색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상의 계획들 상호간의 관계 재정립 ·행정중심복합도시법제7조 정비	중장기 과제	
의견수렴절차보완(제16조, 제17조)	·지역계획의 수립(제16조)과 부문별계획의 수립(제17조)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 마련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의 수립에는 공청회개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제11조, 제14조) 지역계획과 부문별계획에서는 없음			2006년도	
환경계획과의 조화의무(제20조)	·환경부장관의 계획조정 요청권도 부여	·계획간의 조정에 국토계획에 관한 상하계획의 조정규정만이 존재하나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의 조정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필요	·제8조와 동반정비		중장기 과제	

(1) 국토기본법(계속)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공청회의 내실화 도모(제11조, 시 행령제4조)	·공청회의 주제와 개최사실 을 보다 널리 알려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참여를 적 극 유도.	·법제11조제1항은 계획수립 과 관련 공청회의 개최와 그 결과의 존중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공청회 개최공고를 전국지 일간신문 1회이상으로만 규정	·공청회개최공고를 최소 한 2회이상으로 하거나 2개 전국지에 1회이상 으로 하도록 강화. 나아 가 소관청 인터넷 홈피 에 의한 공고의무도 부 과		2006년	

※참조조문

국토기본법

제5조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하천·호소·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①이 법에서 "국토계획"이라 함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②국토계획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1.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도종합계획 :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3.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

- 4. 지역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5. 부문별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제8조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공청회의 개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지역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1. 수도권발전계획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2. 광역권개발계획 :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과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을 광역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
- 3. 특정지역개발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개발계획
- 4.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수준이나 소득기반이 현저히 열악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이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지역계획

제17조 (부문별계획의 수립)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부문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와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문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계획간의 조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서로 상충되거나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당해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 국토기본법시행령

제4조 (공청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 국토종합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보완(제3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서 자연환경보전법(제8조)상의 자연환경보전계획을 고려할 구체적 책무를 규정	·제3조제2호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개선 및 복원” 책무와 자연환경보전법상의 법정계획을 연계	·국토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의 계획 조항정비		중장기 과제	
환경분야에 있어서 도시계획의 우선효 제한(제4조)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제4조제1항) 다음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도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추가	·시·도 토지이용계획과 시·도환경계획 등의 조화	·제8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의 정비		중장기 과제	
이해관계인의 참여보장(제71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에 있어 주민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만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도 매우 민감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므로 그의 참여를 보장			2006년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계속)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개발행위개념의 재정립(제56조,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개념속에서 건축허가의 개념을 제외 ·토지형질변경허가, 채석허가, 토지분할허가 등만을 개발행위허가의 내용으로 함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건축허가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함 ·건축허가는 형태제한, 용도제한 등 높은 밀도의 통제를 받으나, 토지형질변경허가, 채석허가 등은 허가기준에 추상적 개념의 사용이 불가피하며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에 복종. 즉 양자는 성질이 다름			중장기 과제	·건축법 제8조 제6항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제됨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과 불허되는 건축물의 기준 재정비(제76조)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의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과 허용되지 안한 건축물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재정립 필요	·용도지역의 개념과 허용되는 용도 여하에 따라서 도시계획의 정당성 담보와 개별건축주들에 대한 도시계획의 구속성 설득에 있어 중요한 기능수행 ·현재의 기준은 용도지역지정의 목적과 그 근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가 결여	시행령제71조관련 별표상의 용도허가 기준의 재검토		중장기 과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계속)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제28조)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 및 공람절차를 개선·강화하여 계획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	·현재 국토계획법제28조 및 동시행령제22조제2항의 주민공람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실효성 하락 ·사후집행 단계에서 사전에 계획내용을 알지 못한 주민들의 저항초래	대통령령제22조제2항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을 "2이상의 일간신문 공고와 인터넷 등에 게재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으로 개정		2006년	·이해당사자는 당해 지역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문공고방식 존치 필요 ·광범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시에는 주민의 범위 한정이 곤란하고 면 또는 동 단위의 순회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과다 소요

※참조조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서비스의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7.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간·지역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제4조 (도시계획의 지위) ①도시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특별시·광역시·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3조, 제117조 내지 제126조, 제132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는 구역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 가.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 나.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수변구역
  - 다.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 마.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2.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3.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다.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2.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등

나.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라.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

마.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법 및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지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기반시설부담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의 경우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자연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 산림법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과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확정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보전) ①시·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생태·자연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구역구분·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특례범위의 한 정(제3조)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례”(제3조)를 열거적으로 규정	·전면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법치국가 원리를 회복	·관련 다른 법률의 파악·분석		2006년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효 폐지 규정(제13조)	·기업도시 개발계획이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에 의제의 취소 또는 정지를 가능하도록 규정	·사정변경의 원칙 ·일단 부여된 의제효의 존속여부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 도모			2006년	
피수용자의 권익보호와 갈등 해소(제14조)	·토지수용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금전보상이 아닌 환지보상의 검토 필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수용지역 밖 인근지역의 지가는 상승 ·개발에 의한 이익은 기업이 주로 누리고 피수용자의 피해 과다	·제15조와 연계 정비 ·시행령제정		중장기 과제	·도시개발법 제21조 이하 참조
중복의제의 배제와 재정비(제13조)	·연쇄반응적인 의제효의 축소와 제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의제되고, 건축법제8조의 허가를 있다고 보게 되면, 동법상의 의제규정에 따라 다시 국토계획이용법 제56조상의 개발행위허가도 의제됨 → 의제효의 연쇄반응에 따른 문제 ·중복의제의 배제	·건축법, 국토계획이용법 등과의 연계정비		중장기 과제	

※참조조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6.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8.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및 동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1.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2.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

한 도로 점용의 허가

13.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19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18. 산지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19.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21.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24.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6. 자연공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관리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자연공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2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 허가
28.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 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9.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30.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1.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32.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5.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 허가
  36.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7.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8.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9.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0.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점용 등의 허가
  41.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시행자(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말하며, 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수반되어 건축허가서·건축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관련 서류에 첨부된 도면으로 이를 갈음한다.
-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시행자는 개발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용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③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얻은 것을 말한다) 후에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⑥시행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주거단지 등을 조성·공급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 당초 토지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를 대체하여 공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⑧시행자는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시장·군수가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직접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중 일부를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⑩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②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의 방법·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법)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여러 계획들의 우선효과완화(제7조)	·다른 법정계획들에 우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들의 우선적 효력을 완화시킴 ·군사에 관하여는 우선효를 배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환경도 추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 ·이해관계자들의 재산권 보장	·국토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적 효력을 완화		중장기 과제	
개발계획의 수립(제20조)	·법정 환경계획과의 연계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조화			중장기 과제	

※참조조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7조·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개발계획의 수립) ①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건설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③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수용계획
  2.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3. 토지이용계획
  4. 교통처리계획
  5. 도시문화계획
  6. 경관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교육·문화시설 및 보건의료·복지시설의 설치계획
  9.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11. 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12. 재원조달계획
  13. 예정지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4. 실시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1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④개발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⑤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제3항제1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⑨「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 도시개발법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등(제3조)</li> <li>·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등(제17조)</li> </ul>	<p>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과의 체계적합성을 고려하여 재정비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하여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1조제3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li> <li>· 그리고 도시개발법제17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국토계획및이용법제52조)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li> <li>· 상위법상의 계획과 도시개발법상의 계획이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li> </ul>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의 관계 정립		중장기 과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호, 제5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개발사업의시행방식(제20조)</li> <li>·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시행령제32조)</li> </ul> <p>제1호 환지방식 제2호 수용 또는 사용방식 제3호 혼용방식</p>	<p>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소유자 제안과 출자에 의한 방식 등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형태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예: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신탁개발방식)</p>	<p>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의 사업방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전면매수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사업방식에 있어서 사업자와 토지소유자의 갈등이 상존함. 이에 토지신탁방식을 사업방식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함</p>	신탁업법 등 신탁관련 법령의 정비		중장기 과제	

※ 참조조문

도시개발법

第3條 (都市開發區域의 지정 등) ①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計劃的인 都市開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都市開發區域의 면적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都市開發事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이 2 이상의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市·道"라 한다)의 行政區域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市·道知事が 協議하여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할 者를 정한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1. 國家가 都市開發事業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大統領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④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都市開發區域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都市開發區域의 규모, 요청의 節次, 提出書類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 (都市開發事業施行의 委託 등) ①~③항 생략

④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는 指定權者의 승인을 얻어 信託業法에 의한 信託會社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信託契約을 체결하여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할 수 있다.

第17條 (實施計劃의 작성 및 認可 등) ①施行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市開發事業에 관한 實施計劃(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實施計劃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⑤ 생략

第20條 (都市開發事業의 施行方式) ①都市開發事業은 施行者가 都市開發區域안의 土地등을 收用 또는 사용하는 方式이나 換地方式 또는 이를 혼용하는 方式으로 施行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하는 方式이나 換地方式 또는 이를 혼용할 수 있는 都市開發區域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신탁개발) ①시행자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신탁회사는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2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①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1. 환지방식 :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수용 또는 사용방식 :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

3. 혼용방식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과 환지에 의한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④항 생략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2호 생략

3.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4~11호 생략

②~③항 생략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1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포함한 4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제76조 내지 제78조와 건축법 제32조·제33조·제51조·제53조 및 제67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6) 철도건설법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제22조)</li> <li>·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등(제23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세권개발사업의 계획적 실시 및 사업시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외에는 도시개발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역세권개발에의 장애로 대두되고 있음.</li> <li>· 따라서 역세권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방식 등의 절차적 규정을 들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li> </ul>	역세권개발구역과 도시개발구역 또는 택지개발구역의 관계 정립		중장기 과제	선호시설유치경쟁이 치열한 분야로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

※ 참조조문

철도건설법

제22조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개발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등) ①항 생략

②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사업시행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역세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시개발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④항 생략

(7) 하천법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하천의 귀속 (제3조)	·하천을 “국유로 한다”는 현행규정을 보완 ·하천 안의 “유수”를 제외한다는 주의규정을 제2항으로 신설	·하천 안의 “유수”까지 국유로 보려는 관행의 시정 ·헌법 제120조(자연자원특허)의 원칙을 구체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민법상의 전통적인 유수이용권과의 관계 재정립 ·제5조에 제2항을 신설	·유수이용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과 특별법인 하천법의 조화 ·관행수리권의 고려		다음의 계획 수립 및 이행에서 민법상의 권리를 고려 : -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제11조) -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제11조의2) - 하천정비기본계획(제17조)		
하천유지유량 (제20조) 하천유수의 사용·관리 (제21조)	·건설교통부장관이 유지유량을 정할 때 상하류 주민들과 협의절차를 규정(제20조) ·하천유수사용자의 사용한계를 설정하고 그 사용방법을 역내 이용자와 협의하는 절차를 규정(제21조)	·상류와 하류간의 수리권 조정 ·민법상 유수이용권의 고려				

※ 참조조문

하천법

제3조 (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를 국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하천구역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1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자원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할 지역 기타 유역치수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하천관리위원회(하천유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 및 동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유역하천관리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1.20>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유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역별로 유역주민,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등이 포함된 유역하천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⑧제8조제2항의 규정은 유역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

[본조신설 2001.1.16]

제17조 (하천정비기본계획) ①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역치수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관리청인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청인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③하천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④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해발생의 상황, 수자원 개발·이용의 현황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⑥제8조제2항의 규정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0>

⑦제13조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하천유지유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하천유지유량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기준지점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기준지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하천유수의 사용·관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유수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8)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댐건설장기계획 (제4조) 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등 (제5조)	·계획수립 및 예정지역지정을 위한 공청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규정 신설 ·전원개발담 제외 조항(제4조제3항)을 삭제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의 도입 ·전원개발특례제한 ·시장원리의 부분적 도입			증장기 과제	
기본계획(제7조) 실시계획(제8조)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 등의 주민협력절차 추가	·댐건설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내용중 주민지원사업 등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회 등 주민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기본법 등의 제정을 통하여 물이 분배와 용원칙 정립		증장기 과제	
댐관리의 기본원칙 (제16조)	·제16조에 “저수이용권”을 별도의 항으로 규정 ·현행 댐사용권(제24조)과 저수이용권의 개념을 구분	·물적시설 중심의 권리구조를 저수 중심의 권리구조로 재편 ·저수이용권의 합리화 ·민법상 유수이용권과의 조화		제 7 조 의 기 본 계 획 과 연 계	2006년	
댐사용권의 성질 (제29조)	·댐사용권을 “물권으로 본다”는 구절을 삭제	·제29조 전단의 “물권”간주 조항은 민법상의 유수사용권과 충돌 ·댐사용권의 보장은 제29조 후단의 규정 및 제30조의 규정으로 충분		· 제 2 9 조 후 단 “부 동 산 에”→ “ 민 법 상 부 동 산 에”	2006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6조)	·댐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적용법률에 “민법”을 추가 ·제46조의 조문제목을 변경	·저수의 사용에 관하여 하천법 - 민법 - 댐건설법의 3각구도를 형성			증장기 과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제43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 수립시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피지원대상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민 위주의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함.			2006년	

※ 참조조문

댐건설및주변지역들에관한법률

제4조 (댐건설장기계획)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댐건설의 기본방침
2. 각종 용수의 수급전망
3. 수계별 댐건설계획(농업용수댐은 저수량이 1천만톤 이상인 것에 한한다)
4. 재원조달계획
5. 입지선정기준
6. 댐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로 댐의 건설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댐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04.1.29>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⑤제3항의 규정은 댐건설장기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9>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제5조 (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댐건설에 필요한 일정지역(댐건설로 인한 수몰예정지역을 포함한다)을 댐건설예정지역(이하 "댐건설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당해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이 댐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경우에는 하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하천관리청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하천에 댐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전에 해당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1.29>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예정지역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댐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를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댐건설예정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기본계획) ①댐건설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9>

1. 건설의 목적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3. 규모 및 형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이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6. 댐건설비용(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를 포함한다)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7. 댐건설사업시행자

8. 사업기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에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 (실시계획) ①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댐사용권설정에정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실시계획의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댐관리의 기본원칙) 댐의 관리는 댐의 저수로 인한 공익의 증진,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유의하고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24조 (댐사용권의 설정) ①댐사용권은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설정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을 설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설정목적

2. 댐사용권에 의하여 확보될 저수의 최고·최저의 수위 및 양

③제2항제2호의 사항은 당해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완료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댐사용권설정에정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댐사용권설정에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을 설정받기 전이라도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 (댐사용권의 성질) 댐사용권은 물권으로 보며, 댐사용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담사용권의 처분제한) ①담사용권은 상속, 법인의 합병 기타의 포괄승계, 양도, 채납처분, 강제집행 및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저당권설정등록이 된 담사용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분할·병합 또는 그 설정목적을 변경하거나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제43조 (담주변지역지원사업) ①담관리청 또는 담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담관리청 또는 담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담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1. 담관리청 또는 담수탁관리자

2.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하천법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댐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천법을 적용한다.

(9) 골재채취법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 조치	정비 시기	비고
지도·감독(제21조) 및 골재채취 등(제6조)	·채취허가에 따른 골재채취 작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도·감독 체계를 실효화 - 매월 채취량 보고 의무화 규정 추가 - 전자식 자동등록 시스템(Black box) 의무장착 규정의 포함	해사채취 작업이 허가구역 이탈, 허가량 이상 채취 등 해상에 대한 행정청의 지도 감독이 소홀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감독 체제의 도입	전자식 자동등록시스템 장치의 개발			
골재채취허가의 제한(영 제27조)	·채취허가 제한구역의 대상과 거리범위에 대한 원칙과 합리적 근거 제시	문화재보호법의 경우 제한구역이 최대 4km <sup>2</sup> 인 반면, 수산자원의 영향이 큰 육성수면에서는 1km <sup>2</sup> 이고 해양구조물의 안전을 위한 이격거리는 50m로 다른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이격거리에 관한 연구 조사 요구			
골재채취단지의 권지정(제34조)	·골재채취단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더라도 해당해역 관할 행정청 및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지 지정절차를 정비	채취단지 지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채취단지 인근지역 주민으로부터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하여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건교부장관이 직권으로 강행할 경우 지역주민과 중앙정부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큼.				법률 개정시 중앙부처의 의견만을 청취함으로써 인해 당사자인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음.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 조치	정비 시기	비고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해제(제34조)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관계기관을 포함하도록 함.	지정의 해제 권한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만 있어 해역환경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를 지정해제 요청이 가능한 주체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골재채취구역의 지정 (제34조) (제22조제2항) (습 제33조의2)	·채취“단지”의 개념과 범위의 설정 ·시행령(제33조의2)의 일탈을 시정 ·골재 채취단지를 “면적” 개념으로 파악	·채취단지의 개념을 “복수의 구역”으로 해석하는 시행령(제33조의2) 및 행정관행의 시정 ·채취단지의 지정기준을 “구역분할” 개념으로 변모시킨 시행령(제33조의2)을 개정 ·골재채취단지를 광업법상 “쌍구”와 같이 면적개념으로 파악하여 “복수구역” 개념을 지양	시행령 제33조의2 개정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간의 갈등사안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제30조)	·골재채취법 제39조 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요청 ·인근 지자체의 장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지역 지자체장에게 해사채취구역 변경, 취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추가(연안관리법 준용)	·해사채취과정에서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 및 해양수산부 장관도 채취구역의 변경, 취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이 관할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파악할 수 없는 광역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련 지자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에 대한 변경, 중지,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해사채취의 광역적인 영향범위를 고려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 간 갈등의 여지가 있음.				

※ 참조조문

골재채취법

- 제21조 (지도·감독) ①골재채취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채취량등을 명기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골재채취현황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 (골재채취의 허가) ①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 ②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구역이 광업권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광물채굴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달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판명되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4.15>
-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금지구역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방시설등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수질오염의 방지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2 이상의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복구용·군사시설용등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채취하고자 하는 것을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 ⑤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그 골재채취로 인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받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6조 (골재채취등) ①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채취기간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4.15>

③삭제 <1999.4.15>

제30조 (골재채취구역 변경등의 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골재채취구역의 변경, 채취의 중지, 시설물의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연환경훼손·수질오염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경우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34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개발이 용이한 지역(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안에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영향평가서협의 또는 해역이용협의를 가진 것으로 본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조정 등 그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접 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할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지역안에 있는 국유지의 관리청 또는 공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입지·면적·채취량 및 채취시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설립인가등) ①협회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업자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골재채취법시행령

제27조 (골재채취허가의 제한)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28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및 구역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구역 등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3.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유역.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농업기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지정문화재의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6.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군사시설의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군사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
  8. 수산업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수역
  9.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중 하천구역
  10. 댐 또는 하구둑의 물막이 둑 또는 배수문으로부터 상·하류 방향으로 1킬로미터이내의 하천구역과 물넘이둑에서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이내의 하천구역
  11. 해면의 방조제 및 배수갑문으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해역과 해안 또는 해안공작물로부터 50미터이내의 해역
  1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구역.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 ②제1항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호소는 하천구역·해역 또는 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골재채취법시행령

제33조의2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1.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지정할 것
  2.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2개 광구 이상 5개 광구 미만의 규모로 지정할 것
- ②법 제34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다.
-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2.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3. 골재의 부존량
  4.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 5.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⑤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은 골재의 부존량·채취계획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단지에 부존되어 있는 골재의 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지정기간은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실시계획의 폐지(제17조, 제18조, 제19조)	·다음의 실시계획들에 대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획의 “변경” 이외에 계획에 대한 승인철회(폐지) 제도를 도입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산업단지 지정후 해제전까지의 법적 안정성 확보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위탁시행(제20조)과 신탁개발(제20조의2)에 대한 경과 조치를 보완	2006년	·유사입법례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법의 규정례가 있음(제52조, 제54조)
인·허가 의제효과 해제(제21조)	·장관등 행정관청이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철회한 경우에 인·허가의 의제(제21조제1항)의 효과도 함께 해제 ·제21조에 제4항을 신설	·법률 규정에 의한 의제효과로 인하여 장관등 행정관청이 승인을 철회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			2006년	·유사입법례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법의 규정례가 있음(제52조, 제54조)
협의기준을 구체화(제21조의2)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협의기준”의 개념과 골격을 구체화, 통일화	·협의기준의 내용과 운영에 관하여 시행령의 규정이 아직 없음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인허가의제처리기관이 “협의기준”을 가지나 각기 달라 갈등을 야기			중장기 과제	
산업단지 지정·고시의 우선효 제한(제23조)	·제23조제1항본문 다음에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연안관리법상의 연안관리계획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법정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추가	·법정 환경계획과의 조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공유수면매립법등의 관계규정 동반정비	중장기 과제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계속)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녹지 조성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기준 제시(제5조)	·녹지의 상태,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권자가 행하는 녹지조성유예조건, 녹지조성면제조건, 지방환경청 등 환경영향평가협의기관과의 관계 등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 제시 ·산업단지의 환경친화성 제고	·산업단지의 녹지면적 비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녹지의 상태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실제 나무가 없는 녹지가 다수 존재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와 동반정비	중장기 과제	
용어의 재정비·통일(제2조6호, 령24조의4, 령제40조)	·산업집적활성화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용도와 물류시설용도는 산업시설구역 ·그러나 산업입지법상 폐기물처리 시설과 유통시설은 산업시설용지에서 제외됨 ·산업집적활성화법상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은 녹지와 공공시설구역을 별개로 인식 ·산업입지법은 녹지를 공공시설에 포함하여 인식	·관련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해석상의 상충과 혼란 발생		산업집적활성화법 제33조, 동시행령제43조	2006년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도 참조

※참조조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9, 2002.12.30>

1.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

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2의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말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자원비축시설"이라 함은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지방산업단지 : 다음의 구분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1) 일반지방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2)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농공단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6.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관광휴양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케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건

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시 이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을 제외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지방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시 이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을 제외한다)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중 항만·공업용수시설·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의2 (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회사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21조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등) ①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5.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8. 삭제<1995.12.29>
  9.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2.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13. 삭제 <1997.12.13>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15.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사용승인
  16.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
  18.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19.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20.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1.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 ②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에 이를 협의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제21조의2 (협의기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의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준의 내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적용특례) ①제6조·제7조·제7조의2·제7조의3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사업시행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임시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용도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장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안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및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4 (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과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거로 한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6.6.29, 2000.7.1, 2003.1.14, 2005.3.25>

1. 도로

2. 공원

3. 광장

4. 삭제

5. 하천

6. 녹지

7. 삭제

8.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

## 9. 하수도

### 10. 유수지시설

제40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산업시설용지 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관리기관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관리기관이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리권자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리기관·관리권자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안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시설 구역은 용도별로 이를 세분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용지의 용도별구획등) ①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호의 용도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7.7.10, 1999.8.9>

1. 공장시설용도
2. 지식산업시설용도
3.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4. 자원비축시설용도
5. 폐기물처리시설용도
6. 물류시설용도
7. 지역특화산업용도(농공단지의 경우에 한한다)
8. 전력시설용도
9. 벤처기업집적시설용도
10. 기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용도

지역특화발전특구특례법

제51조 (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운영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구계획과 상이하게 운영하는 경우
2. 당해 특구 또는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특구지정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제2항(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3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는 이 법에 의한 특구로 지정될 수 없다.

④그 밖에 특구의 지정해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①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는 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계획의 내용의 변경으로 규제특례의 적용이 중지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계획의 내용의 변경으로 관련특구의 지정내용이 취소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인정된 규제특례 및 그에 따라 행하여진 허가·인가·승인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규제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화사업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 또는 특화사업과 관련된 규제특례와 허가·인가·승인 등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에 따라 설치한 광고물·시설물 등을 당해 규제의 근거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철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 (1) 연안관리법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연안육역의 범위 조정 (제2조의 3호)	해역과 육역의 자원 및 공간을 통합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하여 연안육역의 범위를 해양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설정	-통합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안해역의 자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안소수계로 연안육역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특별관리해역 오염총량관리와 일관성 유지(제4조의 4 제2항)	연안육역 범위의 육지측 한계(500m, 1km) 규정 조항을 폐지	연안육역의 지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해당연안의 자연환경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2006년도	국가하천, 지방 1급하천의 수계 범위가 아니라 연안 소수계를 대상으로 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절차 체계화 (제5조)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절차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법인, 기업, 사익단체, 민간단체, 민간인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반영	-관계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시장, 도지사)에서 통합계획에 반영될 사항을 미리 요청 -통합의 대상이 되는 요소의 하나는 관리주체인바, 이해당사자의 계획수립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확대 필요	-통합계획에 반영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사업, 계획, 정책 제출 요청, 민간단체, 기업에게 통합계획에 반영될 사항 제출 요청 조항 신설	-통합계획 수립과정을 체계화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포함. -광역지자체를 기준으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	2006년도	국토기본법은 공청회 개최를 법률에 포함하고 있음(제1조)

			<p>-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제시(예, 제5조의 2 신설)하고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p>	<p>- 연안관리 지역계획의 수립(제8조) 절차도 병행하여 정비</p>		
<p>통합계획의 수립주기 명시</p>	<p>통합계획의 수립주기를 이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p>	<p>-현재 통합계획의 수립주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다른 계획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기적인 연안실태조사 자료의 정책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변화하는 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p>	<p>- 계획수립주기를 5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p>		<p>”</p>	<p>다른 국가계획의 경우 대부분 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있음. 초기 계획수립주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탄력적인 계획의 수정변경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작은 계획의 변경은 통합계</p>

						획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음.
계획의 폐지 (제10조) (제15조)	·다음의 계획들에 대하여 변경이외에 “폐지” 제도를 도입 - 연안통합관리계획(제5조) - 연안관리지역계획(제8조) - 연안정비계획(제13조)	·다른 계획등과의 관계에서 다른 계획들의 해제(제1조 제2항)의 경우에 대응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	·공유수면매립 ·법상 면허의 효력상실(제34조)조항을 연계 정비			
승인의 철회 (제8조제4항) (제17조제2항)	·다음의 계획들에 대하여 공익상 사정변경등으로 인한 장관에 의한 승인의 “철회” 제도를 도입 - 연안관리지역계획(제8조제4항) - 연안정비계획(제17조제2항)	·승인권자의 재량권 강화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 ·법의 엄격성을 완화				
인·허가 의제 효과의 해제(제18조)	·장관이 승인을 철회한 경우에 인·허가 의제(제18조)의 효과도 함께 해제 ·제18조에 제3항을 신설	·법률 규정에 의한 의제의 효과 때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을 철회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				
이행평가를 위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 지역계획에서 정한 정책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자연환경변화, 이용특성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차보고서 작성	-현재 연안관리법에는 주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법제 17조) 주기적 점검의 종합과 분석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취약함. -또한 이러한 이행평가 및 현황변화에 관한 연차보고	·연차보고서 작성 명문화		”	

		서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연안통합관리제도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				
연안용도구역 지정	연안해역을 국가 주권이 미치는 국토공간으로 인식하고 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안육역 및 해역의 용도구역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안관리법은 기본법의 위상을 갖고 있으나 연안공간과 자원의 관리에 대한 실체적 접근을 행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li> <li>-이로 인해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시 다법에 정한 정책, 계획, 사업에 대한 수동적 수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연안관리에 한계</li> <li>-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는 용도구역 지정을 통한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계획인 연안통합관리계획과의 일관성 유지 필요</li> </ul>	-연안에 대한 용도구역 지정을 연안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한다는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안 및 해양에 대한 연구조사자료의 종합.</li> <li>-광업권, 어업권 등 연안에 대한 점사용권한의 실체적 내용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오랫동안 권리의 사용을 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조사하여 이를 용도구역지정과정에서 반영</li> <li>-수립중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용도구역 지정결과 의 여파적 수용</li> </ul>	"	
다른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판단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책, 계획, 사업에 대한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요청	-관련계획 및 용도구역 지정의 변경요청 권한과	"	

	<p>변경요청 권한 강화</p>	<p>정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계획, 용도구역 지정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 변경요건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이를 수용하게 할 추후 절차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어 시문규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p>	<p>이 있을시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합당한 근거를 제출하도록 명문화</p>	<p>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검증절차와 방법을 마련</p>		
<p>명예연안관리인 제도 검토</p>	<p>개인이 아닌 역량있고 건전한 지역단체, 대학(연구소)과 실질적인 연안통합관리 실현을 위한 협력강화를 위해 권한의 일부를 위임, 위탁</p>	<p>-법 제24조에 따르면 명예연안관리인제도를 두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유사제도의 경우 실효성이 없음.</p>	<p>-명예연안관리인제도를 대폭 수정하여 연안통합관리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개인, 지역단체 대학(연구소)와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위탁, 위임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p>	<p>-민간단체, 개인 지역대학(연구소) 관련 합동 회의 -학술연구 중심의 국가해양발전프로 그 램 (K-Seagrant)의 예산의 상당부분을 연안관리지원 사업으로 전환 (미국의 Sea-grant, 또는 유럽의 Science shop제도 참조)</p>	<p>"</p>	<p>국민신탁법안의 보전협약 관련 사항(제 19조 참조)</p>

※ 참조조문

연안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안"이라 함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
2. "연안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 가. 바닷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나. 만조수위선으로부터 령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
3. "연안육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 가. 무인도서
  - 나. 연안해역의 률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어항법에 의한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범위안의 률지지역(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4. "연안정비사업"이라 함은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으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등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는 사업
  - 나. 연안해역의 정화, 폐선의 제거등 연안해역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 다.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제5조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개발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02.12.3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안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관할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안에서 2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2이상의 시·군·구에 대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획의 수립 절차에 따라 당해연안관리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2. 통합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연안의 연안정비사업의 방향
4.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통합계획등의 변경) ①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획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8조제4항·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다른 계획등과의 관계) ①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등이 지정되어 있는 연안육역(환경보전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등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연안해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계획 또는 용도지역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육역(환경보전관련 계획의 수립 또는 용도지역등의 지정 대상이 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연안해역을 포함한다)에 대한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용도지역등을 지정·변경·해제한 경우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보내용에 적합하게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연안정비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연안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법률을 적용받는 연안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립한다. <개정 2004.2.9>

1. 도시계획법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3. 유통단지개발촉진법
4. 자연환경보전법
5. 자연공원법
6.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7. 호소수질관리법
8. 수도법
9. 야생동·식물보호법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비계획의 변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상태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이하 "연안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계획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이하 "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립한 정비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인·허가등의 의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5.29, 2004.2.9>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7.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8. 수산업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9. 전기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11.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
  12.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등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1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등의 허가
  1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1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17.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18.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정비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①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③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제24조 (명예연안관리인) ①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연안관리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연안관리인의 자격, 위촉방법 및 직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2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의 설정<개정 1999.2.8>)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7.4.10, 1999.2.8>  
②삭제 <1999.2.8>

#### 공유수면매립법

제34조 (면허의 효력상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재지변·불가항력등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1. 매립면허에 의하여 공사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할 경우로서 지정된 기일내에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로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그 매립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 이상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킨 경우에는 그 매립면허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공유수면매립법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매립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계적인 매립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기초(수요)조사부문을 법률로 명시해야 할 것임. 수요조사의 내용에 매립 후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토지이용수요계획서(안)를 작성하도록 하여 실질 매립수요를 파악하도록 함.</li> <li>매립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지역이해당사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토지이용수요계획서를 공개하여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요조사에서 매립기본계획수립까지의 기간이 1년 정도로 매립의 생태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 이므로, '토지이용수요계획서 안' 작성으로 매립기본계획의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li> <li>매립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민주성 및 적정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립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수요조사 조항을 포함시키되, 반드시 '토지이용수요계획서' 작성을 포함하고 타당성조사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이용수요계획서의 타당성 조사는 지자체 연안관리 지역 계획 상의 용도구역에 맞도록 조정</li> </ul>	2006년도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매립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환경생태계변화, 경제성 평가, 인문 사회적 영향에 대한 환경관련 전문가 의견 첨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매립 전후의 환경변화나 경제성 평가가 간략하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어 매립에 대한 실체적 평가에 한계.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평가에 기초하여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li> </ul>			"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가매립수요에 대해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절차를 강화하고 구체적 기준 마련</li> <li>변경에 대한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의견 수렴 명문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립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 폐지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경시 매립면적 확대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여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매립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의 적정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 위치 토지 이용변경 등에 대한 추가 매립수요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변경)서를 작성토록 함.</li> </ul>		"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면허(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립면허와 매립기본계획은 별도의 과정으로 구분하고 매립면허 승인절차 강화</li> <li>·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시도지사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체계적 의견수렴·반영</li> <li>·토지이용계획서 작성</li> <li>·환경영향평가 후 위치조정, 면적축소, 취소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li> <li>·연안개발사업 및 매립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 누적환경영향평가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립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최소화</li> <li>·매립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대해 지역이해당사자간 갈등사태가 많아짐에 따라 갈등의 사전예방차원에서 법제도 정비</li> <li>·제1항의 면허신청과 관련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통합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30만㎡ 매립사업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30만㎡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기도 될 뿐만 아니라 단위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개발이 많이 된 지역 혹은 매립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 내에서 또다시 매립이 될 경우 그 영향은 누적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매립사업내용과 강도, 주변의 매립면적 등을 고려하여 누적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매립면허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영향평가법 상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조정 및 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조정권한 확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안선을 정비하는 경우(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에 매립이 가능하다는 조항 삭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조항은 해안경관 개선 정비 목적 하에 해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삭제해야 할 것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는 용도별 매립가능면적을 우선적으로 명시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매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li> <li>- 예를 들면 매립총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유수면매립예정 총면적의 20% 내에서 가능하도록 한다거나 일정용도구역의 면적비율로 승인하는 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법률에 의해 의제처리된 법률에 대해 공유수면매립절차를 받도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법령의 공유수면매립법 관련 의제 조항 조정</li> </ul>		"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면허의 기준(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허의 기준(제11조)과 관련하여 동법 제1항 제4호는 기타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공익을 위하여라는 불확정개념이 쓰이고 있고 또한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li> <li>·면허의 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토지이용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며 매립 후 '토지이용계획서'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2년마다 평가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준의 명확성</li> <li>·불확정개념 규정</li> <li>·포괄적 위임</li> </ul>			"	
면허의 취소(제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허의 취소(제32조) 사유와 관련하여 동조 제4호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와 같은 불확정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li> <li>·면허취소 후 원상복구 명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허취소사유의 명확성</li> <li>·불확정개념 규정</li> </ul>			"	·면허취소사유 발생시 기존의 위임위탁까지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 명문화
위임·위탁의 철회(제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처분등의 위임·위탁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li> <li>·제32조(면허의 취소등)에 제2항을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임위탁등을 이유로 직권에 의한 면허 취소를 거부하는 관행불식</li> <li>·법적안정성의 회복</li> </ul>			"	
의제된 면허의 효력상실(제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의제된 경우에 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등이 정한 기간내에 신청 착수준공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34조의 면허의 효력상실 규정을 준용</li> <li>·제34조(면허의 효력상실)에 제4항을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법에 의한 면허의제의 양산을 지양하고 면허권자의 권한과 책임을 확립</li> <li>·법적안정성의 회복</li> </ul>			"	

※ 공유수면매립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 '조항이 포함된 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1조),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3조), 항만법(제11조), 전원개발촉진법(제6조),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법률(제11조), 관광진흥법(제55조), 농어촌도로정비법(제12조), 도로법(제25조의2), 산업입지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의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13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8조), 어항법(제37조), 연안관리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등) ①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1.3.8, 1991.12.14, 1993.8.5, 1994.3.24, 1995.12.29, 1999.2.8, 2001.1.29, 2002.2.4, 2002.12.30>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5.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8. 삭제<1995.12.29>
9.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2.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13. 삭제 <1997.12.13>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15.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사용승인
  16.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
  18.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19.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20.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1.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 ②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1995.12.29, 1997.12.13>
- ③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에 이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1993.8.5, 1995.1.5, 1995.12.29>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3조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6.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8.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및 동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1.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2.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의 허가
13.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별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19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18. 산지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19.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안에서의 별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별채 등의 허가
2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21.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24.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6. 자연공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관리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자연공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2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 허가
  28.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 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9.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30.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1.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32.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5.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 허가
  36.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7.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8.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9.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0.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
  41.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시행자(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말하며, 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

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수반되어 건축허가서·건축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관련 서류에 첨부된 도면으로 이를 갈음한다.

### 항만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항만공사의 시행 또는 허가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협·의 또는 동의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1.12.14, 1995.1.5, 1997.12.13, 1999.2.8, 2001.1.29, 2002.12.30, 2003.5.29>

1. 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5. 공유수면매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등의 허가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 점용 및 사용의 허가 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 ②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5.1.5, 1999.2.8>
- ③관리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를 직접 하거나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을 허가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

에 관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제·협의 또는 처분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을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8, 2002.12.30, 2003.12.30>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4.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7.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9. 삭제 <2003.12.30>
10.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삭제<2000.12.23>
14.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해군기지법 제6조 및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등
15.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지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16.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

18.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감소처분

19.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 사전승인

②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6.12.30]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인·허가 등의 의제) ①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1.27>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및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6.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9.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 수도 설치의 인가
11.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3.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15.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형질변경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7.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18.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 허가
19.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0.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
2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23. 삭제 <2003.5.29>
2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
2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2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7.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28.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9.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2.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협의.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제외한다.
  33.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5.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등의 사용심사
  36.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7.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광진흥법

제55조 (인·허가 등의 의제<개정 2004.10.16>)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2002.2.4, 2002.12.30, 2004.10.1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동호 마목의 계획중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동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승인,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8.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13.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1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1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1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8.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개정 2001.12.31>)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면허·결정·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1.12.31, 2002.12.30>

1.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
6.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동법 제3조제6호 가목의 시설중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한한다),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②군수가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거나 이를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도로법

제25조의2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개정 1999.2.8, 2004.1.20>) ①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1993.3.10, 1995.12.6, 1999.2.8, 2002.2.4, 2002.12.30, 2004.1.20>

1.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 삭제 <1990.1.13>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및 교통광장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0. 삭제 <1995.12.6>
1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1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 변경등의 허가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4.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광업권취소처분

1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16.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신설등의 허가
17.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18. 도시공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안에서의 점용허가
19.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
20.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②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0>

③삭제 <2004.1.20>

[본조신설 1976.12.31]

#### 산업입비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인·허가등의 의제)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공장 및 진입로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해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2.12.30>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동법 제37조제1항·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3.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4. 사망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망지안의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지 지정의 해제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6.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8.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
10.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12.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14.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폐지
15. 삭제 <2002.12.30>

16.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축조의 신고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시에 사도개설 등의 허가의 의체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에게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진입로부지에 대한 제1항 각호(제9호를 제외한다)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공장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조건부허가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
4.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허가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 또는 허가·신고의 의체를 받고자 하는 자(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체와 함께 제14조제1항 각호의 허가등의 의체를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시(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체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시)까지 사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삭제 <2002.12.30>

⑧삭제 <2002.12.30>

[본조신설 1999.2.8]

[중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5로 이동<1999.2.8>]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3조 (인·허가등의 의제) ①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8, 2002.12.30>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5.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6.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8.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9.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10.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동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1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2.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13.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감소처분
14.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5.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6.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사용승인
17. 사망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별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지지정의 해제
18. 삭제 <1997.12.13>

②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8조 (인·허가 등의 의제) ①시행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지정권자가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한 때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결정·허가·신고·인가·동의·승인·협의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2.1.26, 2002.2.4, 2002.12.30, 2003.5.29>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2.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의 사용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죽의 벌채 승인
4. 사망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별채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지 지정의 해제
5.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삭제 <1997.12.13>
7. 수도법 제12조·제33조의2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8.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결정,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승인
  11.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2.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1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14. 삭제 <1999.1.21>
  15. 삭제 <2002.2.4>
  16.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인가
  17.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21. 삭제 <1997.12.13>
  22.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승인
  2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
  2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2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개장허가
- ②지정권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어항법

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허가·인가·면허·승인·동의 및 협의등(이하 "허가·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의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인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1997.12.17, 1999.2.8, 2001.1.29>

1. 도시계획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사용허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4.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부설인가
  5.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허가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7. 수산업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 승인
  8.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점용 및 사용의 허가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0.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협의
  1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12. 해군기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13.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 ②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12.17, 1999.2.8, 2001.1.29>

※ 참조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당해 시·군

또는 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매립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매립예정지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1.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2.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3.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
4.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
5.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전·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
6.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매립기본계획의 변경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고시된 매립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③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면허) ①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여야 한다.

④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과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의 매립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매립한다. 다만,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할 수 있다.

제11조 (면허의 기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예정지 및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면허를 할 수 없다.

1.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매립에 동의하고 매립이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이 그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3. 매립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면허의 취소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등을 취소·변경하거나 매립공사의 시행구역안에 있는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제거 또는 원상회복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 기타 처분을 받은 경우
2. 매립공사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
3. 공유수면의 상황 변경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4.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34조 (면허의 효력상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재지변·불가항력등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1. 매립면허에 의하여 공사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할 경우로서 지정된 기일내에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로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그 매립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 이상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킨 경우에는 그 매립면허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8조 (도시계획구역등에서의 공유수면의 매립) ①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

다.

1. 농어촌진흥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공사
4. 한국전력공사
5. 한국석유공사
6. 한국관광공사

②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간재가공공장용지 및 원자재가공공장용지 : 23만제곱미터이하

나. 유통·가공시설용지 : 16만5천제곱미터이하

다. 주택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 10만제곱미터이하

2. 해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안선을 정비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제3조 (면허신청 등)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8.7>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3. 자금계획서
4.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매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에 한한다)
  8.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9. 신청구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시행령 별표 4의 IV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한다)
  1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③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재위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농림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를 한 때에는 면허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영향평가대상사업등) ①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인구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수자원의 개발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8. 공항의 건설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11. 관광단지의 개발
12. 산지의 개발
13. 특정지역의 개발

14. 체육시설·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5. 기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③평가분야별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9999.01.01]

(3) 향만법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향만배후단지의 정의(제2조 제7호)	향만배후단지의 정의와 신향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신향만건설사업”과의 조정 필요	· 현행 향만법상 향만배후단지에는 주거단지가 도입될 수 없으나 신향만건설촉진법에서는 부대시설사업으로 주거단지가 도입될 수 있어 향만배후단지 지정시 법률상 충돌 발생			2006년	
향만공사의 범위(제9조)	· 제11조의 다른 법률의 인허가의제규정을 향만배후단지의 개발단계에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 필요. · 제9조“향만공사”의 범위에 향만배후단지의 개발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현행 향만법 제9조 향만공사의 범주에 향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도시계획법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과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함.			중장기 과제	
향만배후단지의 지정(제36조)	지역도시계획권자인 지자체의 참여와 공청회 등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절차 정비 필요	· 현행법상 토지소유자만이 향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그러나 해당 토지의 대부분이 매립지로 해양수산부에 의해서 계획 수립 및 변경이 가능하여 도시계획권자인 지자체의 참여가 불가능함. · 따라서 지자체의 참여와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참여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006년	

※ 참조조문

항만법

第2條 (定義) 1~6호 생략

7. "항만배후단지"라 함은 무역항의 항만구역 및 臨港區域 안에서 지원시설과 港灣親水施設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 및 항만관련 산업활동을 증진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자의 편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하는 지역을 말한다.

8~9호 생략

第5條 (港灣基本計劃의 수립) ①港灣의 開發을 促進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은 指定港灣에 관한 港灣基本計劃을, 市·道知事는 地方港灣에 관한 港灣基本計劃을 10年을 單位로 하여 각각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港灣에 대한 港灣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관계 市·道知事와 協議하여야 한다.

③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港灣에 대한 港灣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海洋水産部長官은 승인을 함에 있어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9條 (港灣工事의 施行者등) ①港灣施設의 新設·改築·유지·補修 및 浚渫등에 관한 工事(이하 "港灣工事"라 한다)는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 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指定港灣은 海洋水産部長官이, 地方港灣은 市·道知事が 각각 施行한다.

②~④ 생략

第11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第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廳이 港灣工事의 施行 또는 許可에 관한 사항을 告示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免許·승인·協議 또는 同意등(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各號의 關係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都市計劃法 第59조의 規定에 의한 都市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동법 第61조의 規定에 의한 都市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2.~12호 생략

제35조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 및 항만시설의 수요에 관한 사항
2. 공유수면매립지·항만유휴부지 등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의 계획적 조성·공급에 관한 사항
3.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4. 항만배후단지의 무역항별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5.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의 정비·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①항만배후단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만배후단지지정 내용중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관계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등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로서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만배후단지에 포함하여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를 소유한 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항만배후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호의 사항은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3.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기간 및 시행방법
4. 부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5. 주요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계획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8.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신항만건설촉진법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新港灣"이라 함은 輸出入貨物등의 원활한 輸送을 위하여 建設되는 港灣으로서 海洋水産部長官이 지정·告示하는 港灣을 말한다.
2. "新港灣建設事業"이라 함은 新港灣의 建設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各目的의 1의 事業을 말한다.
  - 가. 港灣法 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港灣施設의 建設事業
  - 나. 新港灣을 이용하는 貨物과 旅客등을 輸送하기 위하여 新港灣과 背後幹線網을 連結하는 道路·鐵道 또는 運河의 建設事業
  - 다. 貨物流通施設, 情報通信施設, 港灣利用客 및 港灣關聯業務從事者를 위한 便宜施設, 海洋親水空間등 港灣關聯施設의 基盤造成事業
  - 라. 港灣關聯業務從事者와 移住民을 위한 住居施設의 基盤造成事業
  - 마. 新港灣建設豫定地域의 造成을 위한 公有水面의 埋立事業

第3條 (新港灣建設基本計劃의 수립등) ①海洋水産部長官은 新港灣建設이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新港灣建設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基本計劃과 관련이 있는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및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新港灣建設에 관한 推進委員會(이하 "推進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야 한다.

③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하며, 그 基本計劃을 관계 市·道知事에게 송부하여 14日이상 一般人에게 供覽시켜야 한다.

④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 基本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條 (基本計劃의 내용)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新港灣建設의 基本方向
2. 建設計劃의 개요
3. 中·長期 開發計劃
4. 土地利用計劃과 基盤施設計劃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3. 환경부 소관 법률

#### (1) 환경정책기본법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기본법 제8조는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에 관하여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한다고 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li> <li>·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5는 개발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를 규정하고 있음</li> <li>·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은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인바, 현행 법제도는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조화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함</li> <li>·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정합성 확보방안 마련</li> <li>·계획단계에서의 환경성평가제도인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정합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조화 구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계획법제와 환경계획법제의 정비</li> <li>·개발관련부서와 환경부서간의 효율적협 의 시스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위 개별법령의 정비</li> <li>·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 확보</li> </ul>	중장기 과제	
상위 환경계획과 하위	·국가환경종합계획(제12조), 시·	·상위의 환경계획과 하위	하위 환경계획	·각 환경계획들이	2006년	

환경계획의 정합성	도환경보전계획(제14조의3), 시·군·구환경보전계획(제14조의4) 간의 정합성 확보방안 마련	의 환경계획 간에 규율내용, 시행시기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 계획에 대한 정합성 확보 요청됨	에 대한 상위 환경계획의 규범력 확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대상 확대(제25조)	·시행령에 대상행정계획 확대 추가 ·법령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강구 -동법 제2장 제4절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검토대상을 넓히고 나아가 법령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하에서는 그 검토대상이 협소하여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수단으로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들을 체계적 분석·분류 ·사업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연계성 고려	·동법 시행령의 정비	2006년	2005년 5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법률 통과(사전환경성검토제도 부분 개정)
개별법령상의 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중복방지	·개별법령상의 환경성검토규정들을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로 포섭	·개별법령을 근거로 행해지는 환경성검토는 기본적으로 당해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해짐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중복될 우려 있음	·환경정책기본법과 관련개별법령의 정비		2006년	
갈등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제29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	·오늘날은 환경분야의 갈등이 주요한 사회적 갈등	·환경갈등의 원인분석		2006년	

보완	<p>정만을 두고 있음</p> <p>·환경정책기본법이 갈등 및 분쟁 해결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청됨</p>	<p>으로 부각되고 있음</p> <p>·참여정부가 선정한 24개 사회적 갈등 현안 중 7개가 환경갈등임</p> <p>·환경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틀을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p>	<p>·타 법령과의 관계 설정</p>		
----	---	--	----------------------	--	--

※참조조문

국토기본법

제8조(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5(개발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환경계획 및 시·군·구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 한다)과 당해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12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30]

제14조의3(시·도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시·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도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환경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시·도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2.12.30>

③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시·도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제14조의4(시·군·구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중기계획 및 시·도환경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군·구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시·군·구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군·구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제25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③협의기관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29조(분쟁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 통합영향평가법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연계	·전략환경평가 도입방안 검토 ·양 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법제정비방안 검토	·양 제도는 성질상 동일한 틀 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임에도 별개의 제도인 것처럼 운영 ·환경영향평가는 통합영향평가법을 근거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시행 ·양 제도가 서로 연계되어 통합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운영상의 비효율성 제거할 필요 있음	·환경정책기본법 및 통합영향평가법 정비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및 통합 ·운영시스템의 정비 및 통합	중장기과제	2005년 5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법률 통과
교통 또는 인구영향평가와의 연계	·환경,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의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함	·규제철폐라는 측면에서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통합영향평가법의 제정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던 환경영향평가제도, 교통영향평가제도, 재해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통합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것임	·통합영향평가법의 정비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각각의 영향평가 관련 지침에 대한 통합작업 필요	2006년	

		·그러나 법률의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제도의 실질적 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실효성 확보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법적 구속력 부여	·그 동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실태를 보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가 있었음			2006년	
승인기관과 협의기관 간의 역할분담의 명확화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현재 승인기관과 협의기관 간의 역할분담이 모호함		객관적인 지침 마련 필요	2006년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제7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제9조)과 관련하여서는 입지선정위원회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부지확보와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인 주민참가, 이해당사자참가 등의 내용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 추가	·절차의 적정성 ·참여와 협력의 기회보장			2006년	환경부 폐기물 관련 법 제정비방안 마련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제9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절차의 적정성 및 참여와 협력의 기회보장을 강화	·주민대표의 대표성 여부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음 ·입지타당성조사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주민들이 공고된 내용을 쉽게 알 수 없음		·주민대표 선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공고방법의 다양화(예컨대, 인터넷을 통한 방법 등)	2006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등(제11의3조)	·주민참가, 이해당사자참가, 비용편익분석 관련 내용 추가	·절차의 적정성 ·참여와 협력의 기회보장			2006년	

※ 참조조문

第7條(廢棄物處理施設 敷地 확보) 第5條 또는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여야 하는 者는 미리 그 施設의 敷地 確保計劃을 당해 産業團地등의 開發·設置·增設 計劃에 포함시키는 등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8>

第9條(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選定) ①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을 設置·운영하고자 하는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하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이라 한다)은 立地選定計劃을 결정·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4.2.9>

1.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2.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로서 당해 共同住宅團地 또는 宅地외의 地域에서 발생하는 廢棄物을 搬入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量이 당해 廢棄物處理施設 處理能力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立地選定計劃에는 다음 각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999.2.8>

1. 처리대상 廢棄物의 종류 및 發生量
2.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규모
3. 立地 선정기준

③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立地選定計劃을 公告한 때에는 지체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民代表가 참여하는 立地選定委員會를 設置하여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④立地選定委員會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立地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大統領令이 정하는 專門研究機關으로 하여금 立地 候補地에 대한 타당성을 調査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立地選定委員會는 專門研究機關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檢討意見書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9.2.8>

⑤立地選定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안에 거주하는 世帶主의 過半數가 그 地域안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立地選定計劃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를 원하는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立地妥當性調査를 그 地域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9.2.8>

⑥立地選定委員會는 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立地에 대한 타당성 調査의 調査過程 및 결과를 해당 地域의 住民에게 公開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公開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⑦立地選定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立地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하고자 하는 立地가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境界로부터 당해 施設 敷地의 境界까지의 距離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立地를 선정하기 전에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으로 하여금 立地候補地에 대한 妥當性調査結果와 당해 敷地를 立地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유등에 관한 資料를 첨부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인접 地方自治團體의 長과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環境紛爭調整法에 의한 中央環境紛爭調整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8, 1999.2.8>

⑧立地選定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8>

第11條의3(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의 승인등)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를 告示한 경우에는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을 수립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당해 計劃을 公告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4) 하수도법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제5조의2)	·주민 등의 의견수렴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계획수립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협력의 기회 보장			2006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제6조) 마을하수도의 설치(제6조의2)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둘 필요가 있음	·절차의 적정성을 유지 ·이해관계인들에게 참여와 협력의 기회를 보장			2006년	

※ 참조조문

제5조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하수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도시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하수도가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관리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4의2.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계획 및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의3.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된 오니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환경부장관이 제4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20년을 단위로 하여야 하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환경부장관은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 (인가등) ①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에 직접 연결된 하수관거 및 펌프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

장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마을하수도의 설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5조의2제3항·제4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과 협의한 때에는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도지사과 협의하여야 한다.

#### 4. 산업자원부 소관 법률

##### (1) 전원개발촉진법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실시계획 승인의 기준 (제5조)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 -국토기본법 및 국토계획이 용법상의 국토계획을 고려 -환경정책기본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상의 환경계획을 고려	·관련 계획 상호간의 조화 ·자의적 수립 및 승인의 방지			중장기과제	
전원개발사업실시 계획 승인의 철회 (제5조)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장관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을 제5조에 신설	·사정변경의 원칙 도입 ·전원사업자에 대한 특례지양			중장기과제	
조문제목 변경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인허가등의 의제”	·표현상의 오류를 시정 ·오해의 여지를 축소			2006년	
주민등의 의견청취 (제5조의2) (영 제16조의2)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의 구체화 ·공청회의 개최 및 주민등의 의견 등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등을 추가	·시행령에 신문광고(1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14일이상), 통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미흡			2006년	

※ 참조조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①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6.12.30, 2003.12.30>

②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6.12.30, 2003.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소요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2003.12.30>

⑤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6.12.30, 2003.12.30>

제5조의2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전에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
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4.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의 경우

②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의 의견청취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제·협의 또는 처분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8, 2002.12.30, 2003.12.30>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4.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7.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9. 삭제 <2003.12.30>
10.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

방지 지정의 해제

13. 삭제<2000.12.23>

14.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해군기지법 제6조 및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등

15.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지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16.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

18.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감소처분

19.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 사전승인

②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6.12.30]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6조의2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거나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도록 하여 주민등이 그 내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시행자

3. 전원설비의 개요

4.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게재의 경우 지번을 포함한다) 및 면적

5.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6. 열람장소

7. 의견제출기간

②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된 주민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6.29]

## 5. 과학기술부 소관 법률

### (1) 원자력법

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조치	정비시기	비고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 관련(제76조)	<p>·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법 및 전기사업법,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개별적인 규정이 흩어져 있음.</p> <p>·한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을 지원하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5.3.31)</p> <p>·방사성폐기물관리와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함</p>	<p>·역할 및 업무분담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p> <p>-과학기술부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처리,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폐기시설 등”) 건설허가권, 폐기시설 등에 대한 검사권, 안전규제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음. 또한 과학기술부 산하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음.</p> <p>-산업자원부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관련된 부지선정절차, 지원사업, 법령정비, 부지조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또한 전기사업법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 지정권, 방사성폐기</p>			2006년	

		물관리대책 수립·수행권,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시행계획 승인권 등을 보유하고 있음				
--	--	--	--	--	--	--

※ 참조조문

원자력법

제76조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 ①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폐기시설등"이라 한다)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9·2·8] [[시행일 99·8·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안전성분석보고서·안전관리규정·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기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9·2·8] [[시행일 99·8·9]]

③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3조제3호중 "제17조"는 "제79조"로 본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지원계획의 수립절차·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유치지역의 선정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 선정계획, 부지조사 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지역의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써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금의 규모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첨부>

공공개발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방안  
(1차 협의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 가. 건설교통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환경부 소관
- 라. 산업자원부 소관
- 마. 과학기술부 소관



가.건설교통부 소관

(1) 국토기본법

관련 조문	정비 내용	검토 의견	비 고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전관련 “법정”계획들을 고려할 책무 부과</li> <li>· 환경종합계획(10년)과 국토종합계획(20년)의 수립주기 일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서 국토 관련 하위계획을 고려할 책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li> <li>- 국토종합계획의 지위를 고려하여 환경계획이 동계획의 수립주기를 따르는 것이 타당</li> </ul>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도 국토종합계획의 우선효 배제</li> <li>· 국토계획의 우월적 지위를 배제하고 환경계획과 대등관계로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에 관한 모든 계획에 우선하는 최상위 계획이므로 환경계획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며 동계획의 부문별계획으로 보는 것이 타당</li> </ul>	
제16조 및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계획과 부문별계획 수립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li> </ul>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장관에 계획조정 요청권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불가</li> </ul>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청회 주제와 개최를 널리 알려 많은 이해관계인 참여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제4조에 공청회 개최 관련사항을 주요일간지에 1회이상 공고하고 국토종합계획에 대해 서면 및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제출토록 하고 있음(제도운영시 2회이상 공고 가능)</li> </ul>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조문	정비 내용	검토 의견	비 고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규정에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자연환경보전계획을 고려할 구체적 책무를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곤란</li> <li>- 동 조항에서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을 이미 제시함</li> <li>- 기본원칙에서 다른 개별법령상의 보전규정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li> </ul>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시·도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하여는 예외를 두도록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곤란</li> <li>- 국토계획법은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음</li> <li>- 동 조항은 도시계획의 일반적 지위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타 법령의 특정 용도지역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곤란</li> </ul>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주민의견 및 공람절차 개선·강화(인터넷 게재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수용</li> <li>-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추진중(국무회의 상정 예정)</li> </ul>	
제56조, 제5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행위허가 내용에 건축허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곤란</li> <li>-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는 목적이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행위허가시 상위계획과의 부합여부, 주변지역과의 관계상·하수도의 기반시설 설치여부를 확인</li> <li>·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에는 적합할 지라도 기반시설 설치, 위해방지, 경관에 대한 조치를 전제로 조건부 허가 가능</li> </ul> </li> <li>- 다만, 건축허가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하여 행정적인 편의를 도모함</li> </ul>	

관련조문	정비 내용	검토 의견	비 고
제71조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시 주민 뿐만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참여 보장	○ 기반영 -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시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의 의견개진이 가능	
제76조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기준 재정립	○ 기반영 - 현재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 용도 분류 체계에 맞추어 건축행위를 규정 -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은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반영한 앞으로도 여건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 및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임	
	·청사진적 도시기본계획을 전략중심의 정책 계획으로 전환	○기반영 - 도시기본계획은 시·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며,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해 도식의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한 “시가화예정용지” 표시방법을 도면표시(구체적 위치 표시)에서 점으로 표시하고, 개발단계별 수요량만 나타내도록 개선조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간의 유연한	○ 수용근란	

관련조문	정비 내용	검토 의견	비 고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행정목표를 설정하는 장기적, 추상적 계획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내적 효력만 가지고 있으며,</li> <li>-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등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집행계획으로서</li> <li>-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간에는 지향하는 목표와 효과가 다르므로 삼각형 패러다임 전환은 계획 위계상 수용곤란</li> </ul>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수렴 절차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수용</li> <li>-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개최하는 공청회는 지역주민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일간신문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한편, 해당 시·군에서 인터넷 홍보, 지역방송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li> <li>- 공청회시 제시된 의견은 이후 의회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이어지는 절차에 그 타당성 여부가 검증되어 지며,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에서 논의하는 주민의사가 도시기본계획에의 반영되었는지가 집중 논의되는 등 주민의견의 수렴절차가 마련되어 있음</li> </ul>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관련조문	정비 내용	검토 의견	비 고
제3조 (특례범위의 한정)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례(제3조)를 열거적으로 규정	- 제3조는 선언적 규정이며, 제3장 및 제4장에서 구체적인 적용특례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13조 (관련인허가등의 의 제효 폐지 규정)	·기업도시 개발계획이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의제의 취소 또는 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	- 개발계획 변경 등의 경우 새로이 변경승인 절차를 통하여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침	
제14조 (피수용자의 권익보호와 갈등해소)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도시는 2~3백만평 이상 대규모사업이고, 특정산업 등의 유치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환지수법에 의하면, 사업기간 과다, 소규모 필지분할로 특정산업 유치곤란, 개발이익 사유화 등의 문제가 있어 곤란</li> <li>- 법에서 피수용자의 권익과 생활보호를 위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li> <li>-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개발행위허가, 보전용지의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관리하는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7.29)</li> </ul>	
제13조 (중복의제의 배제와 재정비)	·의제효의 축소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제효(중복의제 포함)는 관련 인허가 부처와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함</li> <li>- 사업의 특성, 단계에 따라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은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시차를 두어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의제효가 필요</li> </ul>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 불필요한 정치·사회적 이슈(issue)화 우려가 있어 현시점에서 동법의 개정추진은 곤란

※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어 심리중이며, 수도분할반대범국민운동본부 등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저지를 위하여 활발히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임

	정비 내용	검토 의견	비 고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법정계획들에 우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우선적 효력을 완화시킴</li> <li>·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에 관하여는 우선 효력을 배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환경도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참여정부의 핵심국책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사업이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각종계획을 다른 계획에 우선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li> <li>-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계획을 우선 적용한다고 해서 환경관련 법률에 규정된 취지와 내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법 제 62에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방향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계획수립시 환경관련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예정임</li> <li>- 법 제20조제9항에서 개발계획수립 전까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완료하고, 법 제21조제 4항에서는 실시계획 내용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li> <li>- 기존 환경관련계획을 모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기존 환경관련계획을 수정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일정에 차질 발생 우려</li> </ul>	

	정비 내용	검토 의견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시까지 시·도 환경보전계획이 미수립되어 관련계획의 반영이 어려우므로 환경부분에 대한 우선효력 배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li> </ul>	
제20조	· 법정 환경계획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법정환경계획으로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이 있으나 국가 환경종합계획(환경부, 05.11예정)수립 후 시·도환경보전계획 등의 수립이 가능하므로 개발계획 수립시(06.12예정) 법정환경계획을 반영한 개발계획수립이 어려움</li> <li>- 개발계획에는 경관계획, 환경보전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 결과와 기본계획용역의 환경, 경관분야 전략연구 과제 결과를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개발계획 수립</li> </ul>	

(5) 도시개발법

관련조문	정비 내용	검토 의견	비 고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단위계획과 실시계획간 상호 충돌이 발생되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체계적 적합성을 고려하여 재정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개발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을 실현하는 사업법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li> <li>-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고, 실시계획인가고시가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음(제9조, 제18조)</li> <li>-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에도 건축물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대로 건축되게 하기 위하여 사업완료후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어도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은 존치하여 구역을 관리(법 제0조제3항 참조)</li> <li>- 따라서 도시개발법이 국토계획법과 충돌 발생하는 것이 아님</li> </ul>	
제20조 시행령 제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참여 유도 및 신탁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사업시행방식 다양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신탁방식으로 다양화되어 있으며 사업별로 현지여건, 사업성과 자본, 시행능력 등에 따라 민간 또는 공공이 참여하여 시행토록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정비 불필요(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3항제2호·제16조, 법 제12조제4항 참조)</li> <li>- 민간 참여는 활성화되었으나, 신탁방식은 신탁회사의 자금 사정 등 현실적인 문제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li> </ul>	

(6) 철도건설법

관련 조문	정비 내용	검토 의견	비 고
제 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시 도시계획관련 인허가 의제규정 부존재로 역세권개발에 장애 발생</li> <li>· 역세권개발구역과 도시개발구역 또는 택지개발구역과의 관계 정립필요 중 장기 과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건설법은 역세권개발사업의 절차를 도시개발 관련 기본법인 '도시개발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였기 때문에(법 제23조제2항), 도시계획관련 인허가 의제규정 및 역세권개발 사업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았음</li> <li>- 역세권개발구역은 관련법령상(시행령 제 23조) 도시개발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계획 인가를 얻은 지역으로, 도시개발구역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와 동일함</li> </ul>	
제 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세권개발사업 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 정비 필요 (중장기 과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이므로, 철도건설법에서 도시개발관련 법률을 배제하는 별도의 역세권 개발규정을 둘 경우 오히려 사업추진이 곤란해지고, 도시개발관련 법률이 이원화되는 문제가 예상됨</li> </ul>	

(7) 하천법

관련조문	정비 내용	검토 의견	비 고
제3조 (하천의 귀속)	· 하천을 “국유로 한다”는 현행 규정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하천수)은 자연현상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토지가 제공되어 형성된 물길과 유수이고, 공동체를 이루는 인간 등 모든 생물의 생명수로서 공공자원의 성격이 강하여, 사익과 공익간 충돌을 근원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천편입 토지의 국유제를 도입하여 공익을 실현하고 있어, 공공자원의 성격 경시와 공익실현 한계를 벗어나는 규정보완은 적절치 못함</li> <li>* 국가재정상 실행이 어려웠던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여, 그간의 소유자들의 불만들을 해결하고 있음</li> <li>- 공익실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천편입토지의 국유제를 폐지하고,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제 도입 등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 해소 노력 등 이의 제도화를 위한 하천법 개정을 추진중(금년 정기국회 상정 예정)</li> </ul>	
제3조 (하천의 귀속)	· 하천 안의 “유수”를 제외한다는 주의규정을 제2항으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에서 흐르고 있는 유수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공공자원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하천 유수에 대한 개인의 소유(지배)권 문제를 규정하려는 것은 사익과 사회구성원 다수 등 공익과의 충돌 등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적절치 못함</li> <li>- 유수는 하천에서 흐르고 있는 물이므로 하천에서 취수이전 유수에 대해 소유 개념보다 어느 시점에 취수하여 이용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li> </ul>	

관련조문	정비 내용	검토 의견	비 고
		<p>것이 타당하며, 현재 하천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유수를 취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유수사용허가로서 유수의 이용권리 (수리권) 를 부여하고 있음</p> <p>- 따라서 하천관리청은 유수사용허가라는 특허행위를 통하여 하천의 공공성(공익)에 적합하게 물을 배분하고 있고, 이러한 배분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초임</p>	
<p>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p>	<p>· 민법상의 전통적인 유수이용권과의 관계 재정립 (제5조제2항 신설)</p>	<p>- 민법상 유수이용권에 대해 하천법상의 유수이용권과의 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나, 그 내용 및 방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p> <p>- 현재 민법상 관행수리권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위하여 관례상 인정되고 있는 농업용수 등 관행수리권 등에 대해 건교부장관에게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정기국회 상정예정), 개정안이 공포되어 기존 관행수리권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면, 이를 근거로 전통적인 수리권과의 관계 재정립 방향을 정할 수 있음</p> <p>- 물 부족 해결이라는 대명제하에서 각국은 허가수리권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 있고, 당초 취수목적이 사라진 관행수리권에 까지 계속대를 이어 무한정 인정하는 것은 하천법상 허가수리권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물 부족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당초 취수목적 및 사용을 유지하고 있는 관행수리권에 한정적으로 그 권리를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유수사용 평가제 도입 등)</p>	

관련조문	정비 내용	검토 의견	비 고
제21조 (하천유수의 사용·관리)	· 하천유수사용자의 사용한계를 설정하고 그 사용방법을 역내 이용자와 협의하는 절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수사용자의 사용한계를 설정하는 문제는 일면 타당하나, 사용방법 까지 확대하여 역내 이용자와 협의하는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사용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li> <li>- 하천법시행규칙 제19조 규정 및 별지 제 24호서식에 따라 하천유수 사용허가시 하천유수의 사용한계가 설정되어 있으며, 신규 허가로 인하여 기득 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규 허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손실에 대하여 신규허가를 받은 자가 보상을 하도록 하는 등 역내 이용자와 이해관계 협의절차를 두고 있고, 유수사용의 분쟁에 대하여는 별도로 하천관리위원회에 그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li> <li>- 하천유수에 관한 허가권(학문상 특허)은 하천법 제 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공공이익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며, 이미 제도화된 하천유수사용허가에 따른 손실 보상 또는 분쟁조정신청절차이외에 물의 분배내용(목적 및 용도 등) 등 허가권자가 정책적 판단을 하여야 하는 분야까지 확대하여 역내 이용자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유수사용자가 유수를 이용하는 권리의 허용범위 한계를 과도하게 넘는 부적절한 보호조치임</li> </ul>	



(8)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관련조문	정비 내용	검토 의견	비 고
<p>제4조 (댐건설장 기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규정 신설</li> <li>· 전원개발담 제외 조항(제4조제3항) 삭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성덕댐, 감천댐에서 「지역협의회」를 시범운영 중이므로 앞으로 계획수립단계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참여를 통한 갈등요인을 제거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댐 건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댐건설 후보지에 대한 보상투기 등 사회적 문제 등을 살펴 절차 규정 신설</li> <li>- 현재 댐법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건교부장관이 댐건설장기계획 수립시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이때 시·도지사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시·군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li> <li>- 전원개발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li> <li>-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의 규정에서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서 전원개발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생략하는 것이 타당함</li> </ul>	

관련조문	정비 내용	검토 의견	비 고
제5조 (댐건설예정 지역의 지정 등)		- 댐건설예정지제도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불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개정시 폐지 예정	
제7조 (기본계획)	·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기본계획 을 수립시 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 등 주민협력절차 추가	- 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참여를 통한 갈등요인을 제거하 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댐건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 하기 위하여 댐건설 후보지에 대한 보상투기 등 사회적 문제와 환 경영향평가법 등을 살펴 절차 규정 추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9조 규정에 따라 댐별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기본계획 고시 전에 공청회 또는 주민의 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댐 건설제도를 개선하여 댐건설기본계획 수립시 주민대표, 지자체,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제8조 (실시계획)		- 실시계획은 기본계획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기본계획상의 주민협력 절차로 충분하고 별도로 실시계획에 주민협력 절차를 규정할 필요	

관련조문	정비 내용	검토 의견	비 고
		<p>는 없음</p>	
<p>제16조 (댐관리의 기본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조에 “저수이용권”을 별도로 함으로 규정</li> <li>· 현행 댐사용권(제 24조)과 저수이용권 개념을 구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수이용권 신설은 현행 하천법과 배치되므로 댐사용권과 별도로 댐법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li> <li>- 댐에 저수된 물은 생·공용수공급, 농업용수 공급, 발전, 홍수조절 등 이미 그 특정용도에 따라 저수된 물을 이용하도록 용수배분 계획이 되어 있음</li> <li>- 댐건설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인정하여 주는 “댐사용권”은 생·공용수공급 및 발전을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되고 있는 권리임</li> <li>- 댐에 저수된 물은 이미 그 특정용도대로 이용하도록 배분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저수이용권 개념을 신설하는 것은 하천의 물이 풍부했던 과거에나 가능한 것이지 현대와 같은 물부족시대에는 전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 하천법이 채택하고 있는 “허가수리권” 제도와도 배치되는 조항으로 귀속자·범위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li> </ul>	
<p>제29조 (댐사용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댐사용권을 “물권으로 본다”는 구절을 삭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댐사용권은 댐건설비용을 부담한 자에 대하여 주어진 권리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물권으로 보호되어야 함</li> </ul>	

관련조문	정비 내용	검토 의견	비 고
성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 하천상태에서 흐르던 하천수에 적용되는 민법상의 수리권과는 달리 댐건설로 인하여 취수가 가능해진 물에 대하여 댐건설비를 부담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인 댐사용권은 배타적인 권리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li> <li>-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댐사용권자는 댐건설 비용 회수를 위해 댐사용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자금유통을 꾀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지자체, 산업단지 등에 생·공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배타적 권리인 물권으로 보호되어야 함</li> <li>- 따라서, 댐법상의 댐사용권은 물권으로 보호하더라도 현재 현실성을 상실한 민법상의 수리권과는 구분이 가능하므로 양 법률간의 충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li> </ul>	
제43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 수립시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추가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댐법시행령 제42조에서 이미 주민의견 수렴 절차 규정</li> <li>- 댐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 등으로 구성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협의·의결하므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별도 절차를 추가할 필요가 없음</li> </ul>	
제46조 (다른법률 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댐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적용 법률에 “민법”을 추가</li> <li>· 제46조의 조문 제목을 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법을 댐법에 추가하는 것은 수리권체계에 혼란 야기</li> <li>- 민법상 수리권은 허가를 받고 물을 사용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현실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하천법</li> </ul>	

관련조문	정비 내용	검토 의견	비 고
		<p>과도 정면 배치되며,</p> <p>- 오히려 민법상 수리권을 댐법에 추가함으로써 양 법률간의 충돌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수리권체계의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댐법에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p>	

(9) 골재채취법

관련조문	정비 내용	검토 의견	비 고
<p>제21조 (지도·감독) 제26조 (골재채취 등)</p>	<p>· 채취 허가에 따른 골재채취 작업 유도를 위한 지도·감독체계를 실효화</p>	<p>- 법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채취량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p>- 골재채취 및 반출선박에 대한 지도·관리측면에서 전자식자동등록시스템 등의 장치가 필요시는 선박관련법령에서 의무를 부여할 사항임</p> <p>- 건교부에서 직접 허가하는 배타적 경제수역내 채취허가시는 선박위치추적장치(VMS 또는 AIS) 장착후 운항토록 하고 있음</p>	
<p>영 제27조 (골재채취허가의 제한)</p>	<p>· 채취허가 제한구역의 대상과 거리 범위에 대한 원칙과 합리적 근거 제시</p>	<p>- 골재채취 제한 범위를 규정한 법시행령 제 27조의 규정은 각 영역에서 대상 및 거리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현재의 규정이 합리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p> <p>- 골재채취의 제한은 해당 토지, 수역(해역) 등의 제반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토지 등 범위로 개발 제한하는 것으로서 각종 법령에서 토지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보호구역 등의 범위나 면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목적, 시기,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되거나 조정되고 있는 실정임</p> <p>- 골재채취는 개발행위로 이에 대한 제한구역 및 수역 등에 대한 범위를 골재채취법에 모두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다만 골재채취를 제한할 공익이 있다면 이를 그 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임</p>	

관련조문	정비 내용	검토 의견	비 고
제34조 (골재채취 단지의 직 권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재채취 단지를 건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더라도 해당해역 관할 행정청 및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지 지정절차 정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재채취단지 지정 절차는 지정신청, 환경검토, 관계기관협의 등을 거쳐 지정하면서 환경성 검토시 주민이나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함</li> <li>-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은 골재수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지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시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들을 심의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li> </ul>	
제34조 (골재채취구 역의 지정) (제22 조제 항) (영 제33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취 “단지”의 개념과 범위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재채취단지지정신청시는 위치 면적, 채취물량을 포함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채취량은 그 채취구역의 채취면적과 심도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임</li> <li>- 단지의 규모를 정할 때 육지부분은 각 지번마다 면적이 지적법 등에 의한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나 바다부분은 이에 대한 공부가 없어 광업법상 광구단위(경도1분,위도1분)로 지정하도록 한 것으로 운영상 혼란이 예상 되지 않음</li> <li>- 골재채취단지 지정은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는 곳을 집중개발하도록 한 것으로 단지가 반드시 복수의 구역으로 이뤄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li> </ul>	
제30조 (골재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재채취법 제 39조 채취구역 변경 등 명령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재채취허가로 인해 수질오염 기타 재해로 공중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채취구역을 관리하고 피해가 발생시 당해 채취</li> </ul>	

관련조문	정비 내용	검토 의견	비 고
구역의 변경등의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 지자체장이나 해수부장관이 관할지역 지자체장에게 해사채취 구역 변경, 취소 및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추가</li> </ul>	<p>구역에서 가장 피해가 우려될 것이므로 허가권자가 조치하도록 한 것이 바람직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권자가 아닌 인근 지자체나 해수부장관이 객관적인 관련 자료없이 허가행위에 대한 채취구역변경이나 중지를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허가권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새로운 지역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li> <li>-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공유수면의 관리청이 연안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현재 연안구역에서는 당해 지자체에서 지역주민, 환경단체, 관련 수산단체의 의견을 받아 들어 휴식년제, 채취중단 등으로 채취가 이루지는 지역이 없음</li> <li>- 다만, 해수부장관이 관리청인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골재채취로 수질 오염 등 기타 재해로 채취구역 변경, 중지를 할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공유수면 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위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li> </ul>	
제34조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재채취 단지의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관계기관을 포함하도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재채취단지 지정해제 절차는 직권 또는 지정해제신청, 해제지정신청의 사유 등 검토, 관계기관협의 등을 거쳐 지정해제 함</li> <li>- 지정해제는 골재수급계획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건교부장관이 골재수급계획 추진상황, 가격동향, 해당 지역 관리 행정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li> </ul>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정비사항	정비 내용	검토 의견	비 고
<p>실시계획의 폐지(산업법 제 17조~1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단지별 실시계획들에 대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획의 변경외에 계획에 대한 승인철회(폐지)제도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불가</li> <li>-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경과시 자동해제되며,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일부지역의 해제등도 가능하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현 제도상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행정목적 충족가능</li> <li>-또한 본 제도 도입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승인을 철회할 경우 공공사업 추진애로발생</li> </ul>	
<p>인·허가의 효과의 해제(제 2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관등 행정관청이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철회한 경우 인·허가의 제(제21조제1항)의 효과도 함께 해제</li> <li>제21조에 제4항을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불가</li> <li>-산업단지 해제시 의제조항도 자동 해제되며,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는 의제조항도 협의를 통해 변경</li> </ul>	
<p>협의기준을 구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협의기준"의 개념과 골격을 구체화, 통일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중장기과제)</li> <li>-현행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 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검토하여 추진</li> </ul>	
<p>산업단지의 지정·고시의 우선효 제한(제 2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3조제1항본문 다음에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연안관리법상의 연안관리계획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법정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불가(중장기과제)</li> <li>-현행법은 단지안에서 공유수면매립계획또는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것은 해당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을 경우 의제처리됨에 따른 적용의 특례사항으로 본 조문의 연안관리등의 의제사항이 없으며</li> <li>-자연환경보전법 제7조나 연안관리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협의 또는 법취지에 맞는계획을 수립·변경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지정제한은 곤란</li> </ul>	

정비사항	정비 내용	검토 의견	비 고
녹지조성방식에 등에 대한 세부 기준 제시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지의 상태, 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권자가 행하는 녹지조성 유예조건, 녹지조성면제조건, 지방환경청등 환경영향평가기관과의 관계등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중장기 과제)</li> <li>-현행도 개발지침에 녹지에 대한 기준이나 특례사항이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의 추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추진</li> </ul>	
용어의 재정비· 통일 (제2 조6호,령제4조의4,령제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집법상의 폐기물처리시설용도와 물류시설용도는 산업시설구역이나 산업법상 폐기물처리시설과 유통시설은 산업시설용지에서 제외</li> <li>· 산집법상 녹지와 공공시설구역을 별개로 인식하나 산업법상 녹지를 공공시설에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용불가</li> <li>-산입법상의 시설용도 구분은 분양가에 영향을 미침</li> <li>유통시설엔 백화점이나 택배영업소등도 포함되는데 이들시설을 산업시설에 포함하여 조성원가로 분양함은 불가하며, 폐기물처리시설도 유상처리하므로 원가분양은 곤란</li> <li>-산집법상 공공시설구역은 동사무소, 우체국등이 들어가는 별도의 시설구역을 의미하나 산입법상 공공시설이라는 녹지는 관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시설범위를 정한 것으로 개념이 다름</li> <li>○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요구하였으나 물류시설용지는 지원시설 용지에 두되 공동집하장, 화물터미널등은 조성원가 분양토록 지침화하는 것으로완료('05.5)</li> <li>※산업단지 개발의 기본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공공시설로 녹지도 포함되며,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도시지역으로 관리되고 토지에 관한 관리는 국계법 및 건축법등에 통합관리되므로 공장설립과관리가 주 목적인 산집법에서 별도로 용도규제함은 중복규제이면서 혼선이 유발되므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li> </ul>	

나. 해양수산부 소관

(1) 연안관리법

정비사항	정비요지	검토의견	비고
연안육역의 범위 조정 (제2조의 3호)	·해역과 육역의 자원 및 공간을 통합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하여 연안육역의 범위를 해양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설정	○연안육역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통합계획에서 정함 ○통합계획에서 연안육역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지역계획에서 법상 연안육역의 범위 내에서 해안도로·철도·산세·수계·시설물 등 지형의 특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육역범위를 정하고 있음 ○연안육역의 확대는 현재 정하고 있는 범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단서조항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연안육역을 500m로 정한 사유>

○생활 오·폐수의 自淨거리는 일반적으로 500m 정도임

- 하천보호를 위하여 500m이내 하천구역 설정(하천법시행령)
- 상수원보호를 위해 하천에서 500m내에서는 대형음식점, 러브호텔 등 신축시 정화조설치 의무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조례지침)

○현재 법령중 거리기준에 의하여 구획범위를 정한 법령(35개 87개 구획)의 일반적인 기준이 1km이내로, 500m로 결정

- 100m이내 20개(23.0%), 1km이내 35개(40.2%), 1km이상 32개(36.8%)

정비사항	정비요지	검토의견	비고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절차 체계화 (제5조)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절차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법인, 기업, 사익단체, 민간단체, 민간인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반영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전 연안에 대한 계획으로 한번에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수립함	

<p><b>&lt;연안통합계획 수립 절차&gt;</b></p> <p>○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통합관리계획안을 작성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행중이거나 구상중인 연안의 보전·이용·개발계획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함</li> </ul> <p>○계획안이 마련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라 함은 아래의 자를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개발업무 또는 국토이용계획과 관계가 있는 자</li> <li>· 환경관련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자</li> <li>·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연안관리 관련학과의 전임강사이상인 자</li> <li>· 해양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li> </ul> </li> </ul> <p>○협의된 계획안은 해양수산부에 설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위원은 재정경제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3급이상 공무원과 연안관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함</li> </ul> <p>○심의를 받은 계획안은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내용(법 제6조제1항 각호)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계획의 전체내용을, 시·도지사에게는 계획 중 당해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보함</p> <p>○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인이 20일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p>
---

정비사항	정비요지	검토의견	비고
통합계획의 수립주기 명시	·통합계획의 수립주기를 이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	○계획수립주기를 정하는 것이 필요	
계획의 폐지 (제10조) (제15조)	·다음의 계획들에 대하여 변경이외에 폐지” 제도를 도입 -연안통합관리계획(제5조) -연안관리지역계획(제8조) -연안정비계획(제13조)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연안의 보전이용개발에 관한 바람직한 모습을 담은 계획으로서 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 관련자간에 합의하여 수립한 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연안이용행위를 할 때에는 그 계획을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연안에서의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일종의 「계획에 의한 관리(Planning Control)」로서 행정법상 일종의 「구속적계획(拘束的計劃)」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공유수면매립면허 등과 특정지역기간에 미치는 계획이 아니므로 전체계획을 폐지하는 경우가 없음	

정비사항	정비요지	검토의견	비고
승인의 철회 (제8조제4항) (제17조제2항)	·다음의 계획들에 대하여 공익상 사정변경등으로 인한 장관에 의한 승인의 “철회” 제도를 도입 -연안관리지역계획(제8조제4항) -연안정비계획(제17조제2항)	○연안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며, ○또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승인함 ○연안관리지역계획은 관할 연안관리의 정책의 방향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전체내용을 철회하기는 곤란 ※ 최근, 대통령소속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승인제도 폐지 의견을 제시	
인·허가 의제 효과의 해제 (제18조)	·장관이 승인을 철회한 경우에 인·허가 의제(제18조)의 효과도 함께 해제 ·제18조에 제3항을 신설	○상기 ‘승인의 철회’와 연계하여 검토	
이행평가를 위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 정한 정책사항의 이행정도를 평가하고, 자연환경변화이용특성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차보고서 작성	○연안관리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함	

정비사항	정비요지	검토의견	비고
연안용도구역 지정	·연안해역을 국가 주권이 미치는 국토공간으로 인식하고 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안육역 및 해역의 용도구역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안통합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안관리법의 당초 제정안에는 연안용도지역제를 정하였으나, 관계부처 협의시 건교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를 삭제하였음</li> <li>○법 운용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연안통합관리의 당초 법 제정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연안용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함</li> </ul>	
다른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판단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책, 계획, 사업에 대한 변경요청 권한 강화	○관련계획 및 용도구역 지정의 변경요청 권한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검증절차와 방법 설정이 필요함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과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검토>**

○연안육역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각종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이 지정(112개 법률 298개)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연안통합관리 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변경토록 하였으며,

○연안해역에는 자연환경보전지구·해상공원 등 환경보전지역만이 지정되어 있어,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시 동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수립될 것인 바, 연안해역중 환경보전관련 계획 또는 용도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는 연안해역의 경우에도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음

○다만, 연안의 환경보전이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연안에서 수립된 각종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았을 때 연안환경보전이나 지속가능한 개발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연안통합관리계획 또는 연안관리지역계획안에 그 변경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각종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음

정비사항	정비요지	검토의견	비고
명예연안관리인 제도 검토	·개인이 아닌 역량있고 건전한 지역 단체, 대학(연구소)과 실질적인 연안통합관리 실현을 위한 협력강화를 위해 권한의 일부를 위임, 위탁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실효성이 없어 연안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강화 또는 폐지 검토가 필요함	

(2) 공유수면매립법

정비사항	정비요지	검토의견	비고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계적인 매립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기초(수요)조사부문을 법률로 명시해야 할 것임.</li> <li>·수요조사의 내용에 매립 후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토지이용수요계획서(안)’를 작성하도록 하여 실질 매립수요를 파악하도록 함.</li> <li>·매립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지역이해당사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토지이용수요계획서를 공개하여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립면허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를 기본계획반영요청시 제출토록 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이용협의서 첨부)</li> <li>○중앙연안심의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기본기본계획이 의제되는경우에도 중앙연안관리 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유사업법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조)</li> <li>다만, 재해방지 및 긴급복구등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중앙연안심 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li> </ul>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매립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환경생태계변화, 경제성 평가, 인문 사회적 영향에 대한 환경관련 전문가 의견 첨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비방안을 수용함</li> </ul>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가매립수요에 대해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절차를 강화하고 구체적 기준 마련</li> <li>·변경에 대한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의견 수렴 명문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립기본계획수립 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이행토록 함(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조사 등 명문화)</li> </ul>	

정비사항	정비요지	검토의견	비고
면허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립면허와 매립기본계획은 별도의 과정으로 구분하고 매립면허 승인절차 강화</li> <li>·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시도지사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체계적 의견수렴·반영</li> <li>·토지이용계획서 작성</li> <li>·환경영향평가 후 위치조정, 면적축소, 취소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li> <li>·연안개발사업 및 매립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 누적환경영향평가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매립을 할 수 없도록 함</li> <li>○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립 계획이 없는 경우만 매립토록 함</li> <li>○토지이용계획서 제출은 매립기본계획반영시 제출한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안선을 정비하는 경우’(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에 매립이 가능하다는 조항 삭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비방안을 수용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는 용도별 매립가능면적을 우선적으로 명시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매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li> <li>-예를 들면 매립총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유수면매립예정 총면적의 20%내에서 가능하도록 한다거나 일정용도구역의 면적비율로 승인하는 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무분별한 매립이 성행할 우려가 있음</li> </ul>	

정비사항	정비요지	검토의견	비고
면허의 기준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허의 기준(제11조)과 관련하여 동법 제 4항 제4호는 ‘기타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공익을 위하여 라는 불확정개념이 쓰이고 있고, 또한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li> <li>·면허의 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토지이용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며, 매립 후 ‘토지이용계획서’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2년마다 평가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년마다 평가하는 주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함</li> <li>- 매립목적의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평가할 필요가 있음</li> </ul>	
실시계획인가 (제15조)	<p>&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이용계획서(면허이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를 실시계획인가신청시 제출토록 함으로서 매립목적의 임의 변경을 방지함</li> <li>○실시계획인가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하여 매립기본계획, 매립면허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하여 매립목적 변경을 제한함</li> </ul>	

정비사항	정비요지	검토의견	비고
준공인가 (제17조)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이용계획서(면허이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를 준공인가시 제출토록 함으로서 매립목적의 임의 변경을 방지함</li> <li>○준공인가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하여 매립기본계획, 매립면허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하여 매립목적 변경을 제한함</li> </ul>	
양도·양수의 승계 (제23조)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립면허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합병도 포함)</li> </ul>	
매립목적변경제한의 예외 (제29조)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립목적이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서, 환경단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li> </ul>	
면허의 취소 (제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허의 취소(제 32조) 사유와 관련하여 동조 제4호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와 같은 불확정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li> <li>·면허취소 후 원상복구 명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비방안을 수용함</li> </ul>	
위임·위탁의 철회 (제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처분등의 위임·위탁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li> <li>·제32조(면허의 취소등)에 제2항을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비방안을 수용함</li> </ul>	

정비사항	정비요지	검토의견	비고
<p>의제된 면허의 효력상실 (제34조)</p>	<p>·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의제된 경우에 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등이 정한 기간내에 신청·착수준공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 34조의 면허의 효력상실 규정을 준용 ·제34조(면허의 효력상실)에 제4항을 신설</p>	<p>○정비방안을 수용함</p>	

다.환경부 소관

(1) 환경정책기본법

정비대상 및 내용	검토의견	비고
①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의 정합성 확보방안 마련 (중장기 과제)	○ 관련법령 정비 필요 -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견제하기 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상위 개념으로 국토종합계획을 두는 것은 불합리 - 「국토기본법」 제8조 내용의 개정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거나, 환경관련 계획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가 제외되도록 할 필요	
② 상위 환경계획과 하위 환경계획의 정합성 확보방안 마련 (중장기 과제)	○ 기 추진중인 사항으로 정비대상에서 제외 - '05년 하반기중 국가환경종합계획 확정 이후,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시행 예정	
③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대상 확대	○ 기 추진중인 사항으로 정비대상에서 제외 - 전략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05.5), 현재 시행령 마련중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 확대 추진(48개 → 132개) - 법령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장기과제로 추진 검토	
④ 개별법령상의 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정책기본법상의사전환경성검토제도 중복 방지	○ 기 추진중인 사항으로 정비대상에서 제외 -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법적 근거 단일화를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중	
⑤ 「환경정책기본법」이 갈등분쟁해결의 중심적 역할 수행	○ 국조실에서 기 추진중인 사항으로 정비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제출('05.5)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정비대상 및 내용	검토의견	비 고
<p>①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근거를 단일법으로 통합 (중장기 과제)</p>	<p>○ 단일법으로 통합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 제도의 대상사업, 평가시기·내용·방법의 조정 및 차별화 추진</li> <li>- 주민의견 수렴, 재협의·변경협의 및 사후관리 등 절차의 체계화 추진</li> </ul>	
<p>② 환경, 교통, 인구영향평가의 실질적인 통합 (2006년)</p>	<p>○ 정비대상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평가제도의 목적과 특성(대상사업 종류, 평가항목·방법·절차 등)이 달라 실질적인 통합에는 한계</li> <li>- 이와 관련 감사원 감사가 실시('04.11~'05.4)된 바, 공식적인 감사결과 미통보 상태에서 정비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li> </ul>	
<p>③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실효성 확보 (2006년)</p>	<p>○ 정비대상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통합평가법상 협의전 사전공사,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장치가 마련되어 있음</li> <li>- 다만, 협의내용의 이행방안 강구는 지속적인 추진 필요</li> </ul>	
<p>④ 승인기관과 협의기관간의 역할분담의 명확화 (2006년)</p>	<p>○ 관련법령 정비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내용의 철저한 이행확보 및 협의내용의 중복관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기관의 명확한 역할 정립 필요</li> </ul>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정비대상 및 내용	검토의견	비 고
<p>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시 주민 및 이해당사자 참여에 대한 규정 마련(법 제7조 관련) (2006년)</p>	<p>○정비대상에서 제외                      - 법 제7조의 내용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을 하는 자가 당해 사업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부지확보를 의무화한 규정으로 주민참여 등의 규정을 추가 정비할 사항이 아님</p>	
<p>②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의 대표성 확보방안 및 입지타당성조사계획 공고내용을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2006년)</p>	<p>○관련법령 정비 필요                      -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주민대표 선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 입지타당성조사계획 공고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예 : 인터넷을 통한 방법 등)</p>	
<p>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시 주민·이해당사자 참여 및 비용편익분석 관련 내용 추가 (2006년)</p>	<p>○정비대상에서 제외                      - 현행 법률상 입지선정위원회, 입지타당성조사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이해당사자 참여가 가능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시 비용편익분석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p>	

(4) 하수도법

정비대상 및 내용	검토의견	비고
<p>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등의 의견수렴규정 마련 (2006년)</p>	<p>○ 관련법령 정비 필요                      - 현재 「하수도법」을 개정 추진중에 있는 바, 향후 규제 개혁위원회, 법제처 등과 협의하여 관련규정 반영 추진</p>	
<p>②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설치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규정 마련 (2006년)</p>	<p>○ 정비대상에서 제외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 다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은 불필요</p>	

라. 산업자원부 소관

(1) 전원개발촉진법

정비사항	의견 요지	비 고
<p>1.실시계획 승인기준(제5조) · 실시계획 승인기준을 구체화</p>	<p>○전원개발촉진법·산업입지법·택지개발촉진법 등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인·허가를 받는 법령임 ○행정부처별 소관 사무 및 인·허가를 개별적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으로 검토·심의하고 있음 ○전원개발촉진법에 관계 행정부처에 대한 사무 및 인·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검토하는 것은 비효율적임</p>	
<p>실시계획승인의철회(제5조) ·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장관의 승인 철회규정 신설</p>	<p>○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은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실시계획승인의 변경(사업취소 또는 계획변경)을 보장하고 있음</p>	
<p>조문제목 변경(제6조) · “다른법률과의 관계” → “인·허가등의 의제”</p>	<p>○조문제목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향후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시 반영</p>	
<p>주민등의 의견청취 (제5조의2) · 의견청취 방법 구체화 · 공청회 개최 등 보완 · 제출의견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p>	<p>○전원개발촉진법은 사업자의 형식적 공청회 개최 보다는 주민등이 인터넷을 통해 관련서류를 열람하여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쉽게 제출하여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지향하도록 배려 ○법령 개정당시 제출된 모든 의견에 대한 검토서 제출을 명문화 하였으나 과도한 중복규제라고 하여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삭제</p>	

마. 과학기술부 소관

(1) 원자력법

정비대상 및 내용	검토의견	비고
<p>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개별법령간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성 방지</p>	<p>○ 관련법령 정비 불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부에서는 원자력법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인.허가 및 검사등 안전규제업무를 수행하고</li> <li>-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에 관한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 등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는 현행법체계가 안전규제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li> <li>- 또한, 지난 '97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과기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되면서, 원자력법 제85조의2에서도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은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대한 업무의 중복은 없는 것으로 판단</li> </ul>	

2. 공공개발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방안  
(2차 관계부처 협의안, 2005. 9. 27)

## 차 례

- 1) 추진배경 및 방향
- 2) 법률정비 제안내용

### < 건설교통부 소관 >

- 가. 국토기본법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다. 철도건설법
- 라. 하천법
- 마.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 바. 골재채취법
-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해양수산부 소관 >

- 아. 연안관리법
- 자9. 공유수면매립법

### < 환경부 소관 >

- 차. 환경정책기본법
- 카.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 < 산업자원부 소관 >

- 파. 전원개발촉진법

### < 행정자치부 소관 >

- 하. 지방자치법

## 1) 추진배경 및 방향

### 가. 추진경위

- 우리사회에서 빈발하는 공공갈등의 예방을 위하여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의 하나로 추진
- 기본연구 진행
  - 2004년중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갈등관리정책전문위)의 갈등관리 법·제도개선연구팀에서 ‘공공갈등 관련 법·제도개선지침(2004)’을 마련
  - 2005년중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관련연구기관과 협력 연구
    - 주무연구진(법제연구원)이 협동연구기관 방문, 워크숍을 통해 관련연구진과 토의를 거쳐 개선과제 의견, 정리 반영
- 개선과제 발굴방향
  - 공공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법률 중심으로 갈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법제의 개선 보완방안 도출(보전관련 갈등은 제외)
    - 정책입안과 결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절차 확대
    - 수범자의 입장에 선 법제도 수립과 엄격한 법 집행 등
    -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정보의 공유 확대 등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안 작성
  - 서면의견 검토를 거쳐 연구팀과 의견검토 조정회의 실시(8.17~19)
    - \* 건교부 소관(8.17), 환경·산자·해수부 소관(8.19)
  - 관계부처 의견검토회의 결과를 반영, 협의안 마련 (자료: 별첨)

### 나. 개선과제의 발굴

- 정비제안 법률 : 총 14개 법률
  - 건설교통부 소관 (7개)
    -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법,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2개)
    - 연안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 환경부 소관 (3개)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 산업자원부 소관 (1개): 전원개발촉진법
  - 행정자치부 소관 (1개): 지방자치법
    - ※ 제외(6개법률)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법, 도시개발법, 향만법, 하수도법, 원자력법
    - ※ 추가(1개법률) : 지방자치법(해상경계 설정 관련)

□ 정비 추진전략

- 단기과제 : 개선이 시급하고 사회적인 공감감이 뒷받침 되어 단기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2006년중 개정 추진
- 중·장기과제 :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를 수용할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조치하는 방안

## 2) 제도개선 법률정비 제안내용

### 가. 국토기본법(건설교통부)

□ 현황 및 여건

-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임을 선언(제2조)
  - 국토계획 및 정책수립·집행시 국토의 균형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조성(제4조),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제5조)를 지향
  - 국토계획간의 조화와 일관성 도모(제7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국토종합계획; 제9조)
- 하위국토계획을 통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 도지사의 도종합계획수립(제1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계획수립(제16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업무에 관한 부문별계획수립(제17조)

□ 문제점

- 환경법제와의 조화 미흡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의 이념을 선언하고는 있으나(제8조) 환경법제와의 협조 없이 독자적인 환경고려를 표방하는 구조
  - 국토계획 속에서 환경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계획이 주(主)이고 환경고려가 종(從)이 되는 구조

□ 개선방안

- 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대화 시스템 도모(연계성 강화)
  - 법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의한 국가 환경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 국토종합계획(제7조제3항)의 수립시기와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제12조 제1항)의 수립시기(시기와 중기의 일치)를 일치
- ② 배타적 의미의 입법양식을 완화·시정
  - 법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 “국토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 법 제8조의 단서 조항을 삭제
- ③ 국토계획을 코드화(법령형식)으로 작성
  - 계획도 규범에 해당하고 규범은 특정되어야 하므로 기호(□나 ○등) 체계로 서술된 국토종합계획등을 법전[장, 절, 조, 항, 목] 양식으로 표현하고 통계나 그림 기타 데이터들은 별표나 자료로 처리
  - 국토계획을 법령형식(코드화)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신설
  - \* 다른 국가계획 또는 지방계획등도 이와 같은 체계로 코드(code)화를 유도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설교통부)

### □ 현황 및 여건

- 국토의 개발 및 이용의 근간이 되는 법률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이용을 도모

### □ 문제점

- 자연환경 계획과의 유리
  - 법 제3조제2호는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등을 규정하지만, 이는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과 무관
- 보전계획의 마찰 가능성
  - 법 제4조는 도시계획이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규정하지만 ‘보전’에 관한 계획 중에는 환경계획도 있어 이와 마찰의 소지
-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타당성 인정의 객관적 기준 미흡
  - 법 제28조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타당성 인정의 객관적 기준이 미흡

### □ 개선방안

- 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과의 연동
  - 법 제3조제2호(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등)를 삭제
  - 법 제3조에 제2항을 신설하고 다음과 같이 규정 :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개선 또는 복원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보전에 관한 계획과의 협력
  - 법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과 개발 및 그 제한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 ③ 도시관리계획의 주민의견청취 반영기준 마련
  -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 “그 의견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타당성 평가기준을 충족시키는 때에는...”

#### 다. 철도건설법(건설교통부/ 일반철도과)

##### □ 현황 및 여건

###### ○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등(제23조)

- 역세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시개발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준용

##### □ 문제점

###### ○ 준용되는 법률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법적 안정성 침해, 갈등 소지

##### □ 개선방안

###### ① 법률관계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을 구분하여 규정

-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서는 도시개발법을 준용
-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준용

###### ② 구역·지구가 중첩되는 경우

-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승인권자가 지정

#### 라. 하천법(건설교통부)

##### □ 현황 및 여건

###### ○ 하천의 귀속(제3조)

-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원칙을 선언
- 하천을 흐르는 유수의 소유권에 관하여서는 적극 규정 부재
- 유수의 분배와 이용에 관한 유수사용권(제21조)만 규정

###### ○ 하천유지유량(제20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 고시
- 하천유지유량에 대한 유역의 또는 생태적 수요의 고려 부재

###### ○ 하천 유수의 사용·관리(제21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유수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관리
- 특허에 해당하는 유수사용권을 객관적 규정 없이 배분

##### □ 문제점

###### ○ 유수계통(하드웨어)과 내용물(콘텐츠)의 혼동

- 하천을 흐르는 유수까지 국유로 보는 관행
- 계획 당국이 유수의 분배와 사용을 일방적으로 결정

###### ○ 국가계획 수립시 민법상의 유수사용권을 배제하는 경향

- 물관리기본법(가칭)이 없는 상황에서 하천법상의 특허권 오용
- 민법상 관행수리권을 폐지하려는 입장 유지

##### □ 개선방안

###### ① 민법상의 유수사용권을 하천법에서 수용

- 하천법 제5조에 다음의 제2항을 신설 :

“관리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천 유수의 사용을 허가할 경

우에 민법상 유수사용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유수사용 한계의 설정

- 하천법 제21조에 다음의 제4항을 신설 :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유역 공동체가 사용할 수 있는 유수의 총량을 협의결정할 수 있다.”
- 하천법 제21조에 다음의 제5항을 신설 :  
“민법의 규정에 의한 유수사용권자는 그 사용 실적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마.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건설교통부)**

□ 현황 및 여건

- 댐 건설 예정지역의 지정등(제5조)
  - 댐 건설 예정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
  - 기본계획(제7조) 이전 단계에서 댐 건설 예정지역을 지정
- 댐 사용권의 설정(제24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댐사용권 설정예정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
  - 설정예정자에게 행정적 독점을 부여하는 구조
- 댐 사용권의 성질(제29조)
  - 물권으로 보고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물권" 규정으로 인하여 물에 대한 이용권을 소유권과 동일시
- 댐에서 방류된 물에 대한 물 값 시비 발생
  - 관습상 유수사용권과 실정법상의 저수사용권이 충돌
  - 물 분쟁 사례[소양호 : 수자원공사 vs 춘천시] 빈발

□ 문제점

- 기본계획 이전 단계에서부터 갈등발생
  - 후보지에 불과한 댐 건설 예정지역을 둘러싼 갈등 발생
- 물에 대한 특허권자의 독점권을 규정한 하천법의 정신을 승계
  - 유수와 저수의 분배와 이용에 관한 원칙 부재
  - 민법상의 상린관계에 대한 고려 부재
- 댐 사용권자가 저수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행사
  - 하천법은 유수 사용권자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
  - 댐건설법의 저수 사용권자에게도 동일한 지위를 추정

□ 개선방안

- ① 댐 건설 예정지역 지정 제도의 폐지
  - 법 제5조(댐 건설 예정지역의 지정등)를 삭제
  - 댐의 입지는 기본계획(법 제7조) 단계에서 결정
- ② 주민 등 이해관계자 참여절차의 보완
  - 기본계획(법 제7조) 수립 단계에서 주민참가 절차도입
  - 주민의견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반영하는 객관적 기준확보

③ 저수이용권과 민법상 권리의 조화

- 법 제16조(담 관리의 기본원칙)와 제24조(담 사용권의 설정)에 ‘저수이용권’ 개념을 규정
- 저수이용권의 배타성을 완화시켜 일정 범위 내에서 민법상 유수사용권을 인정

**바. 골재채취법(건설교통부)**

□ 현황 및 여건

- 골재채취 “구역”의 지정(제22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
- 골재채취 “단지”의 지정(제34조) : 건설교통부장관

□ 문제점

- 환경영향평가상의 갈등
  - 채취 해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해양수산부 관할
  -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침해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방지요망
- 어업권등에 대한 보상
  - 골재채취의 허가(법 제22조)시 어업권 피해보상 장치 부재
  - 허가과 피해보상의 분리로 비효율과 갈등 증가

□ 개선방안

- ① 골재채취 허가의 조건 설정
  - 법 제27조(골재채취 허가의 제한)에 다음의 제3항을 신설 :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수면에서는 그 수면에 대한 다른 법률상의 권리자의 권리에 대한 보상 또는 협의를 조건으로 골재채취를 허가한다."
- ② 재평가 결과의 반영
  - 제30조(골재채취구역 변경등의 명령)에 다음의 제4호를 신설 :
  - "4.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건설교통부)**

□ 현황 및 여건

-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 수립·시행(제5조)
  - 산업입지의 계획적·체계적 공급
  -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 고려 수립
-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
  -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지방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등 승인과 사업시행(제6조 내지 제8조)

□ 문제점

- 사정변경으로 인한 승인철회 절차의 미흡
  -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실시계획이 더 이상 존치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실시계획 승인시에 발생한 다양한 법률들에 걸치는 의제효과(제21조)로 인하여 실시계획이 폐

지되지 못하고 남아 있음으로 인하여 갈등을 유발

○ 협의기준의 실효성 미흡

- 법 제21조의2(협의기준)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것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실제 별도의 협의기준이 제정·운용되고 있지 않음

□ 개선방안

① 협의기준의 확보

- 법 제21조의2(협의기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협의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협의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철회 절차의 보완

- 법 제17조(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철회하고자 할 때에도…"
- 법 제18조(지방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철회하고자 할 때에도…"
- 법 제19조(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철회하고자 할 때에도…"

아. 연안관리법(해양수산부)

□ 현황 및 여건

○ 연안통합관리계획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연안통합관리계획(법 제5조)은 그 수립과정에서 시도지사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연안관리지역계획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연안관리지역계획(법 제8조)은 그 수립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취득

○ 연안정비계획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연안정비계획(법 제13조)은 그 수립 과정에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 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의 범위 안에서 정비실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법 제17조제2항·3항)

□ 문제점

○ 계획의 규범력의 미약

- 연안관리법상의 계획들은 다른 법정계획들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지위에 위치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등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연안계획들을 수립(법 제11조제1항 본문)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계획 또는 용도지역의 변경등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11조제1항 단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연안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법 제13조)

○ 공간적 범위의 정합성 결여

- 연안관리법상의 연안해역과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 중첩
-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은 육상의 내수면까지 포함
- 연안해역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관할권 행사에 걸림돌 작용

□ 개선방안

① 연안관리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을 통합

- 두개의 법을 통합하여 연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처럼 실효성이 있는 법률을 제정
- \* (가칭)연안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연안육역의 범위 조정

- 연안육역(제2조제3호)의 범위를 해양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설정

③ 통합계획의 실효성 확보

- 연안통합관리계획(제5조)의 수립주기를 예컨대 10년으로 설정
- 연안육역 및 해역의 '용도구역' 제도를 도입
- 지역계획 수립을 의무화

④ 지역계획의 철회 가능성 확보

- 제10조(통합계획등의 변경)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 "...지역계획의 변경의 경우에..." → "...지역계획의 변경·철회의 경우에..."

⑤ 다른 계획에 대한 적극대응

-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책·계획·사업등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요청권을 강화

자. 공유수면매립법(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현황 및 여건

- 현행 공유수면매립법(제32조)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전에 공유수면의 상황변경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 또는 인가 등을 취소·변경 가능
- 사정변경이 인정된다면, 관할 감독청(해양수산부)은 제3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매립면허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문제점

- 실제 법집행 과정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립면허가 의 제되고 사정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철회할 방도가 없어 공유수면매립법(제32조)의 취소·변경 절차의 이행이 곤란
- 사정변경으로 매립면허의 취소[철회]가 일어날 경우에는 일정한 법절차[비용편익분석/매립지가격평가/환경영향평가등]를 다시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 있을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직권취소를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제32조)의 실효성이 없게 됨

#### □ 개선방안

##### ① 사정변경의 수용

- 사정변경이 일어날 경우(제32조)에 원래의 관할 행정청[해양수산부장관]은 권한의 위임·위탁을 해지하고 해당 행정행위[사업면허]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 ② 계획의 수립·이행절차의 보강

- 매립기본계획(제4조) 위로 수립하고 기초(수요)조사 부문을 법률에 명시
-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제8조)에 대하여 계획수립 절차를 준용
-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앞당김[통합영향평가법 개정사항] : "매립면허시 → 기본계획 반영 요청시"
- 매립후 2년마다 토지이용계획서의 이행내용을 점검

##### ③ 면허의 제한

-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매립만을 인정
- 대규모 매립의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면허
- 해안선 정비를 위한 매립(영 제8조제2항제2호)을 금지
- 면허를 양도·합병하고자 할 경우에 행정청의 허가

##### ④ 매립 목적의 변경절차를 강화

- 면허이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토지이용계획서를 실시계획 인가(제15조) 신청시에 제출
- 면허이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토지이용계획서를 준공인가(제17조)시에 제출
- 매립목적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토지이용계획서와 환경단체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첨부

#### 차. 환경정책기본법(환경부/ 정책총괄과)

##### □ 현황 및 여건

- 국토기본법 제8조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5는 개발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를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정합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환경종합계획(제12조), 시도환경보전계획(제14조의3), 시·군·구환경보전계획(제14조의4) 등 상위 환경계획과 하위 환경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

고 있는바, 이들 상위 하위 환경계획 간의 정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제4절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 검토 요구됨

#### □ 문제점

-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은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인바, 현행 법제도는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조화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함
- 상위의 환경계획과 하위의 환경계획 간에 규율내용, 시행시기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하에서는 그 검토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함

#### □ 개선방안

- ① 환경계획간의 유기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기초한 상·하 환경계획들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 ② '법령'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
- ③ 국가환경종합계획(법 제12조)의 기간 조정
  - 현행 10년 → 20년
  - 경과조치 : 국토종합계획의 기간과 연계
- ④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코드화(법령형식)으로 작성
  - 계획도 규범에 해당하고 규범은 특정되어야 하므로 기호(□나 ○등) 체계로 서술된 환경계획등을 법전[장, 절, 조, 항, 목] 양식으로 표현하고 통계나 그림 기타 데이터들은 별표나 자료로 처리
  - 환경계획을 법령형식(코드화)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신설

#### 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환경부/ 환경평가과)

##### □ 현황 및 여건

- 종래 규제철폐라는 측면에서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통합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운영중
- 영향평가 '시기'를 대체적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전으로 규정

##### □ 문제점

- 환경영향평가 특례를 규정하는 (행정)처분적 입법 내지 분권화 법률들의 출현으로 법령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필요성 증가
- 재해영향평가와 인구영향평가의 경우에 환경영향평가와 내용상 중첩되며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도 저조
- 평가시기가 행정처분과 너무 붙어 대상사업을 유보시키기 곤란

##### □ 개선방안

- ① 통합영향평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 교통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하거나 다른 절차로 이관
- 재해영향평가와 인구영향평가를 대상에서 제외
- ② 환경영향평가의 조기 평가방안
  - 환경영향평가 시기를 가능한 한 앞당기는 방안 강구
  - [예] 공유수면매립 면허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  
현행 "매립면허시 제출"을 "기본계획 반영 요청시"로 앞당김
- ③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의 근거를 단일법으로 통합
  - 양 제도의 대상사업, 평가시기, 내용, 방법의 조정 및 차별화 추진
  - 주민의견수렴, 재협의, 변경협의 및 사후관리 등 절차의 체계화
- ④ 승인기관과 협의기관간의 역할 분담 명확화
  - 협의내용의 철저한 이행확보, 중복관리 해소를 위해 사후관리기관간의 역할을 명확히 함

#### 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환경부/생활폐기물과)

##### □ 현황 및 여건

- 입지 선정시에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법 제9조 제3항)
- 입지타당성 조사계획을 공고하도록 규정(법 제9조 제1항)

##### □ 문제점

- 현실에 있어서는 입지선정단계에서 참여하는 주민대표의 경우 대표성·적격성 여부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입지타당성조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공고된 내용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 개선방안

- ① 입지선정위원회 참여 주민대표 선정기준 마련
  -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표성을 갖는 주민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대표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
- ② 입지타당성조사 공고방법의 다양화
  - 입지 타당성조사계획 공고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보완
  - \* 예)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등 고려

#### 파. 전원개발촉진법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 □ 현황 및 여건

- 실시계획 승인의 기준(제5조)
- 전원개발 기본계획 개념의 후퇴
  - 종전 기본계획에 대한 추급효를 이행하기 위한 실시계획 체계
- 주민등의 의견의 청취(제5조의2)
  -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부재
  - 환경 NGO등 제3자 개입기회 미약

□ 문 제 점

○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불가

- 오래 전에 수립된 기본계획 자체의 법적 안정성 강화
- 계획 수립후의 사정변경이 인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수정불가

○ 장기계획으로 인한 협의적기 상실

- 행정소송등 당사자 이의신청등 제기 불가
- 실제 분쟁사례에서 이해당사자들의 권리구제 기회 미흡

□ 개선방안

① 실시계획의 취소 가능성을 예시

- 법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사업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 법 제6조의 조문 제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인·허가등의 의제"

- 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사업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②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 및 기회의 확대

- 장기전원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안에 대하여서는 실시계획 공고 이전에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절차를 개시
- 객관적 '입지선정' 절차를 도입하여 공정력 내지 법적 안정성 확보

하. 지방자치법(행정자치부/자치제도팀)

□ 현황 및 여건

○ 지방자치법 등에 해상에서의 행정구역 경계와 관련한 근거법령이 없는 실정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분합할때에는 법률로서 정한다)

※ 갈등관리 제도개선 제안과제로 제출(04년 경남, 전남도)

□ 문 제 점

○ 해상경계 관련 근거법령이 없어 해상 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분쟁·갈등이 빈발

- 바다모래채취 관할권을 둘러싼 용진군-태안군간 분쟁
- 아산만을 둘러싼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간 분쟁
- 울촌산업단지를 둘러싼 순천시와 광양시의 분쟁 등

○ 향후 해저자원 활용, 공유수면 매립 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간에 유사한 분쟁이 늘어날 전망

○ 평택-당진간 해상경계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 국토지리원의 지형도를 해상경계의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04.9.23)

□ 개선방안

①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에 관한 근거법률 정비(제4조관련)

- 해상경계 미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상경계의 획  
선 기준 등을 법제화할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간 해상 행정구역 경계 설정 기준, 방법 등을 명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  
치법 개정(제4조 관련)

\* 필요시, 관련조항 신설 또는 별도의 법률 제정 등 추진

### 3) 행정사항

□ 관계부처에서는 정비방안(재협의를안)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 부처별로 소관 법률 정비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 부처별 검토의견 제출 및 관련 회의개최

○ 검토결과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

<첨부>

공공개발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방안  
(2차 협의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 차 례

### < 건설교통부 소관 >

1. 국토기본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철도건설법
4. 하천법
5.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6. 골재채취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해양수산부 소관 >

8. 연안관리법
9. 공유수면매립법

### < 환경부 소관 >

10. 환경정책기본법
11.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1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 < 산업자원부 소관 >

13. 전원개발촉진법

### < 행정자치부 소관 >

14. 지방자치법



1) 국토기본법

작성자 : 건설교통부, 국토정책팀, 사무관 김복환/전화 02-2110-8140

정비사항 제목	정비 요지	검토의견	정비시기	비고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제5조)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 →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고려” 로 수정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에 관한 모든 계획에 우선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써 국토와 관련된 하위부문별계획을 고려할 책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수용 불가
국토계획의 수립주기 (제7조 제3항)	국토종합계획(20년)의 수립주기와 국가환경종합계획(10년)의 수립주기 일치	국토종합계획의 지위를 고려하여 환경계획이 동계획의 수립주기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이미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부터 수립주기를 20년으로 수립	-	수용 불가
다른법령과의 관계 (제8조)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 “국토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국토계획은 헌법에 근거한 국토와 관련한 최상위 계획으로 부문별계획에 우선함이 타당	-	수용 불가
국토계획의 코드화(법령형식)	국토종합계획 등을 법정양식으로 작성토록하는 근거조항 신설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의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강제력과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법규와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은 장기계획의 성격상 부적합	-	수용 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작성자 : 건교부 도시정책팀 사무관 엄정희/2110-8167

정비사항 제목	정비 요지	검토의견	정비시기	비고
①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과의 연동	제3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 2. <u>지역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지역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u> → <u>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개선 또는 복원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고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을 이미 제시함</li> <li>○ 국토이용 및 관리에서 환경은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하나의 구성요소이므로 특정법령의 환경보전계획을 언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li> </ul>	-	수용곤란
②보전에 관한 계획과의 협력	제4조(도시계획의 지위) ○ 도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u>이용·개발 및 보전</u> 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도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u>이용과 개발 및 그 제한</u> 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은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는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서 토지이용 제한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li> </ul>		수용곤란

<p>③ 도시관리계획의 주민의견청취 반영기준 마련</p>	<p>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p> <p>○ 주민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p> <p>→주민의견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당성 평가기준을 충족시키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p>	<p>○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주민의견의 반영여부는 상위계획과의 관계, 지자체의 도시계획 현황, 타법령에 의한 관계 등에 따라 지자체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게 됨</p> <p>- 동일한 주민의견이라 하더라도 지자체의 현실적 여건 등에 따라 반영여부가 다를 수 있음</p> <p>○ 따라서,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p> <p>- 만일, 주민의견 청취 결과의 반영기준을 만든다면 250여개에 달하는 시·군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화 되게 운영될 것임</p>	<p>-</p>	<p>수용곤란</p>
---------------------------------	---	--	----------	-------------

3) 철도건설법

건설교통부 철도건설팀 토목사무과 이성훈 / 02-2110-8359 ~ 60

정비사항 제목	정비 요지	검토의견	정비시기	비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등(제23조)	<p>○법률관계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을 규정</p> <p>○구역·지구가 중첩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승인권자가 지정</p>	<p>○현규정(제23조제2항)이 역세권의 특성에 따라 택측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도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하고 당해 법률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별도조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됨</p> <p>○양 지구는 법률적으로 중첩하여 지정되는 것이 불가</p>	-	수용 곤란

4) 하 천 법

작성자 : 건설교통부, 하천환경팀, 사무관 박종철/전화 2110-8235

정비사항 제목	정비요지	검 토 의 견	정비시기	비고
<p>민법상의 유수사용권을 하천법에서 수용</p>	<p>하천법 제5조에 다음의 제2항을 신설</p> <p>“관리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천 유수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 민법상 유수사용권을 고려하여야 한다.”</p>	<p>○ 민법상 공유하천용수사용권은 존재하는 권리로서 인정. 다만, 하천법상 허가수리권 체계로 흡수하여 허가수리권과 동등하게 통합관리할 계획임</p> <p>&lt; 방 안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법상 공유하천유수사용권에 대한 신고의무화</li> <li>- 신고기간에 미신고 권리는 실효 조치</li> <li>- 진정한 공유하천유수사용권은 하천법상 허가수리권과 동일한 권리 보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li> </ul> <p>(→ 공유하천 수리권의 통합)</p> <p>※ 수리권 법제가 미비했던 시대에 관습법에 근거한 민법의 규정으로 인정된 공유하천유수사용권을 합리적인 권리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절대 불변적 기득권으로 지속되려는 것은 물 부족의 현대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공익창출을 위한 국가의 물관리 정책 구현에 형평성을 저해하는 역기능 해소를 위해 통합관리 시급</p> <p>○ 하천법에 “민법상 공유하천유수사용권”이라는 용어를 명기하는 것은 부적절</p>	<p>중장기과제</p>	<p>수정반영</p>

정비사항 제목	정비요지	검토의견	정비시기	비고
		<p data-bbox="835 357 965 384">&lt; 사유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835 435 1563 512">-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에 대한 현황 부재로 구체적 실체를 알 수 없음</li> <li data-bbox="835 547 1570 671">-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 규정은 하천법 제정이후에는 신규 권리생성이 중지되어 실제로 사문화. 다만, 인정되는 기득권리를 보호하는 법적근거로서 효용</li> <li data-bbox="835 707 1563 879">-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이 하천법상 허가수리권과 양립하는 절대 불변의 권리로 인식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허가수리권 체계로 통합관리하려는 국가의 물 관리 정책의 실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다분</li> </ul> <p data-bbox="835 943 1570 1158">○ 권리인정의 대상이 될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신고토록 하고, 정당한 신고내용은 전부 인정하여 보호할 것이므로 별도로 “민법상 유수사용권”이라는 용어를 하천법에 도입하여도 실제적 실익은 없다고 봄</p> <p data-bbox="835 1209 1547 1236">※ 참고 자료 : 하천법개정안 관련조문(첨부 1) 참조</p>		

정비사항 제목	정비요지	검토의견	정비시기	비고
<p>유수사용 한계의 설정</p>	<p>하천법 제21조에 다음의 제4항을 신설</p> <p>“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유역공동체가 사용할 수 있는 유수의 총량을 협의·결정할 수 있다.”</p> <p>하천법 제21조에 다음의 제5항을 신설</p> <p>“민법에 규정에 의한 유수사용권자는 그 사용실적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p>	<p>○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이 하천법상 허가수리권체제로 들어오면, 하천법상 물관리 정책체제의 큰 틀 속에서 합리적인 유수 총량 판단 등 허가수리권과 동일하게 보호되고 관리될 것임 ⇒ 조문 신설의 목적 달성</p> <p>&lt; 적용제도 및 방안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 침해 지양 등 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적용</li> <li>- 하천유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시간 수문조사</li> <li>- 과학적인 하천의 유지유량 산정모델 개발을 통한 실제적 사용가능 유량 제시</li> <li>- 유역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주민 등의 의견반영</li> <li>- 하천점용허가에 있어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 및 손실 보상 등 권리보호</li> <li>- 하천수 오염, 유량감소로 인한 하천생태계 훼손우려 시 취수량 및 기간 제한 등 공익성 강화</li> <li>- 하천수 사용량 신고 및 하천수 분쟁조정 신청 등</li> </ul> <p>※ 참고자료 : 하천법개정안 관련조문(첨부 2) 참조</p>		

## 【참고자료(첨부 1)】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①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하천을 구성하는 토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취수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하천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당해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하천수 사용의 허가요건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제8조(농업용수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는 자(이하 “기득하천수사용자” 이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천관리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실효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득하천수사용자의 신고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자료(첨부 2)】

제17조(수문조사의 실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의 물 순환 구조의 파악, 하천시설물, 각종 구조물 설계, 하천주변지역의 이용·관리 등을 위하여 하천유역의 토양수분량·강수량·증발량 및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조사[이하 “수문(水文)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수량·증발량·수위·유량·유사량을 측정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수문조사로 본다. 다만, 기상업무법등 기상관계 법률에 의하여 강수량·증발량 등을 측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의한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관계기관의 장(이하 “다른 수문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문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문조사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자원 개발·이용의 현황 및 하천환경과 홍수 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종합치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할 수계(분류 하천의 중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의 동일유역에 속하는 하천의 총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요지점별 홍수량 할당 지정 및 그 밖에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하천관리위원회(유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말한다)의 자문 및 동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제7조제6항의 규정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유역종합치수계획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하천관리청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既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당해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현저하게 큰 경우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당해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등) ①하천점용의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하천점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기득하천사용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하천수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제51조(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고일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수 사용실적에 현저히 미달하는 때에는 이를 실효조치하고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수의 사용이 제5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수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2조(하천유지유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한다.
-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점의 선정 및 하천유지유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3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②하수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하천에 방류하는 방류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시설의 설치 및 하천에 방류하는 방류수 현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54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수의 양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신고량을 조정하지 않으면 공공의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허가된 하천수의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수량을 조정(調整)할 수 있다.
1.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량보다 현저하게 적게 사용한 경우
  2. 긴급하게 하천수 사용의 조정을 하지 않으면 공공의 이익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수의 조정을 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조정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와 댐 등의 설치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 신청 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하천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댐 등의 설치자
2.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
3. 기득하천사용자
4. 하천수의 사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②하천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참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하천관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서 6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하천관리위원회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6조(하천수 분쟁조정 의 거부 및 중지) ①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분쟁조정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하천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분쟁조정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 의 효력 등) ①하천관리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하천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당사자가 수락하여 작성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71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3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작성자 : 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과, 사무관 최제호/전화 504-9045

정비사항 제목	정비 요지	검토의견	정비시기	비고
댐 건설 예정지역 지정 제도의 폐지(제5조)	·제5조(댐 건설 예정지역의 지정 등)를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댐 건설 예정지역 지정제도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폐지 예정</li> </ul>	2007	수 용
주민 등 이해관계자 참여절차의 보완(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참가 절차 도입</li> <li>·주민의견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반영하는 객관적 기준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계획수립단계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갈등요인을 제거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댐 건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댐건설 후보지에 대한 보상투기 등 사회적 문제와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살펴 절차 규정 추가 (의견수렴시 타당성평가와 기준 불필요)</li> <li>-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댐별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기본계획 고시 전에 공청회 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li> <li>- 댐건설제도를 개선하여 댐건설기본계획 수립시 주민대표 지자체,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li> </ul>	중장기	일부 수용

정비사항 제목	정비 요지	검토의견	정비시기	비고
저수이용권과 민법상 권리의 조화 (제16조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16조(담 관리의 기본원칙)와 제24조(담 사용권의 설정)에 '저수이용권' 개념을 규정</li> <li>·저수이용권의 배타성을 완화시켜 일정 범위 내에서 민법상 유수 사용권을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수이용권 신설은 현행 하천법과 정면 배치되므로 담사용권과 별도로 담법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li> <li>- 담에 저수된 물은 생·공용수공급, 농업용수 공급, 발전, 홍수조절 등 이미 그 특정용도에 따라 저수된 물을 이용하도록 용수배분 계획이 되어 있음</li> <li>- - 담건설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인정하여 주는 "담사용권은 생·공용수공급 및 발전을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되고 있는 권리임"</li> <li>- 이처럼 담에 저수된 물은 이미 그 특정용도대로 이용하도록 배분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저수이용권 개념을 신설하는 것은 하천의 물이 풍부했던 과거에나 가능한 것이지 현대와 같은 물부족시대에는 전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 하천법이 채택하고 있는 "허가수리권 제도"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향으로 귀속자 범위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li> <li>◦ 유수사용권의 인정은 모법인 하천법에 의함</li> </ul>	중장기	일부 수용

6) 골재채취법

작성자 : 건설교통부, 건설지원팀, 사무관 강대봉/전화 2110-8205

정비사항 제목	정비요지	검토의견	정비시기	비고
<p>골재채취허가의 조건 설정 (골재채취법시행령 제27조)</p>	<p>공유수면에서 다른 법률상 권리에 대한 보상 또는 협의조건으로 허가하는 내용 신설</p>	<p>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은 골재채취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제6호의 규정에서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 불요</p>	<p>-</p>	<p>수용불가 (정비불요)</p>
<p>환경재평가 결과 반영(골재채취법 30조)</p>	<p>환경영향 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구역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p>	<p>환경·교통·재해등의영향평가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또한, 골재채취법 제30조의 규정에서 환경훼손·수질오염등 골재채취가 공익을 현저히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별도규정 불요</p>	<p>-</p>	<p>수용불가 (정비불요)</p>

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작성자:건설교통부 산업입지팀 사무관 남상현/전화 2110-8149

정비사항 제목	정비 요지	검토의견	정비시기	비고
승인철회 절차의 보완 (제17조, 제18조, 제19조)	· 사정변경으로 인한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철회절차 마련	○ 차회 법령개정시 반영	2006	수 용
협의기준의 확보 (제21조의2)	·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의기준 제정 의무화	○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사업 시행시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고, 이 경우에 협의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각 기관별 관련사항이 다르고, 산업단지별로 지역특성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형화된 별도의 기준 제정이 곤란하여, 별도로 협의기준을 정하지 않고, 협의시 협의근거와 회신기간만 15~20일로 정하여 운용중임. - 따라서, 본규정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법령개정시 삭제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자 함.	2006	수정반영

8) 연안관리법

작성자: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행정사무관 김선중/전화 3674-6571

정비사항 제목	정비 요지	검토의견	정비시기	비고
연안관리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을 통합	<p>두개의 법을 통합하여 연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처럼 실효성이 있는 법률을 제정</p> <p>* (가칭)연안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공유수면관리법은 공유수면의 보전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공유수면의 이용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p> <p>◦연안관리법은 공유수면관리법 보다는 적용범위가 더 넓고, 연안관리법에 의거 연안육역과 해역을 통합관리 하는 연안통합관리제도가 어렵게 정착되어가고 있음</p> <p>◦따라서 연안관리법은 연안관리의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법령으로 현행대로 존치하고, 분야별로 입법필요시 개별 법령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p> <p>(예, 무인도서관련법령, 해수욕장관련법령의 제정 등)</p>	-	◦ 수용곤란
<p>연안육역의 범위 조정</p> <p>·연안육역(제2조제3호)의 범위를 해양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설정</p>	<p>해역과 육역의 자원 및 공간을 통합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하여 연안육역의 범위를 해양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설정</p>	<p>◦연안육역의 범위를 연안소수계 등 해양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곳 등으로 정할 경우에는 너무 막연하여 많은 혼란 발생 가능성이 있고, 사후관리가 곤란함</p> <p>◦연안관리법의 하천의 적용범위는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 범위 및 해양오염방지법의 환경보전해역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p> <p>◦현재(통상 육지측 500m)의 연안육역범위도 많은 반발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음</p>	2006	◦ 수정반영

정비사항 제목	정비 요지	검토의견	정비시기	비고
통합계획의 실효성 확보 ◦연안통합관리계획(제5조)의 수립주기를 예컨대 10년으로 설정	◦통합계획의 수립주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	◦ 타당성이 인정됨 - 정기적인 연안실태조사 자료의 정책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변화하는 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2006년	◦ 수 용
◦연안육역 및 해역의 '용도구역' 제도를 도입	◦연안해역을 국가 주권이 미치는 국토공간으로 인식하고 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안육역 및 해역의 용도구역제도 도입	◦ 법 운용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연안통합관리의 당초 법 제정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연안용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함	2006년	◦ 수 용
◦지역계획 수립을 의무화	◦시장·군수구청장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의무화	◦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연안의 관리정책의 방향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타법령의 연안이용협의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야 함 ◦ 연안관리법을 제정('99.2)하여 연안통합관리제도가 아직까지도 효율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지역계획 수립에 소극적인데도 그 원인이 있음	2006년	◦ 수 용

정비사항 제목	정비 요지	검토의견	정비시기	비고
<p>지역계획의 철회 가능성 확보</p> <p>◦제10조 (통합계획 등의 변경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 "...지역계획의 변경의 경우에..." → "...지역계획의 변경 철회의 경우에..."</p>	<p>◦연안관리지역계획의 공익상 사정변경등으로 인한 장관에 의한 승인의 "철회" 제도를 도입</p>	<p>◦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승인권자의 재량권 강화 및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고, 법의 엄격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익상 사정변경등으로 인한 장관에 의한 승인의 "철회" 제도를 도입</p>	2006년	◦ 수 용
<p>다른 계획에 대한 적극대응</p> <p>◦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책 계획·사업등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변경요청권을 강화</p>	<p>◦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판단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책, 계획, 사업에 대한 변경요청 권한 강화</p>	<p>◦ 해양수산부 장관의 변경요청이 있을시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합당한 근거를 제출하도록 명문화</p> <p>◦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계획, 용도구역 지정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 변경요건을 갖추고 있을 지라도 이를 수용하게 할 추후 절차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어 사문규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p>	2006년	◦ 수 용

9) 공유수면매립법

작성자: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사무관 류중빈/전화 02-3674-6574

정비사항 제목	정비 요지	검토의견	정비시기	비고
<p>매립목적의 변경절차를 강화</p> <p>원상회복의무 면제 강화</p> <p>중앙연안심의회 기능강화</p>	<p>· 면허이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토지이용계획서를 실시계획인가 (제 15조) 신청시에 제출</p> <p>· 불법매립지 등 원상회복을 면제시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제35조)</p> <p>다른 법률에 의하여 매립기본계획을 의제받은 경우 중앙연안심의회에서 매립기본계획의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조문신설)</p>	<p>○ 삭제</p> <p>- 2005.10.12시 행되는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개정시기 반영</p> <p>○ 추가</p> <p>- 공유수면 불법매립지를 면허관청이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주고 국유지로 등록 후 불법매립자에게 사용·사용수익허가를 함으로써 불법매립을 촉진시키고 있는 현실태를 시정하기 위함.</p> <p>○ 추가</p> <p>-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매립기본계획의 의제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의견 제시전에 미리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협의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함</p>	<p>정비 완료</p> <p>2006년</p> <p>2006년</p>	<p>* 수정반영</p> <p>* 수정반영</p> <p>* 수정반영</p>

정비사항 제목	정비 요지	검토의견	정비시기	비고
매립면허의 양도·양수승인	매립면허를 양도·양수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 (제23조)	<p>○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립면허의 양도·양수가 자유로움에 따라 이중, 삼중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져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고 매립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li> </ul>	2006년	* 수정반영
다른 법률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제 제한	다른 법률에서 매립기본계획이 의제되었다 하더라도 매립법에서 정하는 매립기본계획 반영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조문 신설)	<p>○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법률에 의하여 매립하는 경우 100%,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경우 10~19% 정도 매립기본계획(차)에 반영</li> <li>- 매립법을 회피하고 다른 법률로 매립을 추진하려고 하는 바, 법률간 형평성을 감안하고 매립을 억제하기 위하여 동 제도 도입 필요</li> </ul> <p>* 유사입법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92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p>	2006년	* 수정반영

10) 환경정책기본법

작성자 : 환경부, 정책총괄과, 사무관 유승광/전화 2110-6668

국토환경보전과, 사무관 김은경/전화 2110-6696

정비사항 제목	정비 요지	검토의견	정비시기	비고
환경계획간의 유기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기초한 상·하 환경계획들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 기 추진중인 과제로 정비대상에서 제외 - 국가환경종합계획 확정 이후,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달 예정(‘05.11월)	-	
‘법령’을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 포함	-	○ 법령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법령은 선언적, 일반적 규정으로 지역특성, 환경적 상황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과약이 어려움 - 법령에 따른 사업구상, 행정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검토가 가능 - 실제 법령제정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환경보전방안이 반영되고 있으므로 실익이 없음	-	수용불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기간 조정 (제 12조)	·국토종합계획의 기간 연계 (10년 → 20년)	○ 양 계획간의 정합성 확보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수용 - 양 계획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선 계획기간의 조정보다 국토에 관한 계획에 있어 국토종합계획의 우선효를 배제하는 것이 중요	중장기 과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코드화	·법령형식으로 작성하도록 근거조항 신설	○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법령형식을 취하는 것은 계획의 구체성 및 소요예산 검토에 한계가 불가피한 장기계획의 성격상 부적합	-	수용불가

1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작성자 : 환경부, 환경평가과, 사무관 박광호/전화 2110-6716

정비사항 제목	정비 요지	검토의견	정비시기	비고
통합영향평가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하거나 다른 절차로 이관</li> <li>·재해영향평가와 인구영향평가를 대상에서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사항은 감사원 감사의견 사항으로 아직 감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임</li> <li>○ 교통영향평가의 개선, 재해 및 인구영향평가의 평가대상에서 제외여부는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li> <li>○ 감사원 감사결과 확정후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후 결정할 사항</li> </ul>	중장기 과제	유보
환경영향평가 조기평가방안 강구	·환경영향평가 시기를 가능한 앞당기는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시기가 사업계획의 확정 이후인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실시되어 사업계획의 취소, 사업계획의 조정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문제점 발생</li> <li>○ 이에 따라 '05.5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모든 평가대상 사업의 행정계획을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입지의 적정성·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동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환경성 검토에서는 계획의 입안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 사업계획 및 대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li> <li>-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인 사업의 시행단계에서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 위주로 검토</li> </ul> </li> </ul>	2007	수정반영

정비사항 제목	정비 요지	검토의견	정비시기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시행계획 승인 또는 사업의 인·허가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li> <li>○ 과제명 및 정비요지를 다음과 수정함이 바람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제 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조정 및 협의시기 조정</li> <li>- 정비요지 :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조정,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 조정</li> </ul> </li> </ul>		
<p>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의 근거를 단일법으로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 제도의 대상사업, 평가시기, 내용, 방법의 조정 및 차별화 추진</li> <li>·주민의견수렴, 재협의, 변경협의 및 사후관리 등 절차의 체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 제도가 분리되어야 단일법으로 통합 가능</li> </ul>	<p>중장기 과제</p>	<p>수용</p>
<p>승인기관과 협의기관간의 역할 분담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의내용의 철저한 이행확보, 중복관리 해소를 위해 사후관리기관간의 역할을 명확히 함</li> </ul>		<p>2007</p>	<p>수용</p>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작성자 :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사무관 박한업/전화 2110-6931

정비사항 제목	정비 요지	검토의견	정비시기	비고
입지 선정 위원회 참여 주민대표 선정 기준 마련 (제9조제3항)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표성을 갖는 주민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대표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대표의 선정에 관한 구체적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006	수용
입지 타당성조사 공고방법의 다양화 (시행령 제109조제1항)	·입지 타당성조사계획 공고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완	○ 입지타당성조사계획 공고방법의 다양화 필요성이 있음	2006	수용

13) 전원개발촉진법

작성자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사무관 용환득/전화 2110-5472

정비사항 제목	정비 요지	검토의견	정비시기	비고
실시계획 승인기준 (제5조)  조문제목의 변경 (제6조)	· 실시계획의 취소 가능성을 예시 ("사업취소"가 변경 승인에 포함됨을 명문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허가등의 의제"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은 실시계획승인 이후 지역전력수급 사정의 변경, 다른 개발계획과의 충돌, 법령의 저촉, 지역주민과의 합의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외여건 변동이 발생할 경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사업취소 또는 입지의 변경 등)절차를 통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실시계획의 변경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동 변경개념에 당연히 사업취소가 포함되어 있어 굳이 명문화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아니라고 판단됨  - 또한, 조문제목 변경도 "인·허가등의 의제"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나 별반 차이가 없고 법률내용이나 효력과 전혀 무관하여 불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차후 법률 개정소요 발생시	*수용

정비사항 제목	정비 요지	검토의견	정비시기	비고
<p>주민의견수렴 의 절차 및 기회의 확대 (제5조의2)</p>	<p>· 실시계획 공고이전에 이해관계자 협의절차 개시</p>	<p>○ 조문제목의 변경 및 사업취소의 명문화는 법률 적 내용과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의미만 약간 부연해 줄뿐이므로 개정여부가 실제 적 효과와 무관하여 독립적인 법 개정 사항이라 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속위에서 변경을 고 집할 경우 차후 전원개발촉진법의 실질적 개정사 유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 검토예정</p> <p>○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전원개발 사업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일간신문 (1회 이상)과 인터넷을 통해 실시계획의 내용을 공 고(14일 이상)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 을 청취 하도록 하고 타당한 의견은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p>-</p>	<p>*수용불가</p>

정비사항 제목	정비 요지	검토의견	정비시기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적 '입지선정' 절차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계획 공고 이전에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의무화할 경우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중복규제이며, 해당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혐오설비로 인식되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엄청나게 지연되어 전원개발촉진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큼</li> <li>※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동 규정을 사업자에 대한 규제로 판단하여 관리(규제등록)</li> <li>○ '입지선정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송전선로 개발에 따른 보상비의 지원확대로 연결되게 되며, 보상지역 범위가 방대하여 매년 막대한 보상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기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함</li> <li>- 특히, 기존 송전선로 관련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보상요청 등 잠재된 민원을 야기하게 되어 갈등예방은 커녕 보다 큰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큼</li> </ul>	-	*수용불가

14) 지방자치법

작성자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사무관 장금용

정비사항 제목	정비 요지	검토의견	정비시기	비고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에 관한 근거법률 정비 (제4조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상경계 미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상경계의 획선 기준 등을 법제화할 필요성</li> <li>· 지방자치단체간 해상 행정구역 경계 설정기준·방법 등을 명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제4조 관련)</li> <li>* 필요시, 관련조항 신설 또는 별도의 법률 제정 등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li> <li>※ 2개년('06~'07) 계획으로 해상경계 측량 등을 통해 관계법령을 정비할 계획</li> <li>· 해상경계 설정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조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li> <li>· 다만, 규정방식·규정내용 등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li> </ul>	2007	수용

3. 공공개발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방안  
(최종 보고서 안)

## 차 례

- 1) 추진배경 및 방향
- 2) 개선제안과제 도출
- 3) 개선과제별 추진방안
- 4) 부처별 법률정비제안

### 가. 건설교통부 소관

- (1) 하천법
- (2)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4) 연안관리법
- (5) 공유수면매립법

### 다. 환경부 소관

- (6) 환경정책기본법
- (7)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 라. 산업자원부 소관

- (8). 전원개발촉진법

### 마. 행정자치부 소관

- (9) 지방자치법

## 1) 추진경과 및 방향

### 가. 추진배경 및 경위

#### □ 100대 국정과제

- 우리 사회에서 빈발하는 공공갈등의 예방을 위하여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의 하나로 추진

#### □ 갈등의 법적 구조

- 실체법적 구조
  - 부적절한 권리설정 또는 이익배분
  - 우발이익 또는 부당이득의 발생
  - 처분적 법률들에 의한 특례[인가·허가]의 의제
- 절차법적 구조
  - 당사자 : 권리구제 기회의 미비
  - 행정청 : 사정변경시 시정기회의 부재
  - 쟁송절차 : 訴의 이익 또는 원고적격상의 곤란
- 법사회학적 구조
  - 자기결정 기회의 미비 → 타율질서에 대한 반발
  - 상대적 박탈감 → 비합리적 의사결정
  - 실력에 의한 지배 → 법치국가 원리를 부정

#### □ 기본연구 진행

- 2004년중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갈등관리정책전문위)의 갈등관리 법·제도개선연구팀에서 ‘공공갈등 관련 법·제도개선지침(2004)’을 마련
- 2005년중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관련연구기관과 협력 연구
  - 주무연구진(법제연구원)이 협동연구기관 방문, 워크숍을 통해 관련연구진과 토의를 거쳐 개선과제 의견, 정리 반영

#### □ 개선과제 발굴방향

- 공공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법률 중심으로 갈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법제의 개선 보완방안 도출(보전관련 갈등은 제외)
  - 정책입안과 결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절차 확대
  - 수법자의 입장에 선 법제도 수립과 엄격한 법 집행 등
  -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정보의 공유 확대 등

####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안 작성

- 서면의견 검토를 거쳐 연구팀과 의견검토 조정회의 실시(8.17~19)
  - \* 건교부 소관(8.17), 환경·산자·해수부 소관(8.19)
- 관계부처 의견검토회의 결과를 반영한 협의안을 마련하여 2차 관계부처 의견 수렴
  - \*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 작성

## 나. 추진목표 및 방향

### □ 추진목표

- 갈등을 발생시키는 법적 요인의 축소
- 빚어진 갈등을 합리적 절차로 해소
- 실력에 의한 부당한 이익추구를 차단

### □ 추진방향

- 개발법률관의 변화 : 「낙하산」 모델 → 「저울」 모델
- 장기적 접근 : 부처간 합의로 「공익사업 토지 취득보상법」 개정
- 단기적 접근 : 각 부처 소관 법령들의 단계별 정비

## 2) 주요개선과제의 도출

### □ 부처별 정비제안 법률 : 총 9개 법률

- 건설교통부 소관 (4개)
  - 하천법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2개)
  - 연안관리법
  - 공유수면매립법
- 환경부 소관 (2개)
  - 환경정책기본법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자원부 소관 (1개) : 전원개발촉진법
- 행정자치부 소관 (1개) : 지방자치법

### □ 정비 추진전략

- 단기과제 : 개선이 시급하고 사회적인 공감대 뒷받침 되어 단기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2006년중 개정 추진
- 중·장기과제 :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를 수용할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조치하는 방안

## 나. 개선추진과제 선정(안) 개요

### □ 관련계획간 대화체계의 구축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수립시에 상호고려
-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한 계획간 대화의 유도

### □ 연안의 통합적 관리

- 연안육역과 해역의 통합성을 고려하고 계획의 이행을 평가
- 국토종합계획 체계를 본받아 연안관리계획의 실효성 보강

- 자연자원의 적절한 분배와 이용
  - 유수·저수에 대한 법정수리권과 관행수리권의 조화
  - 해상경계의 명료화를 통한 지자체간 관할다툼 해소
- 사정변경시 행정기관에 의한 시정조치
  - 공유수면의 사정변경시 직권에 의한 때립면허를 취소
  - 산업입지의 여건변화시 실시계획 승인의 철회
-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자기결정 기회의 확대
  -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입지선정 방식의 개선
  - 골재채취의 이익과 어업피해 사이의 균형도모

### 3) 개선과제 추진방안

#### 가. 관련계획간 대화체계의 구축

- 현 황
  - 주요쟁점
    - 국토종합계획[건교부]과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부]간 연계
      - \* 두 계획간 상호 고려[대화] 시스템의 결여
      - \* 계획기간[20년↔10년] 및 시작시기와 종료시기 상이
    -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편성체계
      - \* 현행 계획편성 체계는 조향체계가 아닌 기호체계
      - \* 추진방침이외에 도면과 정보 및 통계수치등이 혼재
    - 대화체계 구축에 사전환경성검토 시스템 활용가능
      - \*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검토대상을 행정계획까지 확대
      - \* 국토종합계획의 검토시 판단척도[국가환경계획] 필요
  - 관련법령
    - 국토기본법
      - \* 제5조 :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 \* 제7조 : 국토계획간 조화와 일관성
      - \* 제8조 : 국토에 관한 다른 계획들에 우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제3조 :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
      - \* 제4조 : 토지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계획들의 기본
    - 환경정책기본법
      - \* 제14조의5 : 개발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 \* 제25조 :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 \* 제27조 : 개발사업의 사전허가등의 금지
- 문 제 점
  - 갈등구조

- 계획내용간 부정합성
  - \* 국토종합계획은 그 안에 별도의 환경보전 항목들을 규정
  - \*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견제 불가
- 계획기간간 부정합성
  - \* 국토종합계획[20년] ↔ 국가환경종합계획[10년]
  - \* 시기와 종기가 달라 상호간 영향의 평가가 곤란
- 사전환경성 검토기준 불확실
  - \* 국토계획등을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 환경성 기준미비
  - \* 환경계획은 사전환경성 검토기준과 별개의 체계로 존재

○ 법적과제

- 관련계획 상호간의 내용적 중첩과 모순
  - \* 국토계획 : 자체 환경기준 설정 ↔ 환경계획상 기준과 괴리
  - \* 지방계획중 토지이용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협력 곤란
- 관련계획 상호간의 형식적 비체계성
  - \* 계획기간의 불일치 → 계획목표의 불일치
  - \* 시기와 종기의 불일치 → 계획에 대한 이행평가의 곤란
  - \* 계획을 조문형식이 아닌 기호방식으로 편제 → 불명확성
- 적법절차(due process)의 불이행
  - \* 환경성 검토기준의 이원화 → 준법자 측의 판단 혼란
  - \* 계획에 담긴 규범[명령과 통제]의 불특정 → 명확성 결여

□ 개선방안

○ 개선방향

- 계획간 특화
  - \* 국토계획 : 사업자의 기능에 충실
  - \* 환경계획 : 감시자의 기능에 충실
- 계획간 대화
  -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은 입안·수립·이행에서 상호 고려
  - \*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통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대화
- 입 법 례
  - \* 독일 자연환경보전법과 건설법전은 경관계획을 통하여 대화
  - \* 독일 「경관계획」은 실제 우리의 「환경계획」에 해당

○ 입법대안 :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 환경계획에 대한 사전적 고려
  -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환경계획 고려의무를 부과
  - \* 사전환경성 검토시 「환경계획고려」의무 이행여부 심사
- 관련계획들의 계획 「기간」의 조정
  -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기간연장 : 10년 → 20년
  - \*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의 시기·종기를 조정

☞ 국토계획 우선효를 규정하는 국토기본법(제8조)과 연계

- 적법절차(due process)의 원칙 도입
  - \* 환경계획을 환경성 검토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나. 연안의 통합적 관리

□ 현 황

○ 주요쟁점

- 연안통합 관리계획의 통합성
  - \* 원칙 : 다른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연안계획을 수립
  - \* 예외 :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변경요청
- 연안의 공간적 범위
  - \* 연안해역(공유수면)
  - \* 연안육역(해양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곳)
- 연안계획의 유연성
  - \*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요청 가능
  - \* 연안지역계획의 변경가능 ↔ 철회곤란

○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제4조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제6조 : 국가산업단지의 개발
  - \* 제7조 : 지방산업단지의 개발
  - \* 제8조 : 농공단지의 개발
- 연안관리법
  - \* 제10조 : 연안통합계획등의 변경
  - \* 제11조 : 다른 법률이 규정한 범위[용도지역]내에서 관리
  - \* 제13조 :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계획수립

□ 문제점

○ 갈등구조

- 토지 중심의 국토계획의 우월성
  - \* 국토계획→도시계획→연안계획 구조하의 일방형 의사결정
  - \* 갈등사례 : 마산만매립지[지자체:도시화↔NGO:공원화]
- 육역과 해역의 접경구역에 대한 단편적 사고
  - \* 연안육역의 범위를 500m ~ 1 km로 확정
  - \* 갈등사례 : 半폐쇄성 광양만에 대한 획일적 경계 확정
- 행정행위의 확정력과 사정변경
  - \* 간척후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인허가 의제효과 지속
  - \* 갈등사례 : 산업입지개발법에 의한 「시화호」 개발계획

○ 법적과제

- 보충적 권능에 의한 연안관리계획의 한계
  - \* 국토계획·산업입지계획에 대한 연안계획의 종속
- 관할 공간범위의 획일적 설정
  - \* 도서지역에 대한 연안육역 범위 제한의 불합리성
- 유효한 연안관리 수단의 부족
  - \* 범집행 도구평등의 원칙

□ 개선방안

○ 개선방향

- 관할 행정청에 통합적 관리권능을 부여
  - \* 다른 법률들에 의한 독자적 연안개발 방식을 지양
- 연안관리에 「연안」의 지리적 특성을 부각
  - \* 연안의 용도구역 설정시 객관적·체계적 절차를 마련
- 실체적 관리수단의 확대
  - \* 연안관리의 이행평가 시스템을 도입

○ 입법대안 : 연안관리법의 개정

- 관리법에서 「계획」 및 「이용」 법으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를 참조
  - \* 연안계획의 기간[수립주기] 설정
- 연안육역의 관리범위 설정기준을 조정
  - \* 도서지역·환경민감지역 등에 연안육역의 범위를 확장
- 다른 법률상 계획에 대한 변경의 용이화
  - \* 다른 법률상 계획에 대한 변경절차의 구체화

다. 자연자원의 적정한 분배와 이용

□ 현 황

○ 주요쟁점

- 국유인 하천을 흐르는 유수에 대한 공중의 이용권
- 댐의 저수 또는 방류수에 대한 공중의 이용권
- 공유수면상 해상경계의 획정에 관한 지자체간의 다툼

○ 관련법령

- 하천법
  - \* 제3조 : 하천의 귀속 → 국유
  - \* 제20조 : 하천유지유량
  - \* 제21조 : 하천 유수의 사용·관리
-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 \* 제16조 : 댐 관리의 기본원칙
  - \* 제24조 : 댐 사용권의 설정

\* 제29조 : 댐 사용권의 성질

● 지방자치법

\*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문제점

○ 갈등구조

● 하천을 흐르는 유수를 국유로 보고 물관리 계획을 수립

\* 사례: 농업인에 대한 관행 수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댐 사용권 설정예정자에게 행정적 독점을 허용

\* 사례: 소양댐 방류수를 둘러싼 수자원공사와 춘천시의 소송

● 연안의 해상경계를 육상경계에 준하여 결정

\* 사례: 아산만을 둘러싼 평택시와 당진군의 분쟁

○ 법적과제

● 하천법상의 법정 수리권과 민법상의 관행 수리권의 조화

● 댐건설법상의 저수 사용권과 댐 하류 유수이용권의 조화

● 해상경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지자체간 분쟁을 예방

□ 개선방안

○ 개선방향

● 민법[관습법]에 의한 유수사용권에 대한 배려

● 댐 하류지역의 전통적 유수사용권에 대한 배려

● 지자체간 해상경계 확정을 위한 절차규정을 정비

○ 입법대안 : 하천법·댐건설법의 개정

● 하천법의 개정

\* 수계별 유역공동체가 사용 가능한 유수의 총량을 결정

\* 관행 수리권에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관리를 일원화

● 댐건설법의 개정

\* 댐 건설 예정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

\* 유수이용 법리에 비추어 저수 이용권을 조정

● 지방자치법의 개정

\* 해상 행정구역 경계설정 기준·방법을 신설

라. 사정변경시 행정기관에 의한 시정조치

□ 현황

○ 주요쟁점

● 공유수면 매립면허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면허철회 가능성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처리된 매립면허에 대한 직권취소

● 매립완료 이후 매립지의 용도변경

○ 관련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제17조 :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제18조 : 지방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제19조 :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제21조 : 실시계획의 승인시 매립면허를 의제처리
- 공유수면매립법
  - \* 제28조 : 매립면허지와 준공인가지에 대한 용도변경 제한
  - \* 제32조 : 직권에 의한 매립면허의 변경·취소

□ 문제점

○ 갈등구조

- 매립면허후 사정변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 조정장치 부재
  - \* 사례: 용도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새만금갯벌
- 특별법상 의제처리된 매립면허는 일반법상 직권취소가 불능
  - \* 사례: 해수호로 전환된 시화호 간척지[산업입지개발법]
- 매립준공후 간단한 용도변경 절차로 이해관계 상충
  - \* 사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항만·산업단지개발

○ 법적과제

- 매립면허후 사정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매립지가격평가
- 특별법에 의한 면허의제와 일반법에 의한 직권취소의 관계
- 매립면허후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요건 및 절차

□ 개선방안

○ 개선방향

- 사정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토지이용 가능성을 모색
- 특별법으로 의제된 매립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법률행위의 목적변경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지양

○ 입법대안 : 공유수면매립법의 개정

- 사정변경시 원래의 관할 행정청은 권한의 위임·위탁을 해지
- 특별법상의 면허의제 효과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지
- 매립면허후 매립목적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요건을 강화

마.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자기결정 기회의 확대

□ 현 황

○ 주요쟁점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입지선정 과정상의 적격성 다툼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상의 사정변경 및 주민참가

○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 \* 제9조제1항 : 입지타당성 조사계획의 공고
  - \* 제9조제3항 :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주민대표의 참가]

- 전원개발촉진법
  - \* 제5조 : 실시계획의 승인

□ 문제점

- 갈등구조
  - 주민대표의 적격성과 적격성 시비 → 의사결정방해
    - \* 사례: 화성시 광역소각장 입지갈등(1993년 이래)
  - 전원개발계획후 사정변경이 있어도 수정기회 부재
    - \* 사례: 과천 청계산 송전선로 노선갈등(1998~2004)
- 법적과제
  -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적격성 검증절차
  - 장기개발계획 수립이후 실시계획 단계에서의 변경

□ 개선방안

- 개선방향
  - 의사결정 참가자들의 대표성과 적격성을 확보
  - 전원개발 실시계획 단계에서 변화된 사정을 재검토
- 입법대안: 폐기물시설촉진법 · 전원개발촉진법 · 지방자치법 개정
  -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선정기준 신설
  - 전원개발 실시계획의 "변경"에 "사업취소"를 포함

#### 4) 공공개발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 제안서

##### 가. 건설교통부 소관

##### (1) 하천법(건설교통부)

□ 현황 및 여건

- 하천의 귀속(제3조)
  -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원칙을 선언
  - 하천을 흐르는 유수의 소유권에 관하여서는 적극 규정 부재
  - 유수의 분배와 이용에 관한 유수사용권(제21조)만 규정
- 하천유지유량(제20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 고시
  - 하천유지유량에 대한 유역의 또는 생태적 수요의 고려 부재
- 하천 유수의 사용 · 관리(제21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유수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관리
  - 특허에 해당하는 유수사용권을 객관적 규정 없이 배분

□ 실 태

- 하천유지유량에 대한 고려
  - 1965년에는 총 이용량 산정에 유지용수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1980년 25억톤, 1990

년 36억톤, 1998년 72억톤을 고려함

- 이와 같이 과거 20년간 유지용수에 대한 수요량을 288% 증가시켜 고려하였으며 수자원 배분에 있어 유지용수를 증가시켜옴.

#### □ 문제점

- 국가계획 수립시 민법상의 유수사용권에 대한 고려가 미흡
  - 물관리기본법(가칭)이 없는 상황에서 하천법상의 특허권 오용
  - 민법상 관행수리권을 폐지하려는 입장 유지

#### □ 개선방안

- ① 민법상 유수사용권을 긍정하고 하천법상 허가수리권과 통합관리
  - 하천법 개정사항
    - 민법상 공유하천 유수사용권을 신고제로 전환
    - 민법상 유수사용권과 하천법상 허가수리권을 동등한 기준으로 관리
- ② 유수사용 한계의 설정
  - 하천법 개정사항
    - 유지유량 산정모델을 개발하여 사용가능한 유량을 설정
    - 하천 점용허가 때 기득 사용자의 동의 및 손실보상

#### (2)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건설교통부)

##### □ 현황 및 여건

- 댐 건설 예정지역의 지정등(제5조)
  - 댐 건설 예정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
  - 기본계획(제7조) 이전 단계에서 댐 건설 예정지역을 지정
- 댐 사용권의 설정(제24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댐사용권 설정예정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
  - 설정예정자에게 행정적 독점을 부여하는 구조
- 댐 사용권의 성질(제29조)
  - 물권으로 보고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물권" 규정으로 인하여 물에 대한 이용권을 소유권과 동일시
- 댐에서 방류된 물에 대한 물 값 시비 발생
  - 관습상 유수사용권과 실정법상의 저수사용권이 충돌
  - 물 분쟁 사례[소양호 : 수자원공사 vs 춘천시] 빈발

##### □ 실 태

- 2001년 현재 조사된 우리 댐 및 저수지의 총수는 약 18,000개소이지만, 대댐 기준에 속하는 댐은 1,206개소
  - 낙동강수계에 전체의 25.5%인 308개 댐이 설치, 목적별로는 관개용수댐이 1,114개 소로서 전체의 92.4%를 차지, 관리기관별로는 농업기반공사가 전체의 65.8%인 794개소
- 갈등사례

- 소양호 물 분쟁사례(수자원공사 ↔ 춘천시)
  - 1995.1월부터 춘천시가 소양댐 하류의 취수장설치, 운영으로 인한 물값 분쟁 (매일 6만톤 취수, 수공에서 10억6천만원 청구소송제기)
- 영월동강댐 건설관련 갈등
  - 1991~1992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1997년 약 700만평의 토지를 댐건설예정지로 지정·고시한 후 댐건설 추진과정에서 찬성 및 반대측간의 갈등으로 '댐건설타당성종합검토를위한공동조사단'중재결과 2000년 댐건설계획을 완전 백지화.

#### □ 문제점

- 기본계획 이전 단계에서부터 갈등발생
  - 후보지에 불과한 댐 건설 예정지역을 둘러싼 갈등 발생
- 물에 대한 특허권자의 독점권을 규정한 하천법의 정신을 승계
  - 유수와 저수의 분배와 이용에 관한 원칙 부재
  - 민법상의 상린관계에 대한 고려 부재
- 댐 사용권자가 저수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행사
  - 하천법은 유수 사용권자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
  - 댐건설법의 저수 사용권자에게도 동일한 지위를 추정

#### □ 개선방안

- ① 댐 건설 예정지역 지정 제도의 폐지
  - 법 제5조(댐 건설 예정지역의 지정등)를 삭제
  - 댐의 입지는 기본계획(법 제7조) 단계에서 결정
- ② 주민 등 이해관계자 참여절차의 보완
  - 기본계획(법 제7조) 수립 단계에서 주민참가 절차도입
  - 주민의견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반영하는 객관적 기준확보
- ③ 저수이용권의 개선
  - 민법상의 유수사용권을 댐건설법의 저수이용권과 연계
  - 댐건설법상의 저수이용권을 하천법의 유수사용권과 연계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건설교통부)

##### □ 현황 및 여건

-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 수립·시행(제5조)
  - 산업입지의 계획적·체계적 공급
  -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 고려 수립
-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
  -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지방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등 승인과 사업시행(제6조 내지 제8조)

##### □ 실태(갈등사례)

- 시화호
  - 1994년 시화방조제 물막이 공사 완료후 시화호의 수질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주변지역의 산업단지와 택지개발로 인해 오염부하량이 증가함.

- 방조제 물막이 완료 후 시화호 저층에는 고염분 수피가 그대로 잔류하여 담수호로서 기능이 떨어지고, 증가한 오염물질이 저층의 수피에 침적되면서 저산소층이 나타났으며, 오염물질이 시화호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적조 등 부영양화가 발생하고 있음.
- 배수갑문 조작을 통한 해수화 후에도 중상류해역의 유기물오염, 중금속·유해화학물질 오염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시화호 간척용지에 대한 추가 이용방안을 둘러싸고 관련부처·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전문가 간에 이견 발생.

#### □ 문제점

##### ○ 사정변경으로 인한 승인철회 절차의 미흡

-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실시계획이 더 이상 존치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실시계획 승인시에 발생한 다양한 법률들에 걸치는 의제효과(제21조)로 인하여 실시계획이 폐지되지 못하고 남아 있음으로 인하여 갈등을 유발

##### ○ 협의기준의 실효성 미흡

- 법 제21조의2(협의기준)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것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실제 별도의 협의기준이 제정·운용되고 있지 않음

#### □ 개선방안

##### ① 승인철회 절차의 보완

- 법 제17조(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철회하고자 할 때에도..."
- 법 제18조(지방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철회하고자 할 때에도..."
- 법 제19조(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철회하고자 할 때에도..."

##### ② 실효성이 없는 협의기준을 정비

- 법 제21조의2(협의기준)를 삭제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4) 연안관리법(해양수산부)

#### □ 현황 및 여건

- 연안관리법에서는 연안통합관리계획(제5조), 연안관리지역계획(제8조), 연안정비계획(제13조)을 수립·고시하도록 정함.

- 2005년 현재,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이행율은 61.1%를 나타냈고, 지자체의 70% 이상이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운영 중에 있음.
- 연안관리의 공간적 범위는 연안관리법(제2조)에 따라 육지측 한계 500m~1km로 한정하고 있고,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는 일종의 용도구역제(Zoning)와 유사한 기능별 연안구역을 설정하고 있음.
  - 연안공간의 보전·이용·개발적 가치에 따라 '절대보전연안', '준보전연안', '이용연안', '개발조정연안', '개발유도연안'으로 구분
- 타법 혹은 타계획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안관리법(제11조)에서는 연안육역에 대해 당해계획·용도지역 등 범위 안에서 이를 수립하되, 연안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계획이나 용도지역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음.

#### □ 실태(갈등사례)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개선과 연안지역 개발
  - 이해관계자 : 지자체, 시민단체
  - 갈등시기 : 2000년 ~
  - 오염우심해역인 특별관리해역내에 준설토 매립지를 주거·상업시설로 활용하려는 마산시와 도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시민단체간의 갈등이 나타남.
    - 시민단체는 마산만내 준설토 매립지를 비점오염원 저감과 도시민의 친수공간조성을 목적으로 한 공원조성을 주장하는 반면, 지자체는 아파트 건설 등 주거·상업용지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 문제점

- 연안육역범위의 육지측 한계 설정과 해역범위 설정기준이 없어 육역·해역의 연결성 혹은 통합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함
  - 광양만, 가로림만과 같은 반폐쇄성만은 유역(Watershed)관리 접근방식을, 신안군, 완도군과 같이 도서로 이루어진 지역은 전 지역을 연안관리범위로 설정해야 함에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연안관리범위를 설정하고 있음.
  - 지자체마다 임의적 기준을 정하여 연안해역 관리범위를 설정하고 있어 향후 해역설정과 관련된 갈등이 유발 우려
- 연안공간·자원관리를 위한 실체적 '관리수단'이 부족
  - 연안통합(지역)관리계획의 수립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음
  -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 일종의 연안 용도구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안통합관리 계획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 도입하지 못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연안관리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있어 실적 저조
- 연안통합관리계획은 타 법률에서 정해진 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규범력이 미약
  -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시 산업입지법등 타법률에 의한 계획, 용도구역 지정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문화 가능성

#### □ 개선방안

##### ① 연안육역 및 해역관리범위 설정기준 조정

- 연안육역(제2조제3호)의 범위를 해양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설정
- 연안해역의 관리범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사전예방과 실질적인 해역관리를 위한 해역관리범위의 설정기준 명시

##### ② 통합계획과 지역계획의 실제적 관리수단 확보

-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절차를 체계화하고, 수립주기를 명시화함으로써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반영 및 변화하는 여건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지역계획의 연안육역 및 해역 '용도구역제'를 통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합리적 연안관리수단을 확보
- \* 연안의 용도구역 설정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세스, 기준, 지표 및 방법을 통해 계획수립의 임의성을 최소화하고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연안이용 갈등을 해소하거나 사전에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

##### ③ 사정변경시 지역계획의 변경을 위한 제도저거 장치 마련

- 연안용도지역의 변경을 요하는 정도의 사업계획의 취소, 철회 등 중대한 사정변경시 자치단체장이 지역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예시): 해수부장관이 계획 승인을 철회하는 방안등 강구
- 제10조(통합계획등의 변경)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 "...지역계획의 변경의 경우에..." → "...지역계획의 변경·철회의 경우에..."

##### ④ 다른 법률이나 계획에 대한 변경요청 권한 강화

-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책·계획·사업 등에 대한 해양수산부장의 변경요청권을 강화
- 해양수산부장이 변경요청을 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합당한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와 방법을 명문화

#### (5) 공유수면매립법(해양수산부)

#### □ 현황 및 여건

- 현행 공유수면매립법(제32조)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전에 공유수면의 상황변경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 또는 인가 등을 취소·변경 가능
- 사정변경이 인정된다면, 관할 감독청(해양수산부)은 제3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매립면허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공유수면매립법(제28조)은 매립면허지와 준공인가지에 대해 20년동안 용도변경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치의 적용이 대통령령에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 실태(갈등사례)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 항만 · 산업단지개발

- 갈등시기 : 2000년 ~ 현재
- 이해관계자 : 지자체, 지역주민, NGO(환경단체)
- 광양항 기본계획에서는 준설토 투기장 건설, 컨테이너 전용부두 조성계획을 하였고, 재정경제부에서는 광양만을 광양컨테이너부두의 전략적 육성과 첨단 집적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컨테이너부두건설,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도록 명시함.
- 섬진강 하구에 위치한 갈사갯벌의 경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나 매립계획이 있는 관계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서 재검토하라고 명시함.
- 매립기본계획에서는 섬진강 수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동화력 쪽으로 매립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2.645km<sup>2</sup>로 약 1/3가량 축소 반영하였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개발 계획에서는 하동지구 갈사만 매립지(약120만평)에 금속산업단지를 유치하도록 조치함

□ 문제점

- 실제 법집행 과정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립면허가 의제되고 사정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철회할 방도가 없어 공유수면매립법(제32조)의 취소·변경 절차의 이행이 곤란
  - 시화호는 방조제 체절 후 환경악화로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른 매립사업 변경을 거쳐야 하나 현행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관할 행정청[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명시하지 않은 법적 흠결, 모호함으로 제도적, 사회적 갈등의 원인
- 매립지, 준공인가지의 목적변경 제한과 관련, 대통령령(제23조)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유"는 해양환경 등 영향의 정도를 고려할 때 "경미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이로 인한 갈등발생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근거한 포괄적 예외조치 등을 비롯하여 용도변경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 불비 또는 규정 모호
  - 이는 공유수면매립법의 의제 조치와 유사한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 바, 절차법으로서 공유수면매립법의 실효적 정책집행 한계의 원인
- 사정변경으로 매립면허의 취소[철회]가 일어날 경우에는 일정한 법정절차[비용편익분석/매립지가격평가/환경영향평가등]를 다시 이행하여야 함.
  - 그러나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 있을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직권취소를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제32조)의 실효성이 없게 됨

□ 개선방안

① 사정변경의 수용

- 사정변경이 일어날 경우(제32조)에 원래의 관할 행정청[해양수산부장관]은 권한의 위임·위탁을 해지하고 해당 행정행위[사업면허]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② 계획의 수립·이행절차의 보강

- 매립기본계획(제4조) 위로 수립하고 기초(수요)조사 부문을 법률에 명시
-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제8조)에 대하여 계획수립 절차를 준용

-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앞당김[통합영향평가법 개정사항] : "매립면허시 → 기본계획 반영 요청시"
- 매립후 2년마다 토지이용계획서의 이행내용을 점검

### ③ 면허의 제한

-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매립만을 인정
- 대규모 매립의 경우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면허
- 해안선 정비를 위한 매립(영 제8조제2항제2호)을 억제
- 면허를 양도·합병하고자 할 경우에 행정청의 허가

## 다. 환경부 소관

### (6) 환경정책기본법(환경부)

#### □ 현황 및 여건

- 국토기본법 제8조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5는 개발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를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정합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환경종합계획(제12조), 시·도환경보전계획(제14조의3), 시·군·구환경보전계획(제14조의4) 등 상위 환경계획과 하위 환경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들 상위 하위 환경계획 간의 정합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제4절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 검토 요구됨

#### □ 문제점

-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은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이나, 현행 법제도는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조화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함
- 상위의 환경계획과 하위의 환경계획 간에 규율내용, 시행시기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하에서는 그 검토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함

#### □ 개선방안

- ① 환경계획간의 유기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기초한 상·하 환경계획들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 \* 환경부 : 국가환경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에 반영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
- ② 국가환경종합계획(법 제12조)의 기간 조정
  - 현행 10년 → 20년
  - 경과조치 :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의 기간과 연계

- 선결문제 : 국토기본법상 우선호(제8조)가 존치될 경우 수용불가

(7)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환경부과)

□ 현황 및 여건

- 입지 선정시에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법 제9조 제3항)
- 입지타당성 조사계획을 공고하도록 규정(법 제9조 제1항)

□ 실태(갈등사례)

- 화성시 광역소각장 입지갈등
  - 시기 : 1993년~현재
  - 이해관계자 : 찬성(화성시 지역주민 일부), 반대(지역주민, 환경단체)
  - 추진과정(3단계)
    - 1단계) 1994년부터 100톤규모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주민반대로 철회
    - 2단계) 2000년부터 300톤규모 광역소각장 건설 재추진. 입지선정위원회 선정절차를 생략하여 추진 무산
    - 3단계) 2003.5월부터 소각장 후보지 공모.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04.1월 봉담읍하가등리 일원으로 결정했으나 유치과정의 적법성 문제로 갈등계속

□ 문제점

- 현실에 있어서는 입지선정단계에서 참여하는 주민대표의 경우 대표성·적격성 여부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입지타당성조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공고된 내용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개선방안

① 입지선정위원회 참여 주민대표 선정기준 마련

-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표성을 갖는 주민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대표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

② 입지타당성조사 공고방법의 다양화

- 입지 타당성조사계획 공고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완
  - \* 예컨대,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등 고려

라. 산업자원부 소관

(8) 전원개발촉진법(산업자원부)

□ 현황 및 여건

- 실시계획 승인의 기준(제5조)
- 전원개발 기본계획 개념의 후퇴
  - 종전 기본계획에 대한 추급효를 이행하기 위한 실시계획 체계

□ 문제점

-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불가

- 오래 전에 수립된 기본계획 자체의 법적 안정성 강화
- 계획 수립후의 사정변경이 인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수정불가
- 장기계획으로 인한 협의적기 상실
  - 행정소송등 당사자 이의신청등 제기 불가
  - 실제 분쟁사례에서 이해당사자들의 권리구제 기회 미흡

□ 개선방안

- ① 변경승인에 “사업취소”를 포함
  - 법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사업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 ②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고려
  - 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사업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바. 행정자치부 소관

(9) 지방자치법(행정자치부)

□ 현황 및 여건

- 지방자치법 등에 해상에서의 행정구역 경계와 관련한 근거법령이 없는 실정
  -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서 정한다.

□ 문 제 점

- 해상경계 관련 법령이 없어 해상 경계를 둘러싼 자치단체간 분쟁·갈등이 빈발
  - 바다모래채취 관할권을 둘러싼 울진군-태안군간 분쟁
  - 아산만을 둘러싼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간 분쟁
  - 울촌산업단지를 둘러싼 순천시와 광양시의 분쟁 등
- 향후 해저자원 활용, 공유수면 매립 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간에 유사한 분쟁이 늘어날 전망
- 평택-당진간 해상경계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 국토지리원의 지형도를 해상경계의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04.9.23)

□ 개선방안

- ①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에 관한 근거법률 정비(제4조관련)
  - 해상경계 미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상경계의 획선 기준 등을 법제화할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간 해상 행정구역 경계 설정 기준, 방법 등을 명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제4조 관련)
- ② 경우에 따라 별도의 근거법률의 제정을 추진

# 부 록

1. 2004년도, 공공갈등관련 법·제도개선지침 연구 회의록
2. 2005년도, 공공개발관련 법률정비방안 연구 회의록

## 1. 공공갈등 관련 법·제도개선팀 회의록 목록(2004.3.11 ~ 2004.12.21)

1차, 2004.3.11	공공사업관련 법·제도개선 방안 논의	전재경, 김유환, 박재길, 권영인, 주재복, 이창훈, 남정호, 남재우, 서철모, 김남웅	지속위 회의실
2차, 2004.3.25	제도정비관련 연구팀원 발제 및 논의	김유환, 박재길, 전재경, 이창훈, 권영인, 남정호, 최지연, 남재우, 서철모, 김남웅	지속위 회의실
3차, 2004.4.8	제동정비관련 연구팀원 발제 및 논의	전재경, 이창훈, 권영인, 남정호, 주재복, 남재우, 서철모, 김남웅	지속위 회의실
4차, 2004.4.22	갈등관리 법제도정비 연구설계(안) 발표 및 제도개선지침(안)작성논의	김유환, 전재경, 권영인, 육근형, 최지연, 정윤희, 주재복, 남재우, 서철모, 김남웅	지속위 회의실
5차, 2004.5.6	갈등사례 분석 정리 발표 및 제도개선 지침(안) 작성 논의	김유환, 전재경, 권영인, 남정호, 육근형, 김광구, 정윤희, 주재복, 남재우, 서철모, 김남웅	지속위 회의실
6차, 2004.5.19	연구발표 및 제도개선 지침(안) 작성 논의	김유환, 김병문, 전재경, 권영인, 남정호, 박재길, 김광구, 정윤희, 주재복, 남재우, 서철모, 김남웅	지속위 회의실
7차, 2004.6.3	농림·축산분야 발표 및 제도개선지침(안) 작성 논의	김유환, 김병문, 전재경, 권영인, 김태호, 남정호, 최지연, 김광구, 정윤희, 남재우, 서철모, 김남웅	지속위 회의실
8차, 2004.6.24	제도개선지침(안) 작성 논의	김유환, 전재경, 박재길, 김광구, 주재복, 이창훈, 서철모, 김남웅	지속위 회의실
9차, 2004.7.6	공공분쟁 및 갈등관련 제도개선지침(안) 작성	전재경, 김유환, 남재우, 서철모, 김남웅	지속위 회의실
10차, 2004.7.15	공공분쟁 및 갈등관련 제도개선지침(안) 검토	박원석, 김홍수, 박일준, 조무영, 박일준, 조무영, 서정호, 김유환, 전재경, 김광구, 이창훈, 최지연, 이상훈, 권영인, 주재복, 남재우, 서철모, 김남웅	지속위 회의실
11차, 2004.12.9	부처 제안서 검토, 제도개선 향후 추진방안	권영인, 남정호, 이상훈, 이창훈, 정윤희, 남재우, 김경원, 김남웅	지속위 회의실

12차, 2004.12.21 부처 제안서 검토, 전재경, 권영인, 남정호, 이상훈, 지속위 회의실  
제도개선 향후 추진방안 이창훈, 주재복, 정윤희, 남재우,  
김경원, 김남웅

**1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법·제도개선팀' 제1차회의 회의록**

- 1) 일시 및 장소: 2004. 3. 11, 10:00~12:00, 지속위 제2회의실
- 2) 참석자: 전재경, 김유환, 박재길, 권영인, 주재복, 이창훈, 남정호, 남재우, 서철모, 김남웅
- 3) 안건: 공공사업관련 법·제도개선 방안 논의
- 4) 토의 및 결정사항
  - . 팀구성·운영의 필요성 공감
    - .. 우리나라 국토이용에 관한 법들이 시대에 뒤진 면이 많고 전략있는 개발이 필요(박재길)
    - ..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발전시키면 전략환경성평가 제도로 발전 가능(이창훈)
    - .. 행정행위의 공정력인정 등 아직 행정우월적인 면이 많음(전재경)
    - .. 사회적변화(정보화, 민주화)를 수용하는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고 키워드는 참여와 협력임(김유환)
  - . 향후 팀회의 운영 계획 논의(안건 및 발제자 결정)
    - .. 제2차 회의 발제자 및 발표 내용
      - ... 김유환 교수(개발법제에 대한 법이론과 개정방향)
      - ... 전재경 연구위원(현행 법령중 개선필요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 ... 박재길 연구위원(국토이용분야 제도개선 필요사항)
    - .. 제3차 회의 발제자 및 발표 내용
      - ... 남정호(해수면 이용과 관련된 제도개선 필요사항)
      - ... 권영인(교통분야 법령중 제도개선 필요사항)
      - ... 주재복(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법령에 대한 고찰)
      - ... 이창훈(환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사항)
    - .. 제4차 회의시에는 2·3차 회의결과를 토대로 한 정비지침 시안 논의
- 5) 차기회의
  - . 일시 및 장소: 2004. 3. 25(목) 10:00, 지속위
  - . 안건: 주제별 발제자 발표

**2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법·제도개선팀' 제2차회의 회의록**

- 1) 일시 및 장소: 2004. 3. 25(목) 10:00~12:00, 지속위 제2회의실
- 2) 참석자: 김유환, 박재길, 전재경, 이창훈, 권영인, 남정호, 최지연, 남재우, 서철모, 김남웅
- 3) 안건: 제도정비관련 연구팀원 발제 및 논의

#### 4) 토의 및 결정사항

##### . 제도정비 관련 주제별 발표

- .. 공공분쟁에 있어서의 갈등관리를 위한 법제정비의 방향(김유환교수)
  - ... 공공분쟁의 원인과 대책
  - ... 공공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법제정비가 기여할 점
- .. 공공사업 관련 계획법제의 구조와 과제(전재경 연구위원)
  - ... 국토관리 부문
  - ... 연안관리 부문
  - ... 주민참가 부문
- .. 갈등발생의 법제도적 요인과 제도정비 추진방안(박재길 연구위원)
  - ... 국토이용 및 관리분야의 공공사업 유형
  - ... 갈등발생의 구조적 요인
  - ... 갈등의 구조적 요인 분석결과
  - ... 지침안 마련 및 부처협의 추진

#### 5) 차기회의

- . 일시 및 장소: 2004. 4. 8(목) 10:00, 지속위
- . 안건: 제도정비관련 발제사항 발표 및 제도개선지침 작성방안 논의

### 3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법·제도개선팀' 제3차회의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2004. 4. 8(목) 10:00~12:00, 지속위 제2회의실

2) 참석자: 전재경, 이창훈, 권영인, 남정호, 주재복, 남재우, 서철모, 김남웅

3) 안건: 제도정비관련 연구팀원 발제 및 논의

#### 4) 토의 및 결정사항

##### . 제도정비 관련 주제별 발표

- .. 환경갈등의 분류 및 해소방안 (발제: 이창훈 연구원)
  - ... 갈등의 발생원인과 정책방안 연구동향
  - ... 환경갈등의 개념과 분석모형
  - ... 환경갈등 예방과 해소의 정책방안
- .. 해양수산분야 이해상충 기본구조(발제: 남정호 연구원)
  - ... 해양수산분야 이해상충 기본구조
  - ... 해양수산분야 이해상충의 특징과 발생원인
  - ... 해양수산분야 이해상충 대상 공공사업 사례
  - ... 해양수산분야 이해상충 조정방안
- .. 교통분야 법령 중 제도개선방안(발제: 권영인 실장)
  - ...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문제
  - ... 도로사업의 시민참여(PI) 확대방안
- .. 공공사업을 둘러싼 정부간 갈등조정기능의 강화방안(발제: 주재복 연구원)
  - ... 정부간 갈등조정기능의 강화 필요성

... 현재 정부간 갈등조정제도 및 방식

5) 차기회의

. 일시 및 장소: 2004. 4. 22(목) 10:00, 지속위

. 안건: 제도정비개선(안) 마련을 위한 전체설계도 발제(발표) 및 토의

**4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법·제도개선팀' 제4차회의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2004. 4. 22(목) 10:00~12:00, 지속위 제2회의실

2) 참석자: 김유환, 전재경, 권영인, 육근형, 최지연, 정윤희, 주재복, 남재우, 서철모, 김남웅

3) 안건: 갈등관리 법제도정비 연구설계(안) 발표 및 제도개선지침(안) 작성 논의

4) 토의 및 결정사항

. 발제사항 발표

.. 갈등관리 법·제도 정비 연구설계(발제: 전재경 연구위원)

... 연구진의 분석보고서 작성

.... 사업목표와 기대효과를 제시함

.... 9개 분야에 걸친 현상과 전망을 기술함

.... 각 분야별·항목별 내용(제도, 계획프로그램, 실태·문제점, 갈등현상, 대안)을 담음

... 기관별 제안서의 취합

.... 해당 기관들에 점검표(Check list)를 보냄

.... 점검표는 분석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범주(실체의 적정, 절차의 적정, 법과 경제, 사회적 변화, 법집행상의 효율, 입법기술)에 따라 요약·분류함

.... 점검표에는 분야별 정비가 예상되는 주요항목을 예시함

.... 해당기관들에 법령정비제안서(정비사항, 정비요지, 정비사유, 선결조건, 후속 조치, 정비시기)를 분석보고서와 함께 보냄

.... 해당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음

... 결과정리

.... 기관별 제안서를 분석하여 형식(법리쟁점, 패러다임, 집행기구, 인적자원, 물적자원,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따라 진단함

.... 진단을 토대로 부문별 권고안(결론) 작성함

.. 분야별 검증된 대표적 사례를 분석보고서 양식에 맞게 정리·작성(시뮬레이션) 후 구체적 제도정비지침(안) 작업을 실시

.. 사례분석 및 정리 분담

... 시화호 사례(남정호, 육근형, 최지연)

... 수산관련 사례(전재경)

... 사패산 사례(권영인)

.. 에너지·자원, 농림축산분야 연구팀원 보강 필요

5) 차기회의

- . 일시 및 장소: 2004. 5. 6(목) 10:00, 지속위
- . 안건: 갈등사례분석·정리 발표 및 지침(안)작성 논의

**5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법·제도개선팀' 제5차회의 회의록**

- 1) 일시 및 장소: 2004. 5. 6(목) 10:00~13:00, 지속위 제2회의실
  - 2) 참석자: 김유환, 전재경, 권영인, 남정호, 육근형, 김광구, 정윤희, 주재복, 남재우, 서철모, 김남웅
  - 3) 안건: 갈등사례 분석 정리 발표 및 제도개선 지침(안) 작성 논의
  - 4) 토의 및 결정사항
    - . 사례 분석 발표
      - .. 경기도 시흥 오이도 사례(전재경 연구위원)
        - ... 서설
        - ... 법률생활관계의 변화
        - ... 실태조사 자료
      - .. 시화호 사례(남정호 연구위원)
        - ... 시화호 조성의 배경 및 목적
        - ... 시화호 관련일지
        - ... 시화호 갈등의 원인, 특징
        - ... 시화호 관련 각 부처·기관 입장 및 대응방안
      - .. 쓰레기 소각장 건설 사례(이창훈 연구위원)
        - ... 개요
        - ... 제도와 프로그램
        - ... 갈등현상
        - ... 대안
      - .. 사패산 관통도로 사례(권영인 실장)
        - ... 사업개요
        - ... 갈등의 전개 및 특성
        - ... 사업시행의 반대사유
        - ... 갈등해소의 배경
        - ... 관련법제의 현황 및 개정방향
    - . 사례 발표내용의 재구성 및 보완 필요함
    - . 제도개선지침(안) 내용 구성 방법 논의
      - .. 보편적 지침(안)마련 후 예시 및 개선사항 제시
- 5) 차기회의
- . 일시 및 장소: 2004. 5. 19(수) 10:00 / 지속위
  - . 안건
    - .. 사례분석·정리 및 적용 재논의

.. 발표사례의 체크리스트 분석 및 개선방향 발표

**6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법·제도개선팀' 제6차회의 회의록**

- 1) 일시 및 장소: 2004. 5. 19(수) 10:00~12:00, 지속위 제2회의실
- 2) 참석자: 김유환, 김병문, 전재경, 권영인, 남정호, 박재길, 김광구, 정윤희, 주재복, 남재우, 서철모, 김남웅
- 3) 안건: 연구발표 및 제도개선 지침(안) 작성 논의
- 4) 토의 및 결정사항

. 갈등사례 분석(근거법령, 실태 및 문제점,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표

.. 전재경 연구위원

- ... 매립지 소유권 관련 분야
- ... 면허후 사정변경 관련 분야
- ... 수산자원관련 분야

.. 박재길 연구위원

- ... 신도시 건설추진 관련 사례
- ... 광역협오시설 입지선정 및 결정 관련 사례
- ...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 관련 사례

.. 남정호 연구위원

- ... 보호구역 지정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
- ... 발전소 온배수 배출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 ... 마산항 환경개선과 매립지 이용을 둘러싼 민간단체와 행정기관간 갈등
- ... 시화호 갈등사례 제도개선 필요사항
- ... 바다모래 채취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

.. 권영인 실장

- ... 교통시설의 투자평가기준
- ... 교통시설 타당성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 ...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의 건설지연

.. 이창훈 연구위원

- ... 쓰레기 소각장 건설 분야
- ... 국립공원 분야
- ...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야
- ... 환경·생태 분야

.. 주재복 연구위원

- ... 댐건설 절차 및 법적근거와 개선방안
- ... 영월댐 건설사업의 단계별 진행사항과 갈등내용
- ...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단계별 진행사항과 갈등내용

. 제도개선 지침(안) 구성 발표(서철모 팀장)

.. 갈등관련 제도개선의 목표·수단 및 기대효과

- .. 분야별 갈등현황 및 개선방향
  - .. 공공분쟁을 야기하는 제도의 유형
  - .. 행정사항
  - . 차기회의 이전까지 각 분야별 갈등현황 및 개선방향 보완 제출 및 취합정리
- 5) 차기회의
- . 일시 및 장소: 2004. 6. 3(수) 10:00, 지속위
  - . 안건: 제도개선 지침(분야별 갈등현황 및 개선방향) 검토 및 작성

**7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법·제도개선팀’ 제7차회의 회의록**

- 1) 일시 및 장소: 2004. 6. 3(목) 10:00~12:00, 지속위 제2회의실
- 2) 참석자: 김유환, 김병문, 전재경, 권영인, 김태호, 남정호, 최지연, 김광구, 정윤희, 남재우, 서철모, 김남웅
- 3) 안건: 농림·축산분야 발표 및 제도개선지침(안) 작성 논의
- 4) 토의 및 결정사항
  - . 농업분야 제도개선사항 분석발표(김병문 변호사)
    - .. 농업분야 갈등의 특성 및 현황
      - ... 농업분야의 갈등의 특성
      - ... 농업분야 갈등 유형
    - .. 주요사례에 대한 검토
      - ... 농지제도를 둘러싼 갈등
      - ... 종자분쟁
      - ... 농업협동조합을 둘러싼 갈등
  - . 제도개선지침(안) 검토 및 논의
    - .. 제시자료나 사례에 국한된 개선에 머무르지 않기 위한 범위확대 필요
    - .. 추가적인 제도개선 관련 법조문이나 쟁점선별 작업 필요
    - .. 공통적으로 관계되는 법령(예: 공토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정비방안 별도정리
    - .. 물관리(댐 등) 분야 추가
    - .. 법치주의 확립, 법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 강조필요
    - .. 분야별 갈등사례중 꼭 검토할 분야 도출 후 지침 제시
    - .. 법령정비제안서 양식
      - ... 부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안서 작성예시(Sample) 제공
  - . 차기회의에서 에너지·산업분야 제도개선사항 분석발표(김태호 사무처장)
  - . 연구 분담
    - .. 제도개선지침(안)의 “분쟁을 야기하는 제도의 유형” 구체화(전재경 연구위원)
    - .. 제도개선이 필요한 법령리스트 작성 배포(전재경 연구위원)
    - .. 부처제공을 위한 법령정비제안서 샘플(sample) 작성(전재경 연구위원)
    - .. 제도개선지침(안)의 전반적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정리(comment)(김유환 교수)

5) 차기회의

- . 일시 및 장소: 2004. 6. 24(목) 10:00, 지속위
- . 안건: 제도개선 지침(안) 최종 검토 및 정리

**8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법·제도개선팀' 제8차회의 회의록**

- 1) 일시 및 장소: 2004. 6. 24(목) 10:00~12:00, 지속위 제2회의실
- 2) 참석자: 김유환, 전재경, 박재길, 김광구, 주재복, 이창훈, 서철모, 김남웅
- 3) 안건: 제도개선지침(안) 작성 논의
- 4) 토의 및 결정사항
  - . 공공분쟁 갈등관련 제도개선지침(안)의 일관성 검토
    - .. 각 분야별 지침(안) 작성에 있어 기술의 구체성 정도 조정과 일관성 필요
    - .. 개선방향의 기술에 있어서는 실무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화 필요
    - .. 각론뿐만 아니라 총론에서도 제도개선방향 기술이 보다 구체화되는 것이 바람직
    - .. 문제점 지적에 이은 개선방향지침의 제시로 문제점 지적이 무시되지 않도록 할 필요 있음
    - .. 개선방향 제시는 그것이 어떠한 제도개선을 요하는 것인가와 결부되도록 작성 필요
    - .. 제도개선지침(안)에서 합의형성적참여제도를 통한 갈등소지를 사전차단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제시 여지에 대한 검토 필요
    - .. 행정정책의 일관성 및 법집행의 엄정성을 위한 제도적 고려 검토
    - .. 행정절차나 정보공개는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한 교육의 의미도 있음
      - ... 행정절차의 실질적 확충과 심의적 의사결정방식의 도입에 있어 학습과 교육 관점에서의 구상이 요구됨
  - . 제도개선의 목표·방법 및 기대효과 기술
  - . 사례 및 "법령정비제안서" 작성예시(Sample) 소개
  - . 해당부처와의 합동회의 개최 결정
    - .. 일시 및 장소: 2004. 7. 15(목) 14:00, 지속위
    - .. 참석대상: 연구팀 전원, 관련부처 담당과장(추후명단확정)
    - .. 안건: 제도개선지침 시달 및 부처의견 수렴
  - . 분야별 제출사항(기한: 2004. 6. 30(수))
    - .. 각 분야별 '법령정비제안서' 1개 작성 ("법령정비제안서(견본)" 참조) 제출
    - .. 각 '분야별 갈등현황 및 개선방향' 보완 ("제도개선지침(안) 일관성검토" 참조) 제출
- 5) 차기회의(제도개선지침 작성회의)
  - . 일시 및 장소: 2004. 7. 6(화) 11:00, 지속위
  - . 참석대상: 김유환 교수, 전재경 연구위원, 지속위 담당자

. 안건: 제도개선 지침(안) 작성

**9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법·제도개선팀’ 제9차회의 회의록**

- 1) 일시 및 장소: 2004. 7. 6(목) 11:00~12:30, 지속위 제2회의실
- 2) 참석자: 김유환 이화여대 법대 교수, 전재경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남재우 기획운영 실장, 서철모 갈등관리제도팀장, 김남웅 사무관
- 3) 안건: 공공분쟁 및 갈등관련 제도개선지침(안) 작성
- 4) 토의 및 결정사항
  - . 공공분쟁 및 갈등관련 제도개선지침(안) 내용 검토 및 보완(추가할 사항)
    - .. 국토이용 분야
      -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과의 구조적 갈등사례 추가
        - .... 계획간 상호 고려·대화, 유기적 연계시스템 모색
    - .. 환경·생태 분야
      - ... 야생동식물보호 분야 갈등사례 추가
      - ...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분야 갈등사례 추가
      - ... 골프장 및 스키장 건설관련 사례 추가
    - .. 에너지·자원 분야
      - ... 방폐장관련 갈등사례 추가
    - .. 교통·운송 분야
      - ... 공항건설이나 소음관련 갈등사례 추가
    - .. 행정사항
      - ... 제도개선 취지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증진 도모
        - .... 지침시달 후 중간 점검 회의나 부처합동 워크숍 개최 추진(8월 ~ 9월 중)
        - .... 참여연구진 및 연락처, 연구추진 방법·일정 명기
      - ... 법령정비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제공
        - .... 지침(안)의 대상은 “공공개발사업”임을 명시
        - .... 사례에 국한하지 않고 부처 자체 문제점 검토 및 제도개선 유도
- 5) 차기회의(관련부처 합동회의)
  - . 일시 및 장소: 2004. 7. 15(목) 14:00, 지속위
  - . 참석대상: 연구팀 전원, 관련부처 담당과장
  - . 안건: 공공분쟁 및 갈등관련 제도개선지침(안) 설명 및 부처의견 수렴

**10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법·제도개선팀’ 제10차회의 회의록**

- 1) 일시 및 장소: 2004. 7. 15(목) 14:00~16:30, 지속위 제2회의실
- 2) 참석자: 행정자치부(법무담당관실) 박원석 서기관, 농림부(행정법무담당관실) 김홍수 사무관, 산업자원부(법무담당관) 박일준 과장, 건설교통부(갈등관리기획단) 조무영 서기관, 해양수산부(혁신담당관실) 서정호 사무관, 김유환 교수

(이화여대), 전재경 연구위원 (법제연구원), 김광구 연구원(국토연구원), 이창훈 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지연 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상훈 박사 (에너지대안센터), 권영인 실장(교통개발연구원), 주재복 연구원(지방행정연구원), 남재우 지속위 기획운영실장, 서철모 갈등관리제도팀장, 김남웅 사무관

3) 안건: 공공분쟁 및 갈등관련 제도개선지침(안)

4) 토의 및 결정사항

- 제도개선지침(안) 추진배경·경과 및 향후 일정 설명(기획운영실장)
  - .. 향후 일정
    - ... 지침(안) 확정 및 시달(8월초), 기관별 제도개선 사례 발굴(8월 ~ 10월)
    - ... 연구팀과 부처간 2~3회 회의 또는 워크숍 개최(8월 ~ 9월)
    - ... 부처의 제도개선방안 취합 및 제도개선 내용 협의조정(11월)
    - ...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 진행(12월), 제도개선 보고서 작성(12월 말)
    - ... 제도개선 추진계획 대통령 보고 (2005년 1월)
- 제도개선지침(안) 내용 및 고려사항 설명(분야별 연구자)
  - .. 제도개선은 연구팀에서 작성한 사례의 범주에 국한된 것이 아님
  - .. 법령정비제안서의 정비시기를 2005년도에 국한하지 않고 유연성을 두고 기재 바람
  - .. 여러 부처에 걸쳐 관계되어 있는 제도개선 사항들은 부처간의 공동 논의·협력 필요함
- 토론 및 부처 의견수렴
  - .. 제도개선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
  - .. 제도개선의 실무적인 추진에 있어 기대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유연성 필요 지적
    - ... 의도하지 못했던 부작용까지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함
    - ... 부처내 각 부서의 입장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총괄적 입장에서 줄속 처리되지 않아야 함
  - .. 방침을 통해 주관부서(소관)를 명확히 하여 추진 건의
  - .. 제도개선지침(안)이라는 이름 대신 다른 제명 사용 건의
  - .. 다음주(7. 24) 까지 지속위로 부처의견 제출
  - .. 지침의 검증 및 의견조율 단계를 거치기 위한 예비모임 갖기로 함
    - ... 부처에서 제출한 실무의견을 추가하여 지침안 확정 후 부처 합동회의 개최 (8월초)

5) 차기회의

- 일시 및 장소: 2004. 7. 29(목) 10:00, 지속위
- 참석대상: 연구팀원
- 안건: 공공분쟁 및 갈등관련 제도개선지침(안) 부처의견 검토 및 분야별 사례 추가 발굴 논의

**11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법·제도개선팀' 제11차회의 회의록**

- 1) 일시 및 장소: 2004. 12. 9(목) 10:00~11:30, 지속위 제2회의실
- 2) 참석자: 남재우 기획운영실장, 권영인 교통개발연구원 실장, 남정호 한국해양 산 개발원 연구원, 이상훈 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 이창훈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정윤희 국토연구원 연구원, 김경원 팀장, 김남웅
- 3) 안건
  - 부처 제안서 검토
  - 제도개선 향후 추진방안
- 4) 토의 및 결정사항
  - 법·제도개선지침 관련부처 제안서 검토
    - .. 국토이용 분야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외 6건
      - .... 별도의 세부검토 및 보완키로 함
    - .. 환경·생태 분야
      -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갈등(주민의견수렴 내실화)
      -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갈등(환경영향평가서작성비용 현실화)
      -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갈등(환경영향평가항목 및 범위 확정제도 의무화)
      - .... 환경영향평가법 정비 적절, 중·장기적 제도정비 제안키로 함
    - .. 에너지·자원 분야
      -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관련갈등
      - .... 갈등사안 재정리 및 제시
    - .. 교통·운송 분야
      -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의 보완
      - .... PI(주민참여, Public Involvement)부문 보완 필요
    - ... 해양·수산분야
      - ... 항만명칭 변경 및 신규결정 갈등
      - .... 추가 사례정리 제시 및 제안서 보완키로 함
  - 향후 제도개선 방안
    - .. 추가과제 발굴 및 부처와의 합동회의 또는 방문회의를 통한 추가과제 확정
    - .. 미협의 사항은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집중토론회, 의견수렴회의에서 확정
    - .. 차기회의시까지 분야별 추가과제발굴(법령제안서 포함)
- 5) 차기회의
  - 일시 및 장소: 2004. 12. 21(화) 10:00, 지속위 제2회의실
  - 안건: 추가 발굴 사례 및 제안서 검토

**12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법·제도개선팀' 제12차회의 회의록**

- 1) 일시 및 장소: 2004. 12. 21(화) 10:00~12:30, 지속위 제2회의실
- 2) 참석자: 남재우 기획운영실장, 전재경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권영인 교통개발연구원 실장,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이상훈 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주재복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정윤희 국토연구원 연구원, 김경원 팀장, 김남웅
- 3) 안건
  - 부처 제안서 검토
  - 법·제도개선 향후 추진방안
- 4) 토의 및 결정사항
  - 법·제도개선지침 관련부처 제안서 검토
    - .. 국토이용 분야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 주요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 개최시 행정절차법 38조 1항에 포함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모두 이행토록 함이 바람직
      - ...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 .... 국가계획을 도시계획에서 반영토록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임
    - .. 법제도개선 방안 보완
      - .. 기본방향
        - ... 미시적인 조항수정 보다는 큰 틀에서 철학과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모색
      - .. 운영시스템 변경
        - ... 연구팀에서 도출된(문제제기 항목) 안건을 가지고 부처별 직접접촉 후 제도개선 사항 결정
      - .. 향후 일정
        - ... 분야별 개선 대상법률 선정·검토 및 문제제기(1~3월)
        - ... 부처별 협의 및 조정회의(4~5월)
        - ... 최종보고서 작성(6월)
    - .. 연구팀 워크숍 개최
      - .. 집중토론 및 의견교환·통합을 위한 워크숍 개최 필요(일정 추후결정)
  - 차기회의 준비
    - .. 향후 연구팀 활동의 전체적 논의의 틀 정리(전재경 연구위원, 10일까지 자료 제출)
- 5) 차기회의
  - 일시 및 장소: 2005. 1. 13(목) 10:0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회의실
  - 안건: 법·제도개선 향후 일정 및 연구팀 활동의 전체적 틀 정리·논의

2. 2005년 공공개발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방안 연구팀' 회의록 목록  
(2005.1.13~ )

1차, 2005.1.13	(법제개선 연구팀) 연구방향 발제 및 토의	전재경, 김유환, 권영인, 남정호, 이창훈, 김상조, 정윤희, 육근형, 남재우, 김경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차, 2005.1.13	(법제개선 연구팀) 연구방향 발제 및 토의	전재경, 권영인, 남정호, 주재복, 이창훈, 박형서, 정윤희, 최지연, 함태성, 최환용, 김경원,	국토연구원
1차, 2005.1.13	(법제개선 연구팀) 연구방향 발제 및 토의	전재경, 김유환, 권영인, 남정호, 이창훈, 김상조, 정윤희, 육근형, 남재우, 김경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차, 2005.3.16	(법제개선 연구팀) 연구방향 발제 및 토의	전재경, 권영인, 남정호, 주재복, 이창훈, 박형서, 정윤희, 최지연, 함태성, 최환용, 김경원,	국토연구원
3차, 2005.4.19	(법제개선 연구팀) 개선과제 발굴.토의	전재경, 최환용, 김치환, 권영인, 성현곤, 김훈	교통개발연구원
4차, 2005.4.29	(법제개선 연구팀) 개선과제 발굴 및 토의	전재경, 함태성, 최환용, 김치환, 박형서, 박태선, 류승환, 박은관, 정윤희	국토연구원
5차, 2005.4.29	(법제개선 연구팀) 개선과제 발굴 및 토의	전재경, 함태성, 최환용, 김치환, 남정호, 이성우, 최지연, 육근형,	해양수산개발원
6차, 2005.5.3	(법제개선 연구팀) 개선과제 발굴 및 토의	전재경, 최환용, 김광임, 송영일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7차, 2005.5.16	(법제개선 연구팀) 개선과제 발굴 및 토의	전재경, 함태성, 최환용, 김치환 이창우, 김운수, 조용현, 김영란, 유기영	서울시장개발연구원
8차, 2005.5.19	(법제개선 연구팀) 개선과제 발굴 및 토의	전재경, 최환용, 주재복, 한표환, 김현호,	지방행정연구원
9차, 2005.6.8	(법제개선 연구팀) 연구초안 검토회의	염태영, 전재경, 최환용, 김치환, 함태성, 권영인, 주재복, 이창훈 최지연, 김경원	정부청사617호실

10차, 2005.7.21 (법제개선 연구팀) 연구초안 보고회의	고철환, 엄태영, 전재경, 김경원, 엄두용	정부청사617호실
11차, 2005.7.25~(법제개선 연구팀) 부처 1차협의시달	엄태영, 윤승준, 전재경, 최환용, 김학주, 신관호, 오승익, 강원규	정부청사613호실
12, 2005.8.17,8.19~(법제개선 연구팀) 관계부처 협의	전재경, 최환영, 함태성, 정의경, 이정현, 남상현, 허용, 장만석, 이한세), 최제호, 정삼정, 김경원 유승광, 박광호, 박한업, 정진섭 서병규, 류중빈, 김선종, 최민구, 용환득, 조인묵) 정의경, 김경원	지속위원회의실

**1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전문위원회:공공개발 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방안 연구팀' 제1차회의 회의록**

- 1) 일시 및 장소: 2005. 1. 13(목) 10:00 ~ 13:00 / 해양수산개발원 회의실
- 2) 참석자: 남재우 기획운영실장, 전재경 법제연구원 연구실장, 김유환 이화여대교수, 권영인 교통개발연구원 실장, 남정호 한국해양 수산 개발원 연구원, 이창훈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김상조 국토연구원 연구원, 정윤희 국토연구원 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육근형·최지연 연구원, 김경원 팀장
- 3) 안건
  - . 법.제도개선 향후추진방안 토의
  - . 법.제도개선팀 재구성(팀장 선정, 전문위원회와의 관계 설정등)
- 4) 토의 및 결정사항
  - . 향후 법.제도개선팀 연구활동 방향(초안) 발제(전재경 박사)
    - .. 연구활동에 대한 중간평가
    - .. 향후 보완 추진할 목표 및 추진방법
    - .. 추진주체 및 추진일정
    - .. 검토대상 법률(연구범위) 등
  - . 향후 추진방안 토의결과
    - \* 대체로 발제내용에 공감하면서도 연구를 위한 기본여건(인력, 예산, 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부실한 연구를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함
    - .. 연구범위 : 7~8개분야로 구분(국토,환경,연안,에너지,수자원,산지..등)
    - ... 연구일정 등 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핵심사안 압축

- ... 법제팀(법제연구원)에서 분야별 전문가 토의를 거쳐 핵심과제 도출
- .. 연구기간 : 6월까지 연구
- ... 분야별 개선 대상법률 선정·검토 및 문제제기(3월까지)
- ... 부처별 협의 및 조정회의(4~5월)
- ... 최종보고서 작성(6월)
- .. 추진주체 : 분야별 전문가를 재검토하여 필요시 보강 추진
- .. 행정지원 :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지원 확대(용역비 또는 원고료 등)
- . 연구팀 역할분담 및 전문위원회와 연계 강화방안
  - .. 팀장(전재경 박사), 총괄자문(김유환 교수), 기타위원은 분야별 연구책임
  - .. 팀장 등 주요연구진은 전문위원에 위촉하여 전문위원회와 연계 및 위상 강화
- . 기타 향후추진방향 준비
  - .. 주요 분야별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토의계획 수립 및 진행(전재경 위원)

5) 차기회의

- . 일시 및 장소: '05. 2. 22(수) 10:00, 국토연구원 회의실
- . 안건 : 법·제도개선 연구대상분야 및 세부추진방향 논의

**2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전문위원회:공공개발 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 방안 연구팀' 제2차회의 회의록**

- 1) 일시.장소 : 2005. 3. 16(수) 09:30~12:30, 국토연구원소회의실
- 2) 참석자: 전재경 법제연구원 연구실장(팀장), 권영인 교통개발연구원 실장,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박형서 국토연구원 연구원, 정윤희 국토연구원 연구원, 주재복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함태성. 최환용 법제연구원 연구원, 김경원 팀장
- 3) 안건
  - . 공공사업관련 갈등관리 법제 개선 연구의 방향, 추진일정 토의
- 4) 토의 및 결정사항
  - . 향후 법·제도개선팀 연구활동 방향(초안) 발제(전재경 박사)
    - .. 연구 추진방향 및 개요(연구목표, 범위, 방법, 기대효과)
  - . 향후 추진방안 토의결과
    - .. 과제명 : 공공사업관련 갈등관리법제 개선 연구
    - .. 연구범위(대상) : 공공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을 중심으로 이해당사자 참여 등의 프로세스 측면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법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 제시
    - .. 연구방법 : 주요법률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주민(이해당사자) 참여, 행정절차,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면에서의 갈등유발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대안 제시
    - .. 연구진 구성.운영 : 기존 연구팀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법제연구원의 전문가 3명(김치환, 함태성, 최환용)이 총괄지원, 관련연구기관별로 관련전문가 협력을 받아 추진

- .. 연구결과보고 : 연구결과 중에서 부처협의를 거쳐 단기적으로 실행할 과제와 당장 도입이 어려운 과제는 장기적 과제로 제안하는 방향으로 정리
  - \* 단, 결과보고서 작성방향은 지난해 부처 동의를 거쳐 제안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연구결과를 재검토 후 설정
- .. 향후 추진일정
  - ... 기본연구 진행(4월까지), 연구결과 초안 정리(5월초), 부처협의(5월~6월초), 보고서 작성(6월말~7월초), 연구결과 보고(7월말)
  - \* 매주 1회 전문가회의(법제연구원 + 해당연구원 합동), 합동워크샵 병행
- .. 지속위 행정지원 사항(지속위)
  - ... 기본연구진 및 협력기관 참여자 회의비, 식비, 기본연구결과 정리를 위한 워크샵 경비 등 예산 적극지원
  - ... 연구 참여기관 소속 연구진에 대한 지속위 협조 공문 발송 조치

#### 5) 차기회의

- . 전체위원회의 : 미정, 추후 법제연구원(전재경박사)에서 논의 결정
- . 연구분야별 연구기관과 합동회의 : 매주 1회정도 개최(세부일정 추후결정)

### 3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전문위원회: '공공개발 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 방안 연구팀' 제3차회의 회의록

- 1) 일시.장소 : 2005. 4. 19(화) 11시 ~ 14시, 교통개발연구원 회의실
- 2) 참석자 :
  - . 주무연구기관(한국법제연구원) : 전재경 박사(팀장), 최환용박사, 김치환 박사
  - . 협동연구기관(교통개발연구원) : 권영인 박사, 성현곤 박사, 김훈 박사
- 3) 안건 : 공공사업 관련 갈등관리 법제 개선과제 발굴 의견수렴
- 4) 주요 의견수렴 내용
  - . 도로법
    - .. 도로구역의 결정
    - .. 구분지상권 : 토지 상하 소유권의 범위 여하
    - .. 광역교통조합의 지위와 기능
  - . 고속국도법
    - ..고속국도건설기본계획에 관한 의사결정절차 여하
    - ..제4차 국토계획과의 관계
  - .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 ..두 법간의 상충 :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등
    -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
    - ..국토계획및이용법과 항만법의 충돌 문제
  - . 철도건설법

- ..광역철도지정단계의 갈등구조
- ..기본계획 수립 과정 및 공사단계

**4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전문위원회: ‘공공개발 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 방안 연구팀’ 제4차회의 회의록**

- 1) 일시.장소 : 2005. 4. 29(금) 10:00~14:00, 국토연구원 회의실
- 2) 참석자
  - . 주무연구팀(법제연구원) : 전재경 연구팀장, 함태성박사, 최환용박사, 김치환 박사
  - . 협동연구기관(국토연구원) : 박형서 박사, 박태선 박사, 류승한 박사, 박은관 박사, 정윤희 연구원
- 3) 안건 :공공사업 관련 갈등관리 법제 개선과제 발굴 의견수렴
- 4) 주요 의견수렴 내용
  - . 국토기본법 및 국토계획이용법
    - .. 국토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의 수립과 이행
    - ..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등의 조정
    - .. 국토계획의 배타성 : 다른 법률과 계획에 대한 우월적 지위
  - . 하천 법
    - .. 수자원의 공공성과 자원특허에 관한 이용원칙 : 하드웨어와 콘텐츠의 구분
  - . 하류주민들의 이용권
    - .. 방2급 하천의 지정 또는 폐지
  - . 댐건설법
    - .. 댐건설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
    - .. 댐주변지역지원사업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의 의제
    - .. 국토계획이용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 . 도시개발법
    - .. 상위법(기본법)체계에서 계획간 대화
    - .. 알박기 및 소유자와 사업자간의 갈등
    - .. 개발방식의 결정 : 지목별 개발방식 차등화 가능성 여하
    - .. 환지방식과 전면매수방식의 효율성

**5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전문위원회: ‘공공개발 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 방안 연구팀’ 제5차회의 회의록**

- 1) 일시.장소 : 2005. 5. 2(월) 11시~14시, 해양수산개발원 회의실
- 2) 참석자

- . 주무연구팀(법제연구원) : 전재경 연구팀장, 함태성 박사, 최환용 박사, 김치환 박사
  - . 협동연구기관(해양수산개발원) : 남정호 박사, 이성우 박사, 최지연연구원, 육근형연구원
- 3) 안건 : 공공사업 관련 갈등관리 법제 개선과제 발굴 의견수렴
- 4) 주요논의내용
- . 연안관리법
    - .. 연안육역의 범위조정
    - ..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절차 체계화
    - .. 통합계획의 수립주기 명시 및 연안용도구역 지정
  - . 공유수면매립법
    - ..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내용
    - .. 공유수면매립 면허의 기준과 취소
  - .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 ..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골재채취법
    - .. 골재채취허가의 제한
    -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및 골재수급안정조치
    - .. 골재채취구역 변경등의 명령

**6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전문위원회: ‘공공개발 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 방안 연구팀’ 제6차회의 회의록**

- 1) 일시.장소 : 2005. 5. 3(화) 15시~18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회의실
- 2) 참석자 :
- . 주무연구팀(법제연구원) : 전재경 연구팀장, 최환용박사
  - . 협동연구기관(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김광임박사, 송영일박사, 이창훈박사
- 3) 안건 : 공공사업 관련 갈등관리 법제 개선과제 발굴 의견수렴
- 4) 주요논의내용
- . 환경정책기본법
    - .. 환경계획의 규범력
    - ..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대화 : 사전환경성 검토의 실효성 여하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 .. 입지선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 ..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방법의 민주성
    - .. 환경영향평가법
      - ..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연계
      - .. 건설교통부의 환경성검토 훈령과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중복

**7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전문위원회: '공공개발 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 방안 연구팀' 제7차회의 회의록**

- 1) 일시.장소 : 2005.5.16(월)10:30~13:3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회의실
- 2) 참석자 :
  - . 주무연구팀(법제연구원) : 전재경 연구팀장, 함태성박사, 최환용박사, 김치환 박사
  - . 협동연구기관(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창우박사, 김운수박사, 조용현박사, 김영란박사, 유기영박사
- 3) 안건 :공공사업 관련 갈등관리 법제 개선과제 발굴 의견수렴
- 4) 주요논의내용
  - . 지속가능성의 확보
    - .. 사회적 및 환경적 정의와 인권보장 측면에서 접근
    - ..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체결 유도 및 협력의무의 강제화
  - . 국토계획및이용법
    - .. 시와 구청의 도시계획수립시 상위계획이 없는 경우
    - .. 도시계획권의 지방 이양 문제
  - . 하천법 및 하수도법
    - .. 하수처리장의 입지
    - .. 공원시설등에 지하저류의 문제
    - .. 하류홍수 유발 문제 및 우수관리 대책
  - . 환경영향평가법
    - .. 환경영향평가 거부시에 도시계획 재상정 가능성 여하
    - .. 인구영향평가 또는 교통영향평가와의 연계

**8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전문위원회: 공공개발 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 방안 연구팀' 제8차회의 회의록**

- 1) 일시.장소 : 2005. 5. 19(목) 14:00~16: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회의실
- 2) 참석자 :
  - . 주무연구팀(법제연구원) : 전재경 연구팀장, 최환용박사
  - . 협동연구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주재복박사, 한표환박사, 김현호박사
- 3) 안건 :공공사업 관련 갈등관리 법제 개선과제 발굴 의견수렴
- 4) 주요논의내용
  - . 국토계획및이용법
    - .. 기피시설 공개모집 시스템
    - .. 쌍방향 의사결정의 유도
    - .. 왜곡된 정보소통의 차단 및 정보공유의 문제

- . 지방자치법
  - .. 광역자치체조합 또는 광역협의체등의 갈등예방 시스템과 예산 및 인력 문제
  - .. 재정적 인센티브제의 활용 및 민선단체장들의 이니셔티브 주도권 다툼 지양
- . 행정도시법 및 기업도시법
  - .. 토지구획 및 계획구역에의 편입절차
  - .. 토지이용방식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 및 시설배치
- .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 .. 중앙정부가 규제관련 모법들에서 어느정도의 특례를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
  -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여하

**9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전문위원회: ‘공공개발 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 방안 연구팀’ 제9차회의 회의록**

- 1) 일시.장소 : 2005. 6. 8(수) 10:00~12:00, 정부중앙청사 617호 회의실
- 2) 참석자 : 염태영 비서관, 전재경 연구팀장, 최환용 박사·김치환 박사·함태성 사(이상 법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권영인 박사, 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박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박사, 해양수산개발원 최지연 박사, 김경원 팀장(총 10명)
- 3) 안건
  - . 인사 및 당부사항(염태영 비서관)
  - . 공공사업 관련 갈등관리 법제개선 연구초안 발제(전재경 팀장)
  - . 연구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및 향후방향 토의(연구팀원)
- 4) 주요 회의 결과
  - . 비서관 인사 및 당부사항
    - .. 그간 연구팀의 연구추진과정의 노고 치하
    - .. 발굴과제가 많아 어려움 예상되지만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일정대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대비요망.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핵심과제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접근
  - . 향후 추진방향
    - .. 제기된 의견과 국토연구원 등 기관과의 추가워크샵, 개선과제별 주요쟁점에 대한 사례분석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보완을 거쳐 관계부처 협의안 마련
    - .. 부처 사전협의를 거친후 관련연구팀 워크샵 등을 통해 최종 보고서(초안) 작성
    - .. 보고서에 대한 공식적인 관계부처 협의
  - . 향후 추진일정
    - .. 법제연구원에서 국토연구원과 추가검토 회의 개최(6월중순, 개별협의)
    - .. 관계부처에 대한 사전의견수렴(6월말 예정)
- 5) 세부회의내용

- . 연구팀에 대한 당부(비서관)
  - .. 연구팀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노력해 준 데 감사 인사
  - .. '핵심과제 중심으로 선정하여' 최종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정리해 나갈 필요
  - .. 7월에는 기본보고서 초안이 제시되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부처협의결과를 정리하여 8월중으로 대통령께 서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일정 진행 요망
  - ..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 많아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부처협의를 난항 예상.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
    - ... 예를들어 공유수면매립법 개정 등과 관련한 기존사업은 금번 제안내용대로 개선하더라도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 공공사업 국한, 중점과제 선정 등 선택과 집중 필요(전략적 접근)
    - ... 연구진에서는 상당한 논리 무장, 설득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함
- . 연구팀에서 제기된 의견
  - .. 관계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준비 필요(김경원, 권영인)
    - ... 작성사례(샘플) 자료 제시
      - \* 근거법령, 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외국사례, 분쟁사례 등 제시)
  - .. 정비시기를 2005년 임시국회로 한 것은 불가. 2006년으로 조정(김경원)
  - ..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승인단계(정책결정단계)뿐이 아니라 폐지.변경과정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창훈)
  - ..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위하여는 관련정보의 실질적인 공유(공개)를 보장하는 방안 강구필요(최지연)
  - ..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도 중요하지만 도입된 제도가 형식화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 다만 운영의 문제로서 어려운 실정(주재복)
  - .. 개별법령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반영하는 문제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추진하는' 전략환경평가 절차에서의 의견수렴절차와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김경원)
- . 향후추진방안 정리(전재경 팀장)
  - .. 오늘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하여 관계부처 사전협의를 대비
  - .. 관계부처 사전협의를자료는 부처별로 주요과제를 재정리하여, 사례 등 근거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
  - .. 과제가 매우 많으므로 사전 부처협의 등을 통해 압축시켜 핵심과제 중심으로 재선정하고 일부과제는 장기과제로 정리하여 제안하는 방안 추진
  - .. 과제별 주요쟁점에 대한 실태.문제점 등 사례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연구팀에 '샘플자료 및 목록'을 조만간 제시. 관련기관의 조속한 협조 당부

10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전문위원회: '공공개발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방안 연구팀' 제10차회의 회의록

- 1) 일시·장소 : 2005. 7. 21(목) 11:30~13:00, 지속위 위원장실
- 2) 참석 : 고철환 위원장, 엄태영 기획운영실장, 연구팀장(전재경), 갈등관리정책팀 2
- 3) 주요내용 : 공공사업관련 갈등관리 법제개선 연구결과 보고 및 추진방안 토의
- 4) 주요회의결과
  - . 연구결과 보고(연구팀장 : 전재경 갈등관리정책전문위원/법제연구원 연구실장)
    - .. 그간의 연구배경 및 경과
    - .. 주요 정비대상 법률의 내용 설명
    - .. 향후 부처협의 등 추진방향 및 일정
  - . 위원장님 당부 및 토의결과
    - . 연구과제의 제목을 내용과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방안 고려
      - .. 공공개발 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 방안
    - . 서론부분에 큰 관점에서 전체 정비방향이나 과제들을 포괄하는 키워드를 정리하여 제시할 필요(보완할 사항) \*예) 개발과 보전의 통합성 강화..
    - . 요약정리된 룰정비내용과 별책의 정비제안서와 일치할 필요
      - .. 별책 정비제안서에 있는 ‘도로법’, ‘고속국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은 제외하기로 함
    - . 향후 과제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
      - .. 관계부처의 반대예상, 논리를 개발하여 협의해 나가되, 단기개선이 어려우면 장기개선 과제로라도 수용될 수 있도록 협의
      - .. 협의결과를 정리 보고. 늦어도 11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노력 당부
- 4) 향후계획
  - . 보고회 결과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 진행
  - . 관계부처 담당과장 회의 개최(7.25, 14:00/ 건교부.해수부.환경부.산자부)
    - .. 일시.장소 : 2005.7.25(월) 14:00/ 정부중앙청사 613호실
    - .. 참석 : 비서관(주재), 연구팀(전재경팀장 외 3명), 관계부처 담당과장
      - \* 건교부(참여담당관), 해양수산부(혁신기획팀장), 환경부(정책총괄과장), 산업자원부(법무담당관)
  - .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보완하여 최종보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

#### 11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 ‘공공사업관련 갈등관리 법제개선 연구팀’ 제11차 회의록

- 1) 일시·장소 : 2005. 7. 25(월) 14:00, 정부청사 613호실
- 2) 참석
  - . 지속위 : 비서관(주재), 국정과제국장, 갈등관리정책팀장, 엄두용
  - . 연구팀 : 전재경 팀장(갈등관리정책전문위 위원, 법제연구원)
    - 법제연구원 연구진(최환용, 김치환, 함태성 박사)
  - . 관계부처 : 환경부(정책총괄과장), 건교부(참여담당관), 해수부(혁신기획팀장), 산자부(법무담당관)

### 3) 회의진행순서

- . 인사말, 당부사항(비서관)
- . 제도개선과제 추진계획(연구팀장, 전재경)
- . 토론 및 부처 의견수렴

### 4) 주요회의결과

- . 비서관 인사 및 당부사항
  - .. '04.2.12 국정과제회의시 대통령님 지시에 따른 추진과제임을 강조
  - .. 빈발하는 공공갈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당부
- . 정비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연구팀장 전재경 위원)
  - .. 유인물에 의거 추진배경 및 부처별 20개 법률에 대한 정비제안 설명
  - .. 향후 추진일정 등 추진방안에 대한 협조 당부

### 4) 관계부처의 토의의견

- . 환경부
  - .. 갈등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과제이라고 보고
  - .. 이번 제안을 계기로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 검토
  - .. 다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법률을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 예상  
\*전재경박사) : 미국에서도 사례가 있음
- . 건교부
  - .. 국토계획에도 환경사항을 자체 고려 중임
  - .. 각종 계획의 코드화는 법률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지침 등으로 조치할 수 있음
  - .. 기업도시법, 행복도시법 등의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법률인 만큼 신중하나 추진 필요  
\* 이문제는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개진해 주도록 답변(비서관)
  - .. 다만, 전반의 추진취지는 공감하며 제안된 내용 이외에도 문제가 있는 ss과제를 자체발굴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음
- . 해양수산부
  - .. 연안관리 주요법률의 실행력 미흡한 이유는 후발부처로서의 애로 때문으로 판단
  - .. 항만법 개선과제는 시대적 방향 둔감한 경향도 있는 것 같으므로 개선노력
- . 산업자원부
  - .. 개정시기를 2006년 등, 특정화하지 말고 부처의 법률개정 계획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 - 부처 실정을 반영하여 의견 제시토록 답변(비서관)
  - .. 검토의견서 작성 틀 제시 필요성 -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작성(전재경)
- . 기타사항
  - .. 관련내용을 이메일로 파일을 송부하고 공문으로도 함께 시행 요망(부처공통)
- . 소관부처 변경 등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자원부 → 건설교통부
  - .. 원자력법 : 산업자원부 → 과학기술부
  -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대상에서 제외

5) 향후계획

- . 관계부처별로 검토의견서 작성 제출(8. 10까지)
- . 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에 따라 연구팀과 관계부처 설명회 등 검토

**12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 ‘공공사업관련 갈등관리 법제개선 연구팀’ 제12차 회의록**

1) 일시.장소 : 2005. 8. 17(수), 8. 19(금), 지속위 회의실

. 8. 17(수) 10:00~18:00 건설교통부

. 8. 19(금) 10:30~17:00 환경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2) 참석

- 지속위 : 전재경 위원(갈등관리 법.제도개선 연구팀장), 최환영 박사, 함태성 박사(팀원, 법제연구원 연구원), 김경원 갈등관리정책팀장
- 건교부 : 정비대상법률 담당과장 10명  
정의경(국토정책과), 이정현(도시정책과), 남상현(입지계획과), 허용(도시관리과), 장만석(일반철도과장), 이한세(하천계획과장), 최제호(수자원개발과), 정삼정(건설지원담당관)
- 환경부 : 담당과장 4명  
유승광(정책총괄과), 박광호(환경평가과), 박한업(생활폐기물과), 정진섭(생활하수과)
- 해수부 : 서병규(연안계획과장), 류중빈, 김선중(연안계획과)
- 산자부 : 최민구(전력산업과장), 용환득(전력산업과)
- 과기부 : 조인목(방사선안전과)

3) 회의결과 주요내용

- . 토의결과 의견조정 사항
- . 관계부처에서 수용 불가 의견이 타당한 사항은 수용  
..관련법령 개정이 이미 조치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경우  
..관련사항이 하위법령 등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
- . 관계부처에서 수용 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관철시킬 사항  
..회의과정에 의견 절충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협의안 마련
- . 향후 조치 계획  
..연구팀에서 회의결과 조정된 제안사항을 재정리하여 관계부처 재검토 의뢰(8월말까지)  
.. 관계부처 검토의견을 다시 제출 받은 후 보고서 작성 추진(9월중)

4) 회의결과 세부 조정내용

- . 회의시 논의결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다시 정리하여 재협의를 요청할 경우 관계부처에서 추가 검토를 거쳐 의견을 내기로 함

< 건설교통부 소관 >

. 국토계획법 관련

-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의 연계 강화(국토기본법)
- .. 국토기본계획 수립시 환경기본계획을 고려
- .. 국토기본계획의 우선효 → ‘기본으로 한다’ 정도로 완화
-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수립주기 일치 원칙
- .. 계획내용을 법령형식(코드화)으로 전환하는 근거 신설

. 수리권분쟁 및 댐건설 갈등 해소(하천법, 댐건설지원법)

- .. 하천 유수에 대한 민법상 유수이용권 허용근거 신설
- .. 댐 건설 기본계획 이전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보완

. 산업입지 및 개발관련 갈등해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특별법에 의한 인·허가의제사항의 근거가 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폐지(철회) 근거 신설
- ..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사업 시행관련 협의기준을 구체화

. 철도건설법

- .. 역세권 개발구역지정시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는 규정을 특정해서 명시하는 방안 \* 역세권개발방식 정비방안은 제안을 철회

. 도시개발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 골재채취법

- .. 경미한 사항으로 부처 제시의견을 수용하여 제안 철회
- \* 골재채취법은 해양환경보전법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 환경부 소관 >

. 환경정책기본법

- ..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의 연계 강화
  - ... 수립주기 일치, 계획 형식의 코드화(법령형식) 근거 신설
-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대상 확대
  - ... 대상 행정계획의 확대(시행령개정시 반영)
  - ... 법령도 검토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실효성이 미흡, 장기검토)
- .. 환경평가제도(환경평가법)와 사전환경성 검토제도(환경정책기본법) 중복 방지

. 환경영향평가법

- ..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근거를 단일법으로 통합 방안
- .. 승인기관과 협의기관간의 역할분담의 명확화
  - \* 단, 환경·교통·인구영향평가의 실질적인 통합방안(추가논의 필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민지역지원법

- ..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선정기준 마련, 주민의견수렴방안 추가반영
-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시 주민참여 강화 - 기반영(삭제)

. 하수도법

-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수렴 규정 보완

- \* 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절차 - 하수도 기본정비계획 수립시 기 반영되고 있으므로 삭제

#### < 해양수산부 소관 >

- . 연안관리법
  - .. 연안육역의 범위 확대
  - ..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절차의 체계화, 통합계획의 수립주기 명시
  - .. 연안관리지역계획 승인의 철회근거 신설
  - .. 연안관리계획 승인으로 인한 인허가 의제효과의 자동해제 근거 신설
- . 공유수면매립법
  - .. 매립면허시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매립기본계획 작성시 제출하도록 근거 신설
  - .. 면허의 취소사유를 구체화하고 의제된 면허의 효력상실 근거 신설
  - .. 매립목적변경제한의 예외 근거 신설
  - .. 면허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2년마다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 항만법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추진과제에서 제외함

#### < 산업자원부 소관 >

- . 전원개발촉진법
  - .. 전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확대(제5조의2)
  - \* 산자부에서는 '전원개발 사회적 비용 증가' 로 인하여 법제정 취지 달성이 곤란하므로 수용불가 의견

#### < 과학기술부 소관 >

- . 원자력법은 제외
  -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업무중복문제는 없음

#### 5) 향후계획

- . 회의시 논의결과 다시 정리하여 재협의를 요청할 경우 관계부처에서 추가 검토를 거쳐 의견을 내기로 함
- . 연구팀(법제연구원)에서 재협의안을 조속히 마련, 제출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보내 2차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정리하기로 함

## <참여 연구자 명단>

### □ 공공갈등 관련 법·제도 개선지침 마련(2004년도)

전재경 법제연구원 법제연구실 연구위원(총괄, 분쟁해결분야)  
김유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총괄)  
박재길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장(국토이용분야)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환경·생태분야)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연안연구실 책임연구원(해양·수산분야)  
김병문 김병문·박정일법률사무소 변호사(농림·축산분야)  
권영인 교통개발연구원 도로교통연구실장(교통·운송분야)  
주재복 지방행정연구원 자치·정책연구실 수석연구원(지방자치분야)

### □ 공공개발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방안 연구(2005년도)

팀장: 전재경 법제연구원 법제연구실 연구실장  
법제연구원 : 전재경(총괄), 함대성, 최환용  
국토연구원 : 박형서(총괄), 박은관, 박대선, 류승환, 류승환  
교통연구원 : 권영인(총괄), 성현곤, 김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이창훈(총괄), 김광임, 송영일  
해양수산개발원 : 남정호(총괄), 이성우, 육근형, 최지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창우(총괄), 김운수, 조용현, 유기영, 김영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주재복(총괄), 한표환, 김현호